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2014. 1.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Contents

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체계	5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6
I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1
1. '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 R&D 제도	11
2.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12
3. 사업의 신청 및 선정	13
4. 사업비의 산정	14
5.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21
6.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24
7.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25
8. 관련 법령 및 규정	28
III. 사업별 지원계획	29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29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34
3-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38
3-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	41
3-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해양저장장비전문기술	46
3-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개인용 이동수단	49
3-마.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사업) - 첨단연구장비전문기술	52
3-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55
3-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59
3-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창의산업기술개발	62
4.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	65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67

7.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73
8.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76
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79
10.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82
11. 산업융합촉진사업	85
12. 그래핀소재부품사용화기술개발사업	88
13.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91
14. 나노융합2020사업	94
15.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98
16.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02
17.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105
18. 시스템반도체사용화개발사업	108
1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111
20-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신뢰성산업체확산	114
20-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글로벌동반성장R&BD	117
2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20
2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22
2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124
2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128
25.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31
26.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134
27.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136
28.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 개발사업	139
29. 탄소밸리구축사업	142
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145
31.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147
32. 수출전략형미래그린사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149
33.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51
34.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153
3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156
36.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158
3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161

38. 메디칼월드 R&BD 구축사업	163
39.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166
4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69
41.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	173
4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76
43.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78
44.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81
45.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84
46.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87
47.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190
48.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93
4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개발지원)	196
5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재생·전력·원자력)	199
5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202
52. 에너지인력양성사업	205
53.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에특)	209
54. 에너지·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212
55-가.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력)-신재생분야	215
55-나.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력)-전력기술기반구축 분야 ...	217
56.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	220
57.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전력)	224
58. 민군겸용기술사업	227
59.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230
60.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233
6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사업	237
62.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240
63.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243

20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안내

64.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43
65.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47
66.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250
6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253
Ⅲ. 사업별 문의처	256

I.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개요

1. 사업 개요

□ 산업,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함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제 산업기술협력사업,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2.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법」에 따른 민·군겸용기술사업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에 따른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등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산업집적경쟁력강화사업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테크노파크사업)
7. 「전자거래기본법」, 「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지원센터사업
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
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법」에 따른 산학협력확산사업
1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에너지법」, 「법」에 따른 자원 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촉진사업 등
12.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법」에 따른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3. 「산업디자인진흥법」, 「법」에 따른 산업디자인기술개발사업
1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진흥사업
15. 「전기사업법」, 「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16. 「에너지법」, 「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사업
19. 그 밖에 장관이 산업, 에너지·자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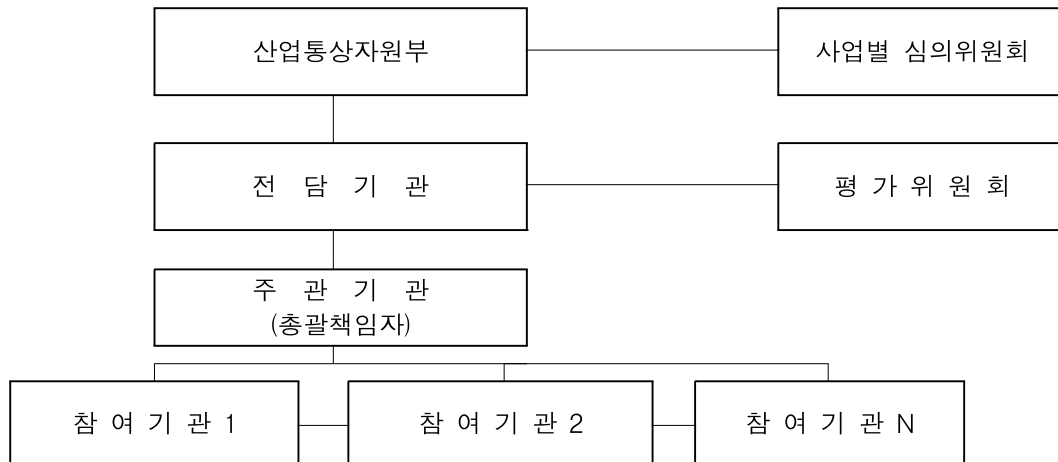
□ 관련 용어 해설

용 어	해 설
산업기술혁신사업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
기술혁신주체	산업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전담기관	장관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주관기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업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②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의 기업 ③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수행과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관이 지정하거나 선정하는 과제
총 수행기간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
사업비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총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합계
출연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
민간부담금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연구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연구장비통합관리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극대화 등을 목적으로 3,000만원 이상의 구입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구매부터 처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기획·평가·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시작품으로 제작하는 장비 및 시설, 크린룸(Clean Room)과 같은 연구공간 개념의 연구시설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용 어	해 설
정책지정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행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장관이 지정하여 선정하는 방식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 방식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
문제과제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
실시	사업수행결과를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기술실시계약	사업수행결과를 소유한 자와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성과활용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공동활용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비영리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와 설립근거 법률에 의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간주)
성과활용기간	최종 평가 후 일정 기간 동안 완료과제의 수행결과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는 기간(별도의 협약은 하지 않음)
사업기간	총수행기간에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단, 중단 등 과제 수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한 경우는 성과활용기간을 제외)

용 어	해 설
그랜트형 과제	창의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 목표 및 수행에 관하여 연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소형과제로서, 구체적인 수행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함
비목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직접비, 간접비
세목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현물	민간부담금 중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
참여율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
사업비관리시스템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하 "RCMS"라 한다)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함은 RCMS에 적용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카드와 연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시스템)
사업비카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용카드(전담기관에서 발급하는 연구비카드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
지출원인행위	부득이하게 차년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
이월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중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 불가피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해당연도 사업비
수익금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정산	협약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연차정산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
일괄정산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단계정산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
위탁정산	전담기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
집행잔액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
정산금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금	문제과제에 대해 환수하는 금액
전담연구인력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연구지원전문가	중소·중견기업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연구비 관리·정산, 지적재산권 관리, 보고서 작성, 물품·기자재 구매 및 관리, 데이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R&D 지원 인력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자

2. 추진 체계



기 관	권한과 책임
전담기관	1. 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 2. 기술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3.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 4. 기술청사진 수립, 특허 및 표준화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수행과제 발굴 5. 신청계획서 검토·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의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수행 실태점검,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7.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보안 및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11. 사업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주관기관	1.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 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6. (연차·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8.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10.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 준수 12.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참여기관	1. 수행과제의 공동 참여 및 협력 2. 민간부담을 의무화 하는 사업의 경우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3.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등 4. 연구윤리 준수 5.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3. 추진 절차(기술개발사업 기준)

가. 지정공모 사업의 경우

① 단기과제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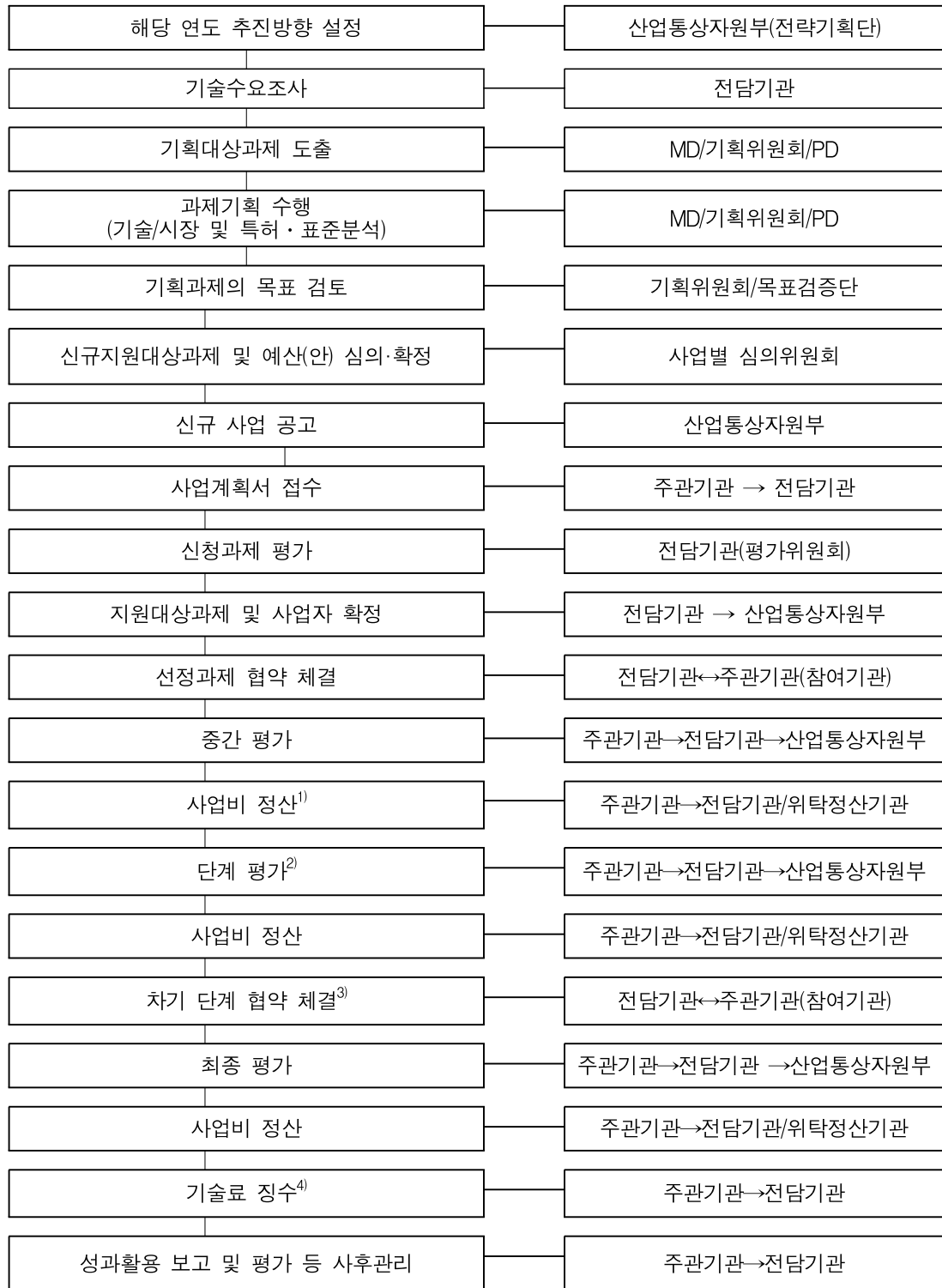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② 중장기과제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③ 대형선도과제의 경우



1):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나. 자유공모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1) : 연차별 정산과제의 경우에 해당

2), 3) : 단계협약과제의 경우에만 해당

4) : 사업 공고 시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에 한함

다. 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Ⅱ.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및 관리

1. '14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R&D 주요 제도

- ◆ 「BI 연계형 R&D 지원제도」 도입 : 창의적 비즈니스 아이디어(BI)가 기술개발 과제로 지원될 수 있도록 先비즈니스모델(BM)개발 → 後핵심기술개발까지 일괄 추진
- ◆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 확대 : 중소·중견기업 전용사업에서 자유공모 과제 비중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 「Seed형 R&D 과제」 도입 :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되는 소규모 자유공모형 과제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초기 핵심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과제 추진
- ◆ 「그랜트형 R&D 방식」 도입 : 자유주제의 소액 과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생략, 최종결과 보고서 및 정산 간소화 등의 절차 적용
- ◆ 「혁신도약형 과제」 도입 : 초(超)고난도 중대형 과제에 대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과 달리 컨설팅 방식으로 평가·관리를 완화

■ 디자인과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계

- 다음 사업은 협약체결 전까지 전담기관이 과제별로 디자인 연계내용 및 참여비율을 산정할 수 있으며, 디자인 연계범위(내용 및 비율)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 등 전문기관의 참여를 권고할 수 있음
 - 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지식서비스, 바이오의료기기, 로봇, 산업융합,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우수기술연구센터, 섬유스트립, 해양레저장비, 개인용 이동수단, 신산업기술개발)
 -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 LED시스템조명기술개발
 -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 핵심의료기기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개발
 -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2. 사업 수요의 발굴 및 시행계획 공고

○ 산업정책 및 기술동향 등을 고려한 사업별 지원분야 발굴을 위해 아래 사항을 실시

1.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한 기술예측조사
2. 기술 분야별 기술수준 및 기술혁신역량조사
3. 중장기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기술청사진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4.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5. 기타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공고 구분(공모 방식)

- 각 사업에 따라 지정공모, 자유공모 등으로 지원과제 공고
 - 지정공모 : 기술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분야를 발굴하여 공고
 - 자유공모 : 주관기관이 개발희망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 정책지정 :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수행과제 및 수행자 지정

○ 공고 내용

1. 사업 추진 목적, 사업 내용 및 사업기간
2.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3. 사업 추진체계
4. 신청 자격(대기업의 주관기관 자격 인정 여부, 과제별 영리기관의 참석 필수 여부 등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5. 사업비 지원규모(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여부, 수행기관의 사업비 현금 부담 여부 등 포함) 및 기준
6.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7.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8. 근거법령 및 규정
9. 사업의 전담기관(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10. 연구장비 통합관리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11.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기간 및 접수창구
12.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13.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
14.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및 필수제출 서류 사항
15. 기타 사업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공고 방법

- 매년 초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 후 각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각 해당사업의

- 전담기관 홈페이지, 해당 사업별 관리기관 홈페이지(문의처 참고), 언론매체 등에 공고
- 공고시 접수방법, 접수기간, 접수처, 문의처, 기타 사업별 특성상 안내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

3. 사업의 신청 및 선정

○ 신청 자격

- 'Ⅲ. 사업별 지원계획'의 각 사업별 신청 자격 참고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신청기관 제출 서류

- 신청자격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별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출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별 공고 참조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별로 공고시 정하는 접수 방법(인터넷, 서류 접수 등)으로 과제를 접수

○ 사업계획서 평가 항목(기술개발 기준)

1. 사전 준비성(특허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2.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3.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

4.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5.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6. 실용화 가능성

7. 시장 진입 가능성

8. 경제성

9.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의 보안과제 분류 여부 검토 포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 항목 및 지표가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선정 평가 방법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요망

4. 사업비의 산정

○ 사업비의 세목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 기준

세목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계상/ 산정 기준	○ 소속기관 급여기준에 따른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 되, 인건비는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담금 및 기관 부담 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집행한다. - 해당과제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제5조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 우 참여율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 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 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수행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인건비 현금·현물 산정 기준> <table><tr><th>구 분</th><th>세부 산정 기준</th></tr><tr><td>수행기관에 소속된 자</td><td>-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td></tr><tr><td>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td><td>-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중복 지급 불가)</td></tr></table>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직원의 인건비는 최근 월 평균급여총액 × 12개월 × 참여율로 산정하여 적용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 중인 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공동관리규정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과 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 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상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 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수 행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 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단, 제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전담연구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은 학생연구원 산정 기준 이상으로 하 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실습연구원 : 중소·중견기업인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과제를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라 산정(중복 지급 불가)						

세목	구분	내용			
		수행 중인 대학(산학협력단이 과제를 수행 중인 경우 해당 산학협력단이 소속된 대학 포함)의 학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방학 기간 중 해당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때의 인건비는 월 1,500천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함. 실습연구원은 수행과제 연구 및 기업실무의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과제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산정 기준	○ 해당 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table><tr><th>구 분</th><th>세부 산정 기준</th></tr><tr><td>학생 연구원</td><td>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td></tr></table>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3,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최종연도(단계협약의 경우 단계협약 최종연도 포함)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기술기반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계상/산정 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현금 산정, 사업별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 외부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현금 산정(수행기관 간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와 수행기관 자체 임차(사용)의 경우의 임차료(사용료)는 현물로 계상) - 현물의 경우 장부가의 20%를 산정하며, 내용년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5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기반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산정하며, 출연금으로 산정이 불가능함 ○ 구입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으로 산정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협약 시 필수적으로 제출 ○ 임차의 경우 민간부담금 현물로 산정하며 토지 및 건물의 공인감정가격 20% 이내로 매년 편성 가능함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수행기관 보유 시약 및 재료 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세목	구분	내용
		○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시험분석 의뢰한 경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 현금 산정 가능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보유 및 수행기관 간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산정 불가(수행기관 간 사용료와 임차료의 현금 지급 금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 현금 산정 가능(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현금 산정 불가(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심의) ○ 과제수행과 관련없는 사무기기,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현금 산정 불가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 연구활동비는 수행기관의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계상 가능 ○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 산정 기준	○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 [참고]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 -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광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 및 RCMS 사용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공통운영요령 제35조 제4항 각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세목	구분	내용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간 계상하여야 함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 기술정보수집비 -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소속기관 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에게 현금 집행 불가)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산정 가능 ○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중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세목	구분	내용
		○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십,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과제 추진비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계상/ 산정 기준	○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10% 이하로 산정 하되,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에 사용용도별 세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한다.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한다.
연구 수당	사용 용도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 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기술개발 사업 : 20% 이내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은 1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개발의 성격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사업 수준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세목	구분	내용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다. - 과제의 총괄관리를 수행하는 총괄주관기관인 경우 -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 수행기관은 참여율 및 기여도를 반영해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비목별 상세 내역 작성시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참조 요망

○ 출연금 지원 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 참조 요망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전략기획단 소관 사업 또는 그 밖에 사업이라도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¹⁾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1개	중소기업 ²⁾ 또는 중견기업 ³⁾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대기업 ⁴⁾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 기준을 적용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대기업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5. 협약 체결 및 사업비의 관리·사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 1. 과제명, 협약 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 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
 - 3. 사업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4. 과제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6. 연구장비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 7. 기술료에 관한 사항
 - 8. 성과물의 귀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
 - 9. 협약 위반시의 제재·환수에 관한 사항
 - 10. 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 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 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 13.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5.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약 변경의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1. 승인사항
 - 주관기관의 변경
 - 최종 목표의 변경
 - 총괄책임자의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의 변경
 -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을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로 변경
 - 과제수행기간 변경
 - 최초 협약한 사업비 대비 수행기관별 사업비 총액의 변경
 - 연차별 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
 -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 연차별 간접비의 증액(영리기관에 한해 가능하되, 간접비 총액이 직접비 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차별 연구과제추진비의 증액(연구과제추진비 총액이 직접비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

2. 통보사항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 참여연구원의 변경(인건비 폴링제를 반영한 과제의 대학은 제외)
- 수행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총괄책임자 변경

○ 협약 해약의 사유

1. 기 수행 되었거나 진행 중인 다른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2. 보고서 미제출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4.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연차·단계·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불성실 수행 평가를 받은 경우, 그밖에 문제과제로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9.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12.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13.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 투자계약이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15.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6. 총괄책임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제45조에 따라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17. 그밖에 산업기술정책상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 출연금의 지급

- 장관은 출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한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매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함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 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시 수행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고하여야 함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업비 사용 및 관리 가능

6. 사업 결과의 평가 및 사업비의 정산

○ 중간(연차)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중간(연차·진도·단계) 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로 평가 구분하여(이때, 조기종료(성시루행)는 1차년도 평가 시는 적용하지 않음)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 가능

○ 최종 보고 및 평가

-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 연도 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 포함)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담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구분(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음)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과제의 경우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신용카드 사업비 집행한 경우, 국세청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집행 건은 증빙자료 제출 면제가능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 결과보고서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정산절차를 갈음할 수 있음
 - 해당 과제가 평가결과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경우
 - 수행기관이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관리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인 경우(인증기간에 한함)
 - 수행기관이 국외 소재 기관인 경우
 - 그랜트형 과제인 경우

※ 사업비의 정산시 수행기관,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 요망

7. 사업의 사후관리 및 성과활용

○ 성과물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유무형적인 결과물에 대하여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성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주관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수행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구 장비의 관리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nfec-input.ntis.go.kr)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 기술료율,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됨
 - ※ 수행기관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조기종료” 과제 및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 종료연도부터 5년간 매년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업 보안

- 수행기관의 장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결과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과제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과제수행내용 및 수행결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 과제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사업 보안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연구윤리의 확보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연구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절차 및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은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야 함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환수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임직원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해당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이 때 아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음

-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성과활용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 또는 총괄책임자, 연구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과제수행 결과보고서(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 원인보고서(수행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사업비를 횡령·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협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시설·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8.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에너지법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평가관리지침(예규)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Ⅲ.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 동 사업은 산업기술 R&D 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사업명도 변경되었음(‘원천’에서 ‘핵심’으로 변경)

1. 개 요

-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업종별 대규모 시장 창출이 가능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도형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신산업 분야
 - 산업융합기술(나노융합, IT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로봇, 지식서비스
- 주력산업 분야
 - 자동차(그린카 스마트카), 조선, 화학공정, 세라믹, 금속소재, 섬유 의류, 생산기반, 생산 시스템, 플랜트엔지니어링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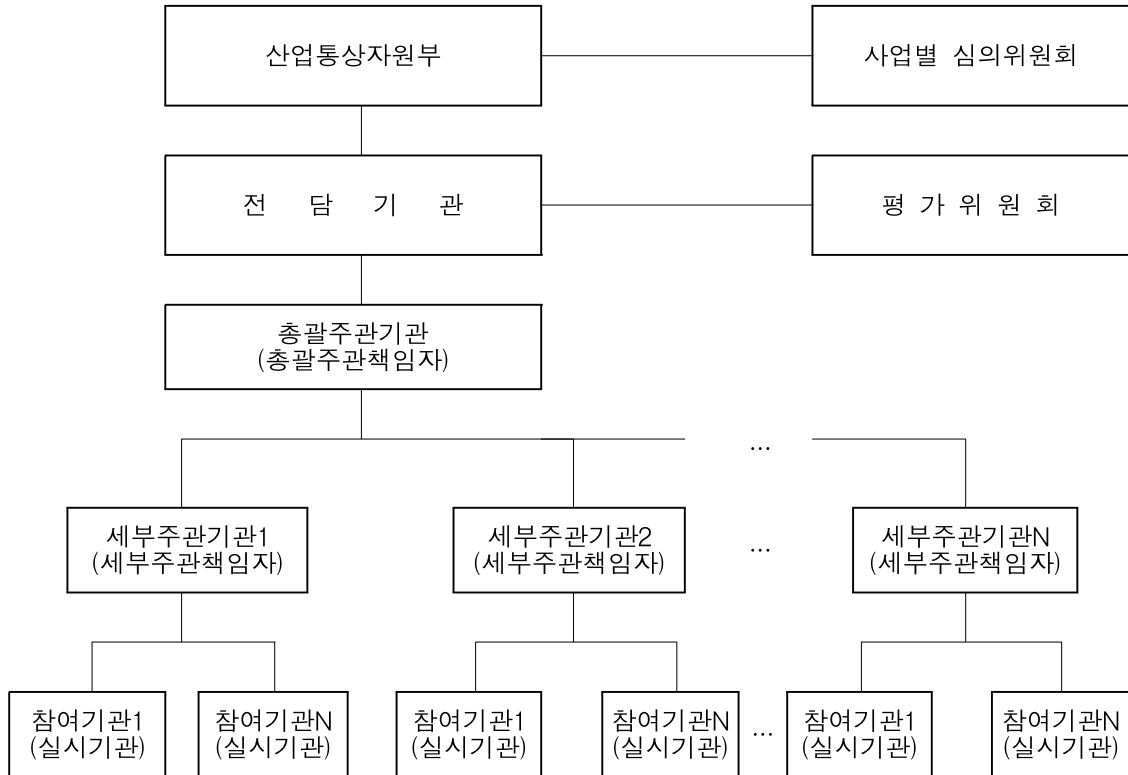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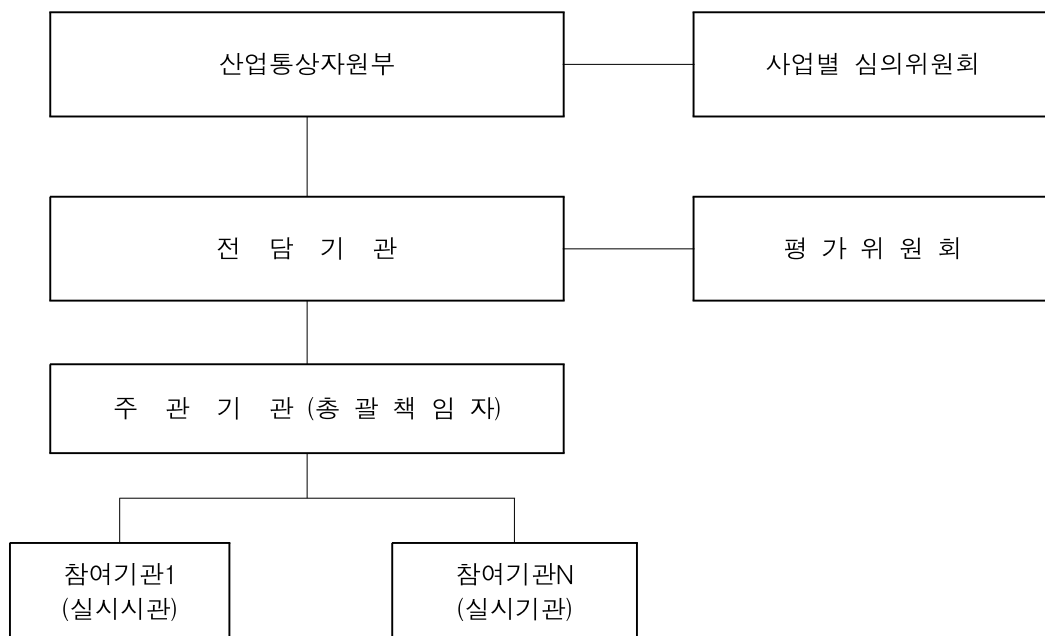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7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8월~'14 1월	'14 2 ~ 4월	'14. 5월	'14. 5월~6월

7. 지원규모 : 4,728.55억원(신규 957.65억원, 계속 3,770.9억원)

사업명	2014년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 신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49,949	168,965	218,914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12,356	56,764	69,120
-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23,260	51,126	74,386
- 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	3,015	46,039	49,054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8,147	18,207	26,354
○ 주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48,987	204,954	253,941
- 그린카등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	1,653	70,461	72,114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19,376	59,038	78,414
-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	24,458	67,732	92,190
-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발	3,500	7,723	11,223

8. 중점 추진사항

- 향후 5년 이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품목의 핵심 기술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산업간 융합촉진을 위해 융합형 R&D 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87 : 1	2.91 : 1	2.8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519백만원	1,113백만원	773.6백만원

11. 문의처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044-203-내선번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서울 02-6009-내선번호, 대전 042-715-내선번호)	
사업	지원분야	소관과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신산업 총괄		창의산업정책과	4363	평가총괄팀	02-6009-8217
◆주력산업 총괄		기계로봇과	4313		
- 로봇	차세대로봇	기계로봇과	4315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나노과	4392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81
- 의료기기	의료기기	전자전기과	4341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2
-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창의산업정책과	436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64, 9
- 산업융합기술	IT융합	전자부품과	4273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9
	나노융합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67
- 수송시스템	스마트카	자동차항공과	4322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2, 6
	그린카				
	조선	조선해양플랜트과	4331		
- 산업소재	섬유의류	섬유세라믹과	4291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화학공정	철강화학과	4284		02-6001-0795
	금속소재	철강화학과	4285		02-6001-0793
	세라믹	섬유세라믹과	4295		02-6001-0793
- 제조기반	생산시스템	기계로봇과	431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생산기반	뿌리산업팀	4283		
- 플랜트 엔지니어링	플랜트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과	4334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1-0776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미래시장 선점 및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품목
- 세계 조달참여가 유망하고 무역구조 개선효과가 큰 소재·부품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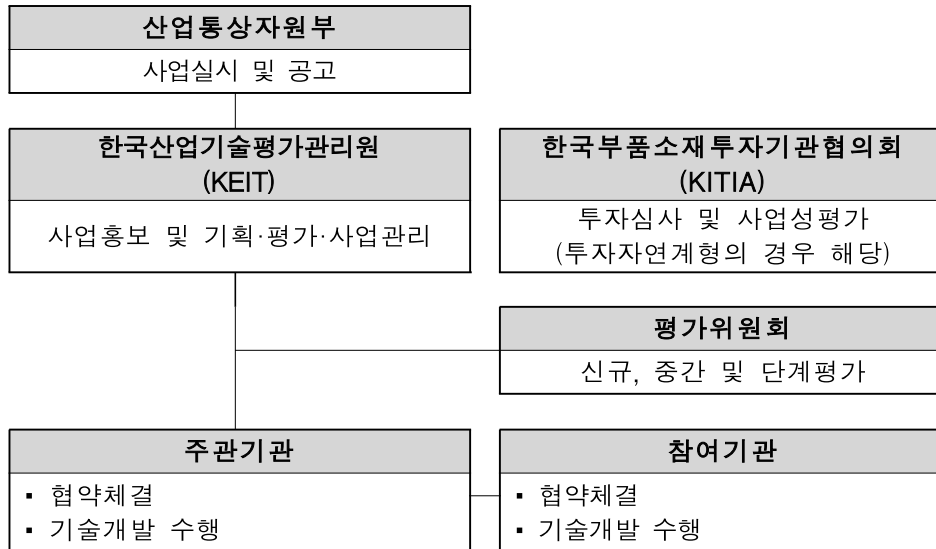
-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 * 세부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사업	지원기간	지원내용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9년 이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10대 핵심 소재(WPM) 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10년 이내	소재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계성능 향상 및 신기능 창출이 가능한 핵심 원천기반 기술개발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7년 이내	기술개발 성공시 세계시장 독과점이 가능하나 민간 스스로 개발하기에 리스크가 큰 전략적 핵심소재 개발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신규지원계획 없음)	7년 이내	'20년까지 민간산업과 육·해·공 군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新소재 창출을 위해 핵심 방산소재 개발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년 이내	Global Sourcing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의 기술개발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3년 이내	중소·중견 소재기업이 특정분야 및 틈새시장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벤처형 전문소재 기술개발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3년 내외	개발 과제의 사업화 제고를 위하여 민간 자본의 사업성 평가(투자유치)를 접목한 투자기관 연계형 개발과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
 - 공고(산업부) ⇨ 신청서 접수(KEIT) ⇨ 사전검토(KEIT) ⇨ 기술성평가(KEIT)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KITIA) ⇨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부, KEIT)
- 그 외 사업
 - 과제기획(KEIT) ⇨ 공고(산업부) ⇨ 접수 및 사전검토(KEIT) ⇨ 기술성평가(KEIT) ⇨ 사업자 지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부, KEIT)

6. 추진일정

사업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	-	-	-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14.1월~6월	'14.7월~8월	'14.9월	'14.10월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	-	-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14.1월~6월	'14.7월~8월	'14.9월	'14.10월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4.1월~4월	'14.5월~6월	'14.7월	'14.8월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14.1월~4월	'14.5월~6월	'14.7월	'14.8월

7. 지원규모 : 2,924.76억원(신규 327.89억원, 계속 2,596.87억원)

(단위: 백만원)

사업	2014년 예산	신규	계속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168,426	7,869	160,557
- WPM	66,932	-	66,932
-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43,885	-	43,885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46,609	7,869	38,740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11,000	-	11,000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124,050	24,920	99,130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55,800	8,370	47,430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18,200	2,800	15,400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50,050	13,750	36,300

* 세부 사업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표에서 평가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임

8. 중점 추진사항

-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 지원(핵심소재 경쟁력 강화)
- 글로벌소싱 참여가 유망하고 소재·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융·복합 소재부품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1.50 : 1	-	-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	1.45 : 1	2.4 : 1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1.40 : 1	2.6 : 1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3.6 : 1	1.5 : 1	2.3 : 1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	6.8 : 1	4.9 : 1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4.2 : 1	2.3 : 1	3.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단위: 백만원)

사업	2011년	2012년	2013년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WPM	-	-	-
-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509	-	-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	1,909	1,750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	1,200	840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745	1,770	847
- 벤처형전문소재 기술개발	-	800	519
- 투자자연계형 기술개발	583	634	443

* 세부 사업별 예산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 표에서 평가관리비는 제외된 금액임

11. 문의처

구 분	세종청사 (044-203-내선번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내선번호)	
	소관과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	-	-
- WPM (신규지원계획 없음)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73
- 핵심소재 원천기술개발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95
- 전략적 핵심소재 기술개발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95
- 핵심 방산소재 기술개발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96
○ 융복합소재부품개발	-	-	-	-
-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72
- 벤처형전문소재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96
- 투자자연계형	소재부품정책과	4262~3	소재부품평가팀	8378

3-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1. 개 요

-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집중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기술연구센터로 지정, 세계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3. 신청자격

- '13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과 R&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세부 신청자격은 본 사업 신규 공고 시 안내 예정임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 통해 차기 단계 지원)

- 지원금액 : 센터당 연간 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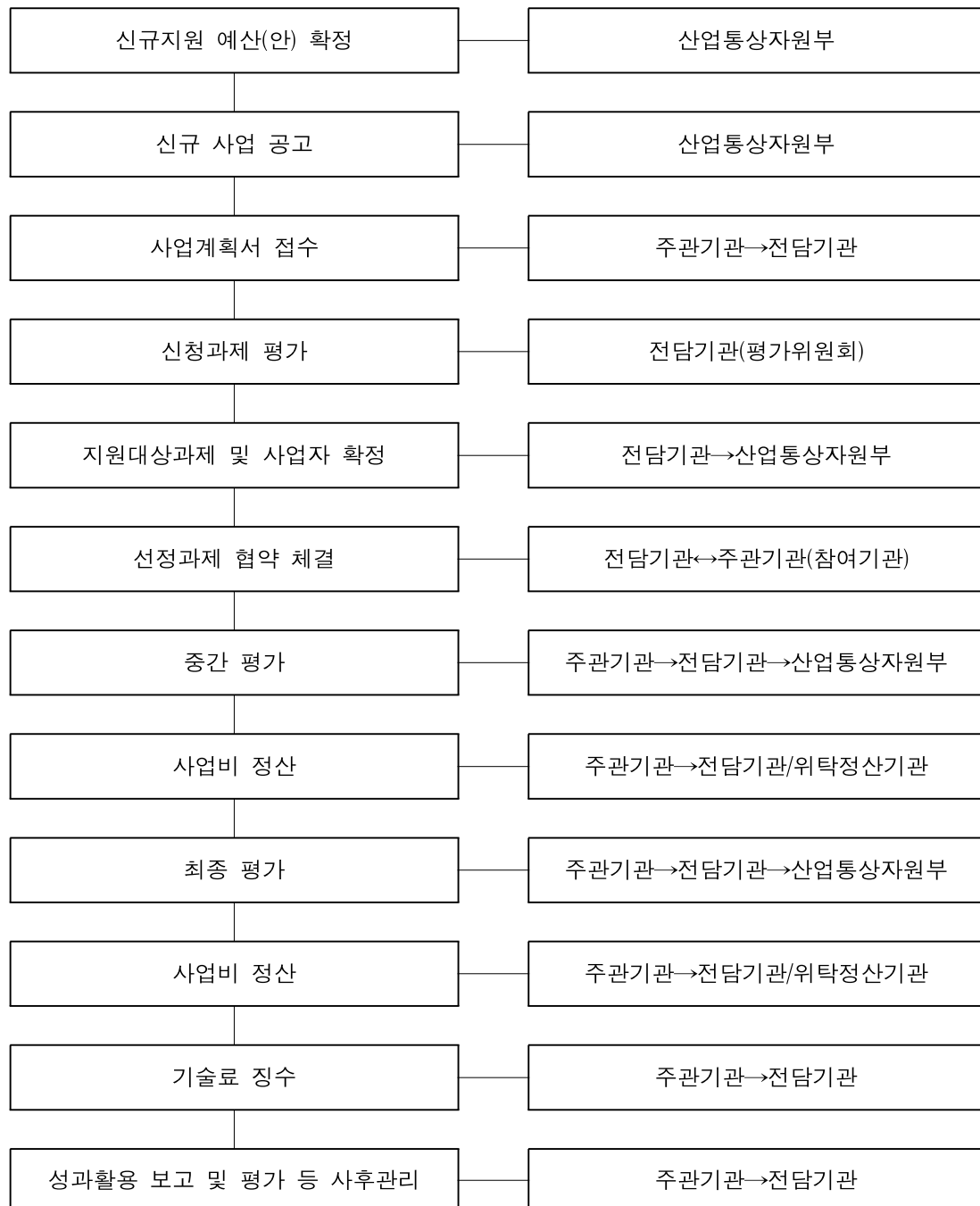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3월	'14. 4월	'14. 5월	'14. 6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663.83억원(신규 207.83억원, 계속 45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과제별 기술로드맵 제시, 총개발기간 다양화 및 연차·단계평가 강화
- ATC사업내 R&D 지원유형 다양화(융합ATC ,비즈니스 모델 연계형 트랙)로 새로운 시장 창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2 : 1	3 : 1	2.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447백만원	447백만원	41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2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4, 7385, 7386, 7388 (www.keit.re.kr)

3-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1. 개 요

- 섬유패션 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차별화 제품개발 촉진
 - 성숙산업고도화(생활산업고도화) :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 고감성 기술을 융복합화한 고부가가치 생활용품 및 소비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 섬유패션 스트림간(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 기획/기술개발/생산/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 소득수준 향상 및 FTA 확대 등에 따라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소비재산업 분야 등의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제품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는 R&D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Top Brand로 성장 지원
- 생활산업고도화기술개발사업 : 가구·안경·주얼리 등 생활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성장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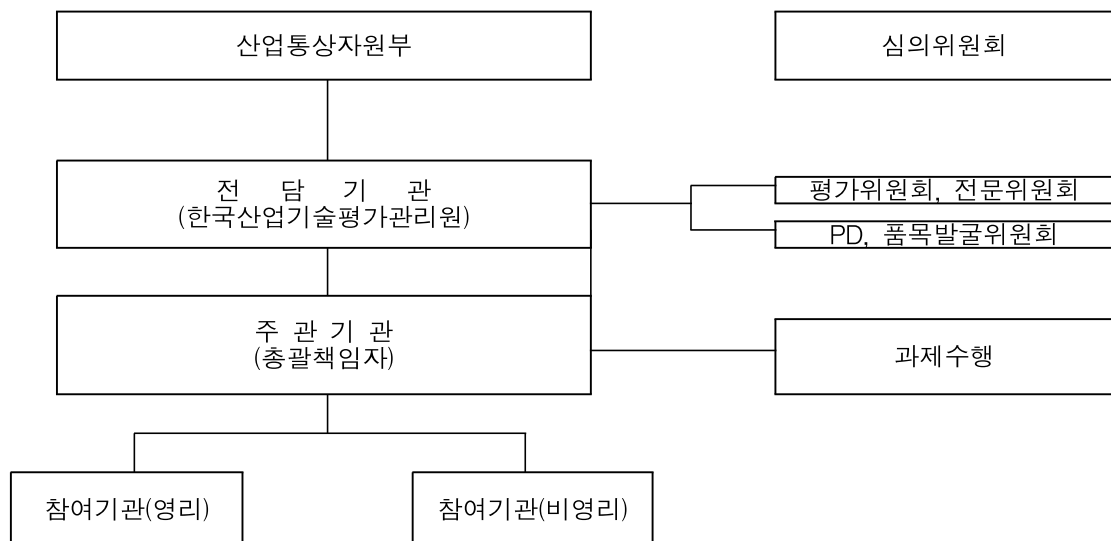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중소·중견기업에 한함 (개인사업자 포함)
 - 섬유스트림 : 산업용, 의류용, 생활용, 융합 등 4대 섬유분야(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 스트림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패션스트림 :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이 포함된 패션디자인 의류상품 등(패션 디자인 개발 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컨소시엄)
- 참여기관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가 가능함

4. 지원내용

- 섬유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2~3년 이내에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패션스트림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성숙산업고도화(생활산업고도화) : 총 기술개발 기간 1~2년 이내에 연간 3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3월	'14. 4월	'14. 5월	'14. 6월

※ 상기일정은 품목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400.51억원 (신규 210.16억원, 계속 190.35억원)

내역	2014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섬유생활스트림간 협력기술	21,016	19,035	40,051

* 성숙산업고도화 : 2,370백만원, 생활산업고도화 : 4,471백만원 포함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중소·중견기업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다수 육성하기 위한 품목 중점 지원
- 국내외 산업·경제 환경 전망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세계 Top10 기업 배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하여 세계시장 개척 및 시장의 다변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 (중소·중견기업군 내실화) 등 기여 가능한 품목 도출하여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3 : 1	4.2 : 1	3.6 : 1

* 섬유패션스트림 평균 경쟁률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825백만원	711백만원	874백만원

* 섬유스트림 신규지원과제

11. 문의처

○ 섬유패션스트림, 성숙산업고도화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1, 4296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 02-6001-0794, 0796 (www.keit.re.kr)

○ 생활산업고도화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 044-203-434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9, 7391 (www.keit.re.kr)

3-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1. 개 요

-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선내기(엔진)가 장착된 해양레저 선박 분야 관련 모듈/요소부품/장비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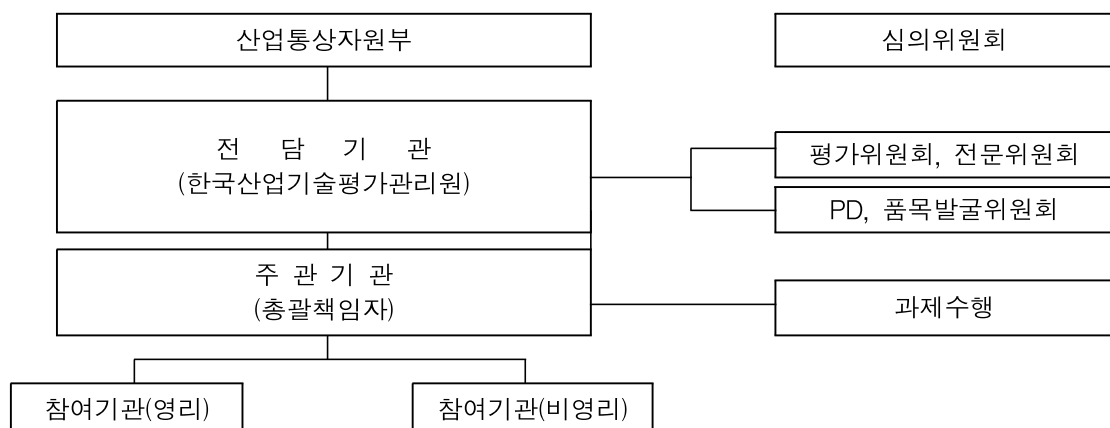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내외에 연간 2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14. 1월	'14. 2월~3월	'14. 4월	'14. 5월	'14. 6월

※ 상기일정은 품목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4.06억원(신규 14.54억원, 계속 9.5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관련 업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전략 품목과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해양레저 장비관련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
- 단위 요소 기술과 함께 선형설계, 성능해석, 생산자동화 관련 기술개발을 병행 하여 경제적 생산기술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 : 1	4 : 1	3.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77백만원	200백만원	2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 ☎ 044-203-433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수송플랜트평가팀 : ☎ 02-6001-0747 (www.keit.re.kr)

3-라.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개인용이동수단

1. 개 요

- 전동 휠체어, 전동 유모차 등 글로벌 시장이 기 형성된 전기동력 제품 중 최적화와 효율 향상 및 안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개인용 이동수단 효율 향상과 최적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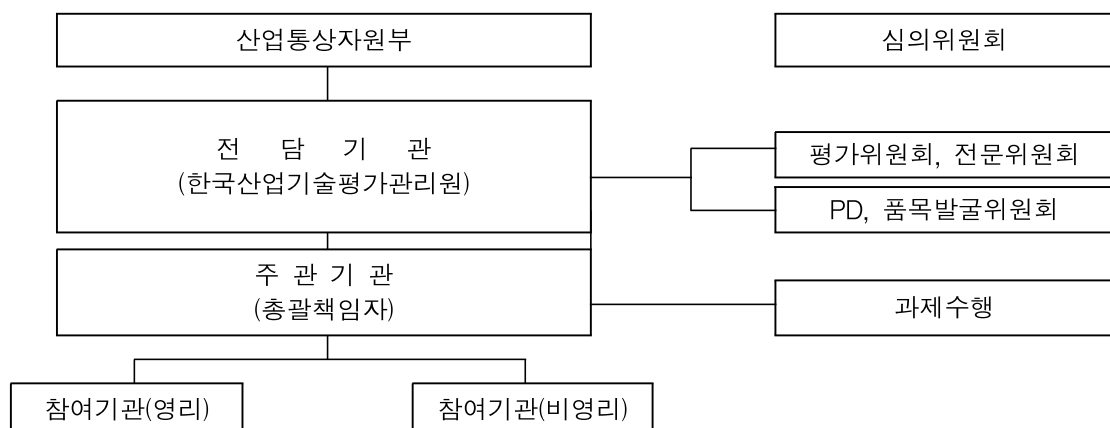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 기간 3년 내외에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14. 1월	'14. 2월~3월	'14. 4월	'14. 5월	'14. 6월

※ 상기일정은 품목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39.2억원(신규 10억원, 계속 29.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술개발의 전략성을 강화하여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핵심 부품·소재의 독자적 기술력 확보 및 생산 인프라 조성
- 개인용 이동수단 부품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 개발 기술이 실질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1 : 1	12 : 1	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735백만원	367백만원	75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수송플랜트평가팀 : ☎ 02-6001-0747 (www.keit.re.kr)

3-마.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첨단연구장비전문기술

1. 개 요

- 산업활용도 및 시장수요, 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큰 연구장비의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연구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제고
 - 독자적 연구장비 생산기반과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5년 이내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큰 연구장비 완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지식경제 연구장비 분류체계에 분석·계측·시험 연구장비로 표기되어 있는 품목
 - 제조·생산장비, 가공·공정장비 및 대형시설·설비, 데이터 처리시스템 등은 제외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2014년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45.67억원(계속 45.67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연구장비관련 핵심 기술력 및 생산기술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8.7 : 1

* 2011년, 2012년 신규선정 없음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67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산업기술기반팀 : ☎ 044-203-450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8 (www.keit.re.kr)

3-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1. 개 요

-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오염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 개발 및 비관세 무역장벽화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제품의 설계, 생산, 수송, 사용, 폐기/재자원화 등 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감축하는 청정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공정의 환경부하 저감과 자원의 효율성 제고하는 분야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여 무역장벽을 극복 가능한 분야

(1)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 EU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신산업 창출이나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분야
- 기존의 규제별 대응에서 국가에 관계없이 산업별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

(2) 녹색제품생산기술

- 자원의 소과정 순환측면에서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
- 소형화, 경량화, 최적수명화, 저에너지 사용제품 등 환경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인 제품 설계분야

(3) 청정공정기술

- 기존 생산공정의 혁신적 개선을 통해 오염물 발생을 완전 제거 또는 획기적 저감을 위한 공정개발 분야(Ionic liquid, 나노 촉매 등)
- 현재는 상용화하는데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2~3년 후에는 핵심 산업환경 기술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생산공정의 통합(Process integration) 또는 타 기술기반을 활용한 융합공정 기술 분야
- 기존의 화학공정을 바이오 기술을 이용하여 오염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분야

(4) 제품서비스화기술

- 제품의 품질,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 환경오염 저감 및 제품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유도·평가할 수 있는 기술분야
- 서비스 형태 구축에서 필요한 시스템 및 네트워크 기술분야
- 제품서비스화 모델에서 서비스 영역으로서 특허화 가능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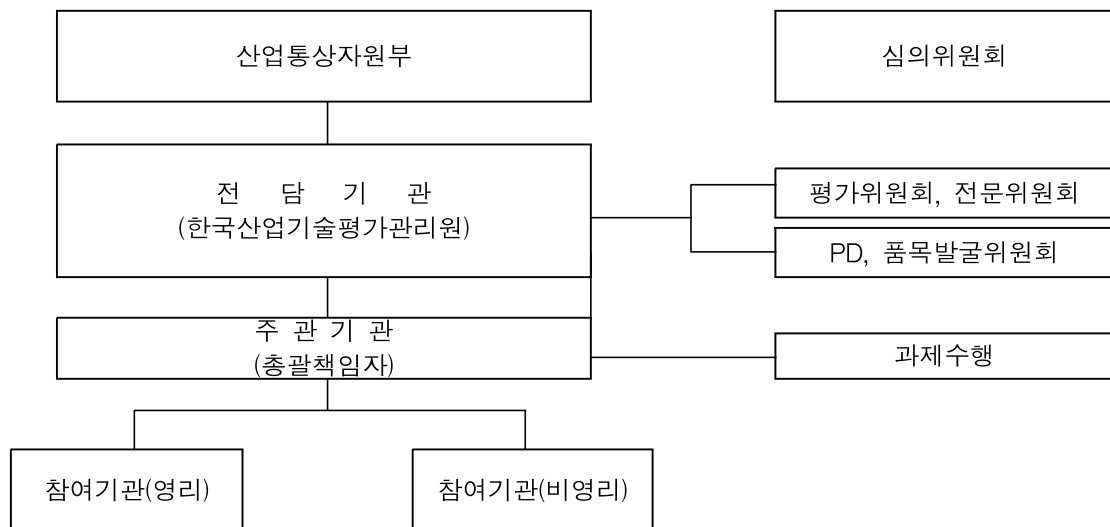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품목기획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14. 1월	'14. 2월~3월	'14. 4월	'14. 5월	'14. 6월

※ 상기일정은 품목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196.16억원 (신규 24.26억원, 계속 171.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중소·중견기업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다수 육성하기 위한 품목 중점 지원
- 국내외 산업·경제 환경 전망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여, 세계 Top10 기업 배출, 경쟁우위 확보를 통하여 세계시장 개척 및 시장의 다변화,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중소·중견기업군 내실화) 등 기여 가능한 품목 도출하여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87 : 1	1.8 : 1	4.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91백만원	456백만원	45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 044-203-4246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 ☎ 02-6001-0797 (www.keit.re.kr)

3-사.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1. 개 요

- 감성소비 확산에 대응하는 디자인 개발·보급 및 기업의 디자인 경영혁신 지원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여 바로 사업화 가능한 디자인 기술을 개발토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CMF디자인) 색채, 소재, 마감 처리기법 개발로 관련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기술
- (Universal디자인) Silver, Kids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기술
- (Green디자인) 리사이클, 저탄소, 환경 위해요소 저감 등과 관련한 디자인기술
- (Packaging디자인) 제품의 소비감성 자극, 물류비 저감,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한 디자인기술
- (Service디자인)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의 형태나 기능을 보여주는 디자인기술
- (주력산업디자인) 육상교통기기, 해양·조선, 로봇, 의료, 전기전자 분야의 디자인기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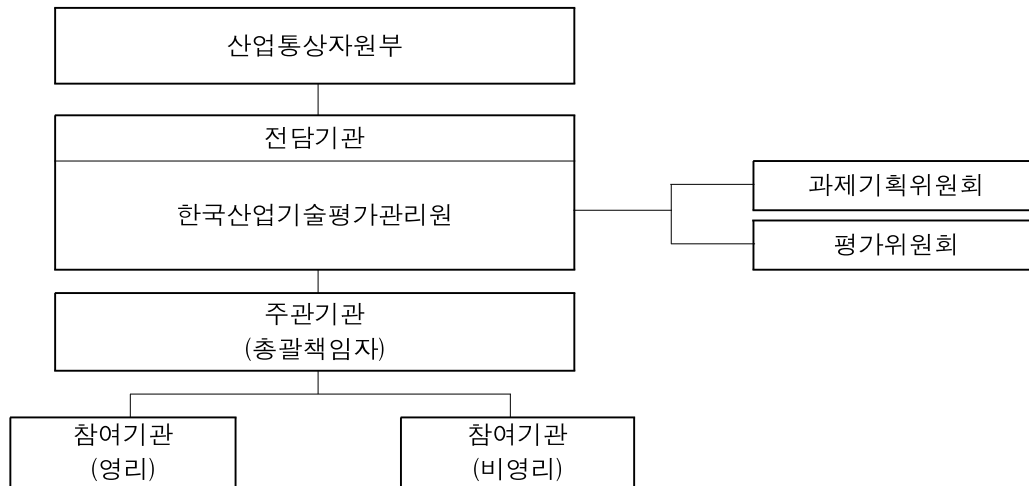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디자인전문기업 포함)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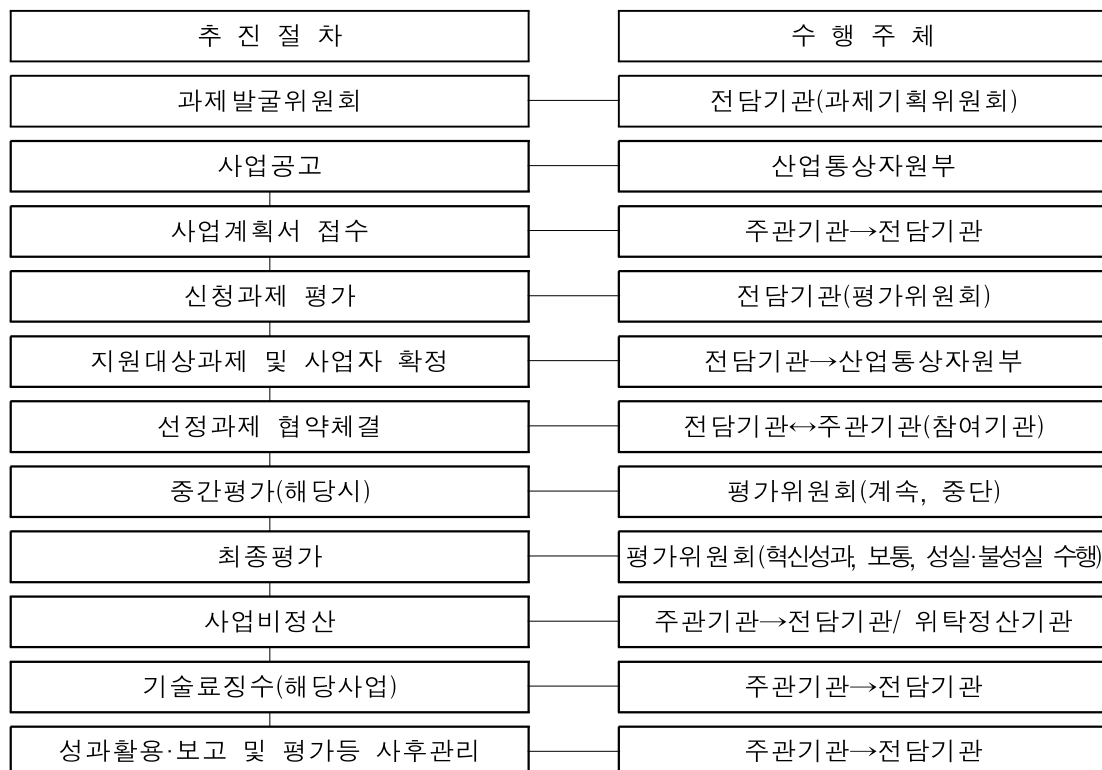
- 총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 지원 세부내용은 공고 참조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사업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4월	'14. 5월	'14. 5월	'14. 6월	'14. 6월

※ 상기일정은 품목기획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159.82억원 (신규 159.8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디자인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주력산업분야 미래 시장 선점이 가능한 도전적인 제품 개발로 주력산업분야 혁신 창조
- 디자인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로 글로벌 경쟁력 및 수입대체 효과 제고
- 사장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회 제공과 미응모 등을 통한 잔여 예산을 고려, 10%내외는 자유공모로 선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7 : 1	3.3 : 1	4.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41백만원	269백만원	27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 044-203-437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9, 7391 (www.keit.re.kr)

3-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주력 및 신산업)

- 창의산업기술개발

1. 개 요

- 미래 유망산업 분야 독자 기술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틈새시장 공략 등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2. 지원대상분야

- 바이오 체외진단장비, 로봇응용 제품, 주조금형 첨단화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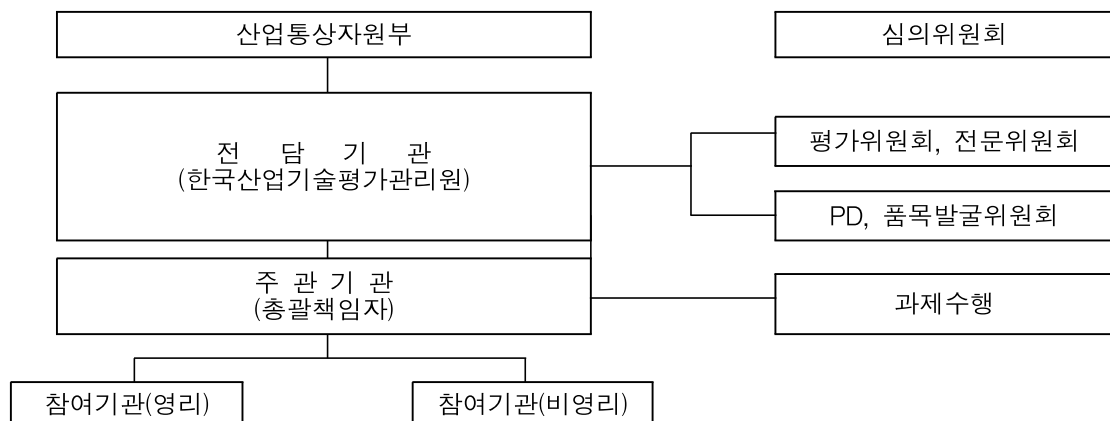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하며,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4. 지원내용

- 총 기술개발기간 2~3년 이내에서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 ※ 정부출연금은 기술개발사업비의 75%까지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 2014년 신규과제 없음

7. 지원규모 : 36.18억원(계속 36.1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중소·중견기업 역량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향후 글로벌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
- 바이오 체외진단장비, 로봇응용 제품, 주조금형 첨단화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에 기여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3.2 : 1

* 신산업기술개발은 2013년 신규사업임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42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 ☎ 044-203-4358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5 (www.keit.re.kr)

4.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1. 개 요

-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7대 분야별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핵심 기술개발 지원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신성장동력 7대 분야 장비의 상용화 기술개발
 - (수요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장비
 - (수요창출)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
 - 공통핵심 기술개발 : 2개 이상 분야의 장비에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분야의 주관기관은 기업이 원칙이며, 대학 및 연구소 참여 가능
 - 공통핵심 기술개발 분야는 과제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공통핵심 기술개발 : 5년 이내
- 지원금액 : 연간 10억원 내외 지원
 - ※ 기술개발과제에 따라 지원기간 및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와 동일함

6. 추진일정

수요조사 및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 '14. 6월	'14. 7월 ~ 8월	'14. 9월	'14. 10월

※ 상기일정은 로드맵 및 과제기획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320억원 (신규 112억원, 계속 208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장비 국산화 개발의 수요가 많고, 시제품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성장동력분야 장비 발굴 및 집중 지원
- 장비기업(중소·중견기업)-수요기업(대기업)의 기술개발 협력으로 동반성장 R&D 체제 구축 및 사업화 성과 촉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3 : 1	2.8 : 1	3.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060백만원	930백만원	9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2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로봇평가팀 : ☎ 02-6001-0778 (www.keit.re.kr)

5.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항공우주 부품·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항공우주부품 관련 상용기술개발 및 원천핵심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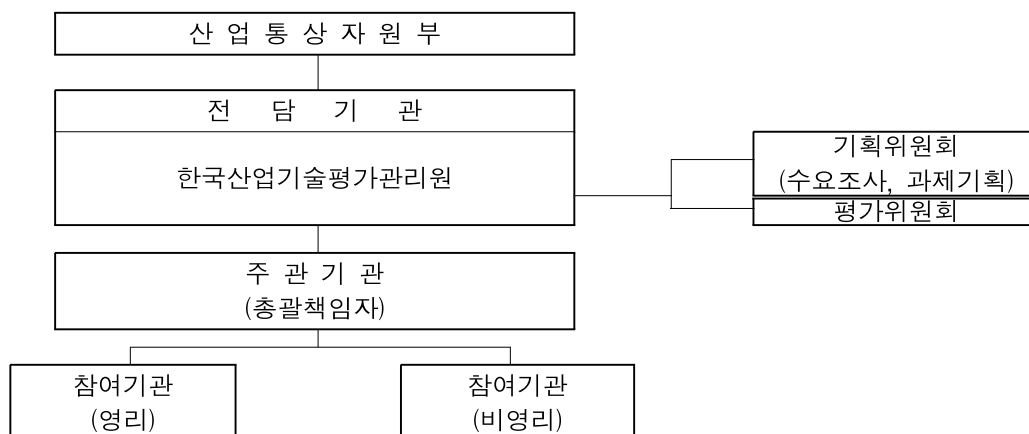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4. 지원내용

-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와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
- 지원기간 : 단기(3년 이내) 또는 중장기(총 5년 이내, 단계별 2~3년)
- 지원금액 : 기술개발범위 및 과제성격에 따라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기술청사진/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전담기관(KEIT)/ 항공우주기술연구조합	과제기획 후보과제 발굴
		과제기획과제 선정
		과제기획 수행기관 선정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6월	'14. 7월	'14. 8월

※ 상기일정은 로드맵 및 과제기획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208.25억원 (신규 77.84억원, 계속 123.91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항공-IT 융합기술 분야, 완제기 부품국산화 및 성능개량기술 지원
- 차세대 EMA, 지능형 완충장치 등 민수 항공기 부품 국제공동개발 및 수출 사업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3 : 1	1 : 1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124백만원	646백만원	4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 : ☎ 02-6001-0773 (www.keit.re.kr)

6.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사업

1. 개 요

- 지능형자동차분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후발국의 추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 기반구축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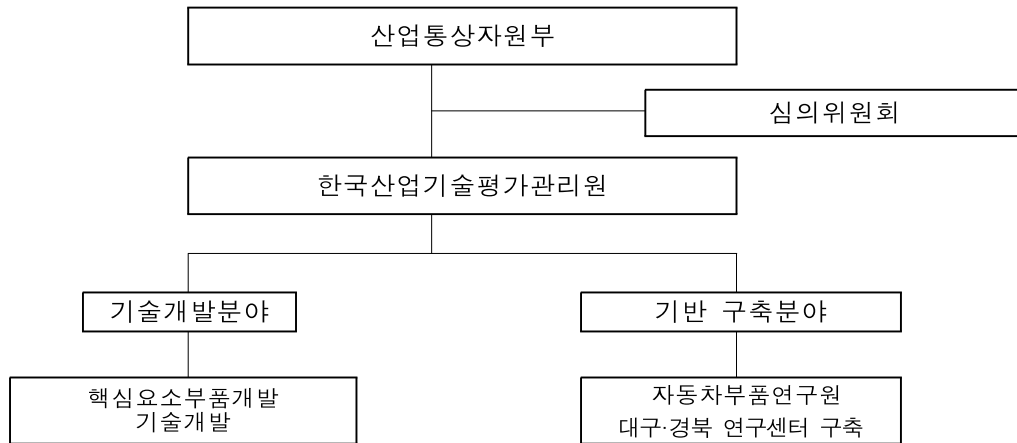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지원분야의 특성에 따라 사업공고시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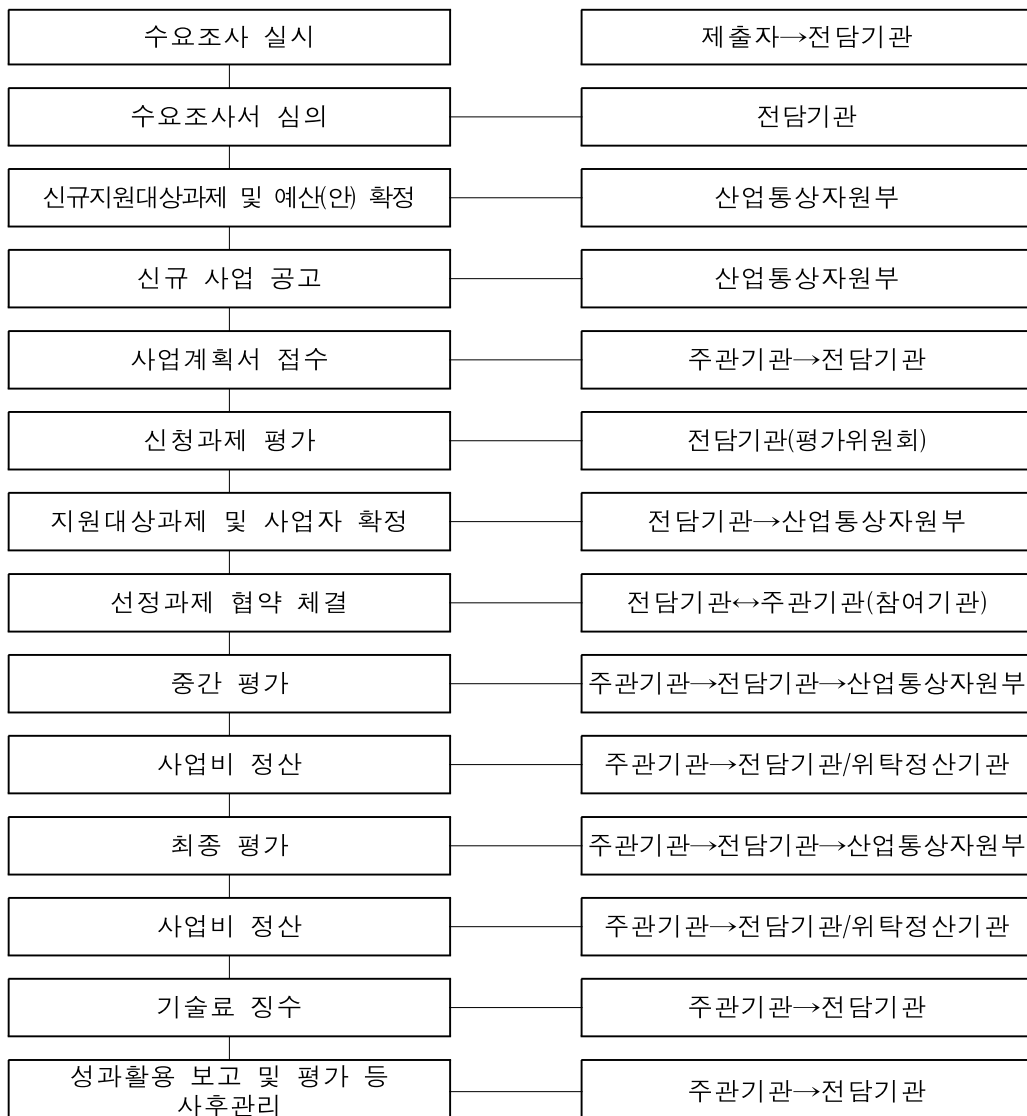
- 기술개발과제 및 기반구축과제로 구성되며,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과제당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 핵심요소부품 : 과제당 연간 3~5억원 내외로 지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14. 2월	'14. 3월	'14. 4월	'14. 5월~

7. 지원규모 : 178.14억원(신규 55.69억원, 계속 122.45억원)

구 분	2014년 예산(백만원)		
	신 규	계 속	합 계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 연구센터 구축	-	800	800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5,569	11,445	17,014
합 계	5,569	12,245	17,814

* 세부사업별 예산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과제 지원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연구센터구축 계속과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4 : 1	3 : 1	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06백만원	478백만원	64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2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수송플랜트평가팀 : ☎ 02-6001-0747 (www.keit.re.kr)

7.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 개 요

-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아라미드 섬유, 초고분자 PE섬유 등 슈퍼섬유소재를 적용한 융합소재·부품 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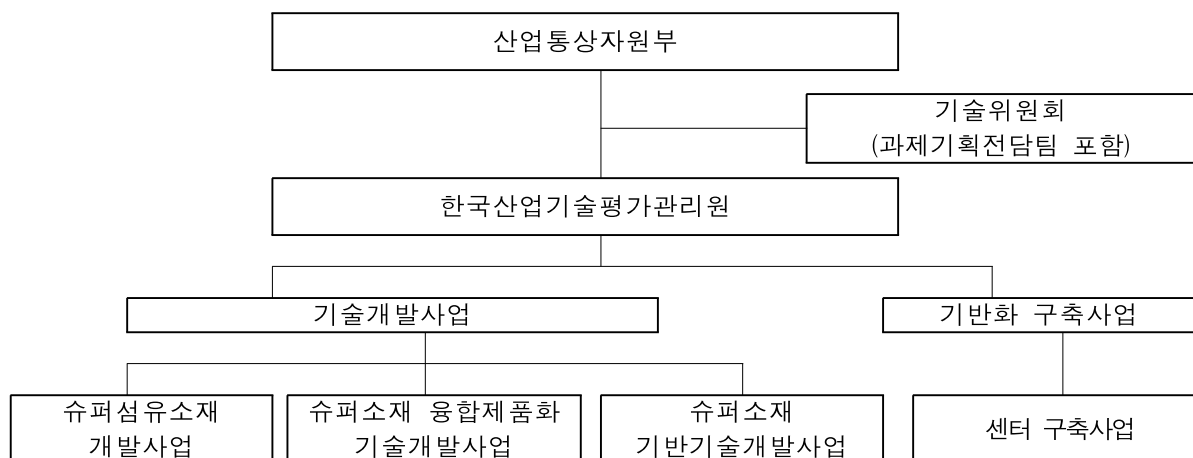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학연 공동개발로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외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과제당 단기/중기로 구분하여 평가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 산·학·연 컨소시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방향 설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로드맵/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기획실무위원회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2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7. 지원규모 : 218.21억원(계속 218.2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기술개발 지원
- 국내에서 개발된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연구장비, 시험설비 등)을 통한 산업화 촉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 : 1	1.6 : 1	2.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10백만원	500백만원	50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9-4294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 ☎ 02-6009-8396 (www.keit.re.kr)

8.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1. 개 요

- 스타일링에 한정된 기업역량을 디자인 수혜기업을 리딩할 수 있도록 창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 전문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디자인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디자인기술분야 전반(자유공모)

3. 신청자격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 9조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 된 기업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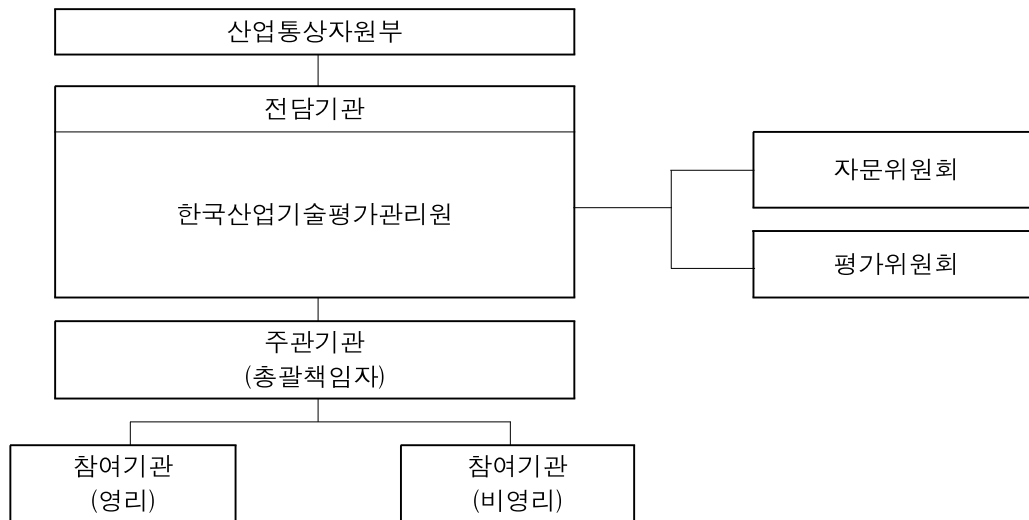
- 총 지원기간 : 1년 이내(지원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 공고)
- 지원조건 : Matching Fund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사업비의 75%이하이고,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 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 기술료 징수 대상
-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건강한 디자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성장단계별 구분 지원(案) >

구분		창조기업	선도기업	글로벌기업
지원 기준	매출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채용	가점부여 (3점부여)	1명 의무 (추가 1명당 3점)	2명 의무 (추가 1명당 3점)
	지원금	1.5억원 이내	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추진계획 확정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14. 2월~3월	'14. 3월	'14. 4월

7. 지원규모 : 88.95억원 (신규 88.9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전반기) 디자인특화프로세스(디자인리서치 및 디자인방법 등)개발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전문기업으로 기반 마련
- (후반기) 디자인특화프로세스를 적용한 新시장창출형 모델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7 : 1	2.6 : 1	6.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85백만원	273백만원	35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 ☎ 044-203-437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 ☎ 02-6000-7389, 7391 (www.keit.re.kr)

9.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일반 국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체감할 수 있으며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 편익의 전반적인 증진과 사회 일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2. 지원대상분야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 및 사회안전, 작업환경 등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해결 등을 위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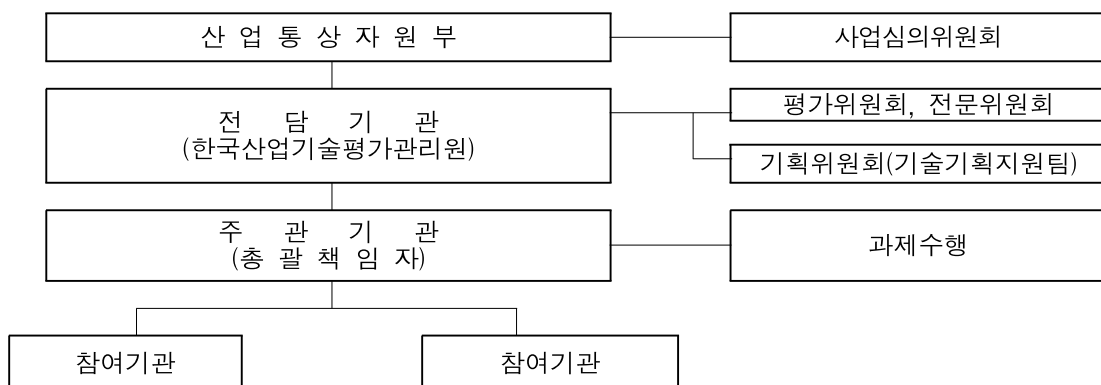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 향후 과제성격에 따라 분야별로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익증진 및 일반국민들의 사회적 이슈해결 등을 위한 분야에 실수요자 참여 기반 문제해결형·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
- 지원조건 : 2~4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지원과제 수 및 정책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술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기술수요조사 실시
기획대상과제 도출	전담기관 기획위원회(기술기획지원팀) 사업심의위원회	기획대상과제 후보도출
과제기획	전담기관 (과제기획전담팀)	과제제안요구서(RFP) 등 작성
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신규대상과제 공고
신규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기술료 징수(정액, 경상)
사후 관리	전담기관(KEIT)	성과관리 등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3월 ~ '14. 8월	'14. 8월	'14. 10월	'14. 11월

7. 지원규모 : 105억원 (신규 51억원, 계속 5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수요맞춤형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제품·사용자가 수요조사·과제기획 등 R&D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인증체계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및 조기사업화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4 : 1	6.75 : 1	7.0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388백만원	241백만원	32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 ☎ 044-203-4515 (www.mk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 02-6000-7375 (www.keit.re.kr)

10.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 기술개발

1. 개 요

- FTA 협상타결(한-EU) 및 한중 FTA 추진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 보호를 위해 핵심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화 기술개발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융합 첨단의료기기 전략품목 선정·집중 개발
 - 수요자(병원)와 의료기기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요자연계형 기술개발'추진
 -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IT 융합형 영상장비 제품화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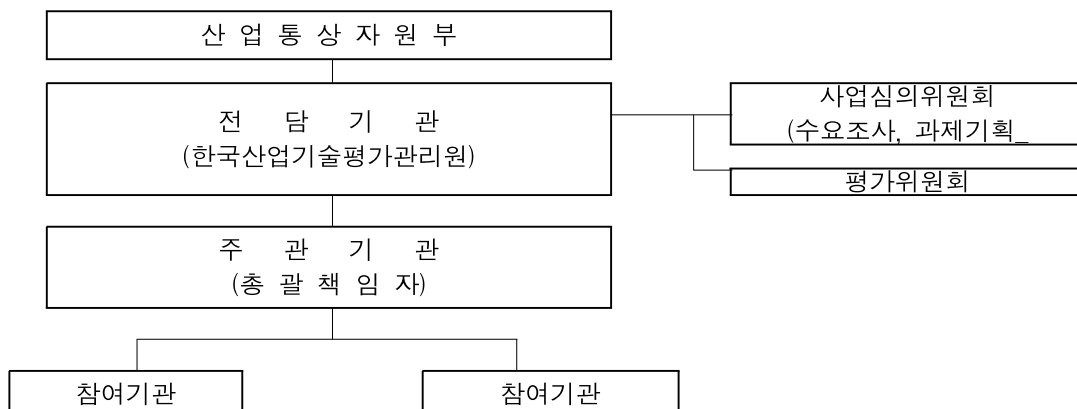
3. 신청자격

- 총괄주관기관 : 의료법 제3조2항 정의에 포함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 세부주관기관 : 기업
- 참여기관 : 기업, 연구소, 병원 등(세부 사업 공고시 참조)

4. 지원내용 : 연간 15억원 내외, 최장 3년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공고(산업부) ⇨ 접수 및 사전검토(KEIT) ⇨ 기술성평가(KEIT) ⇨ 사업자 지정,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산업부, KEIT)

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사업계획 공고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협약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4월	'14. 5월	'14. 6월 ~

7. 지원규모 : 65억원 (신규 39억원, 계속 2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개발)
 - 핵심의료기기 13대 전략품목중 매출액비중, 부가가치, 해외수입비중이 높은 전략품목으로 세계일류 제품과의 제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 과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3.25 : 1	4.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1,500 백만원	1,205 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 042-715-2232 (www.keit.re.kr)

11. 산업융합촉진사업

1. 개 요

- 중소·중견 기업이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융합 신제품의 인증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기반으로서 산업융합 공통정보 개발 및 활용사업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산업융합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촉진 분야
- 공통활용정보 개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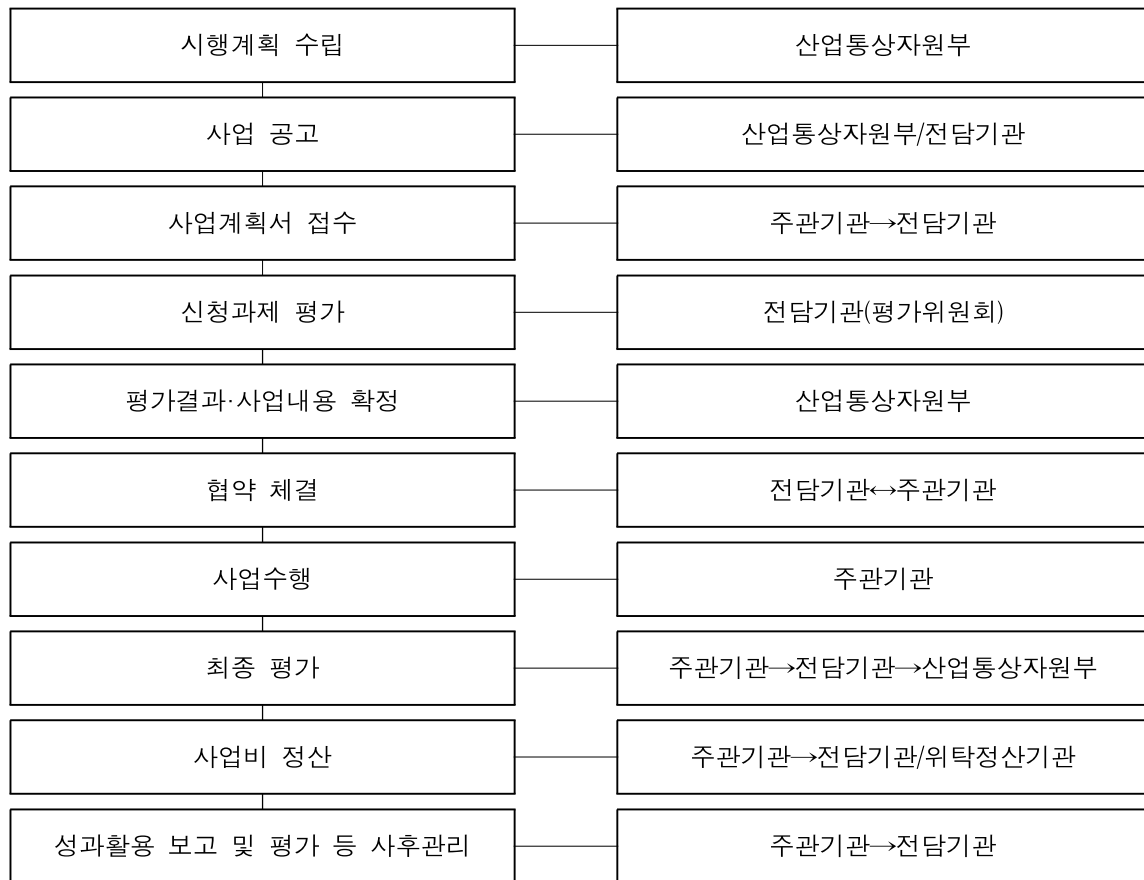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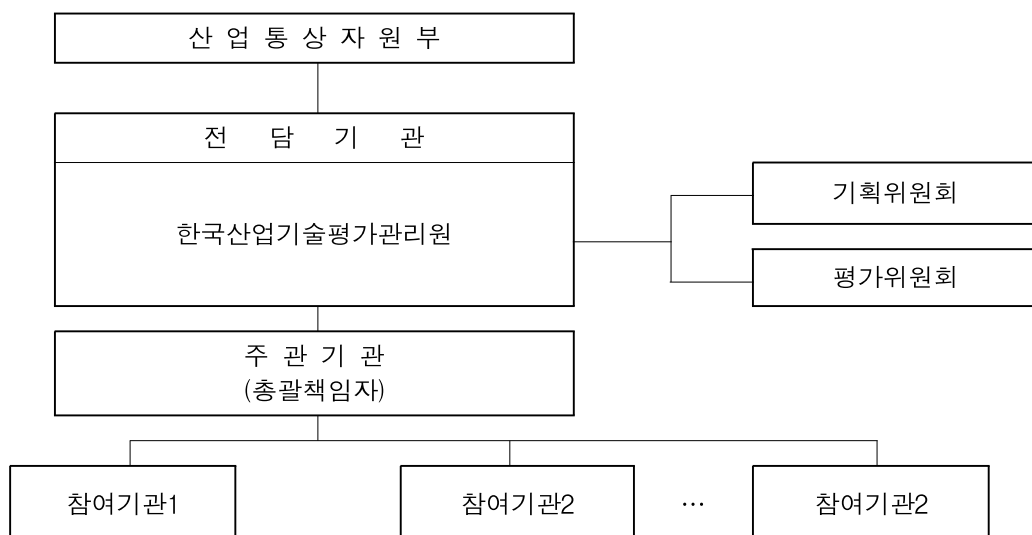
- 산업융합신제품개발 및 사업화촉진 부문
 -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목표로 제품 개발 단계별 맞춤형 통합 연계지원 확대
 - 산업융합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등을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기초 R&D 수행
- 공통활용정보 개발 부문
 -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공통활용정보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산업융합 분위기를 확산 및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역량을 강화하고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3월	'14. 4~5월	'14. 6월

7. 지원규모 : 61.76억원 (신규 12.25억원, 계속 49.5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융합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업의 융합대응역량 강화 지원
 -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의 연구개발지원
 - 개발된 시제품(융합 신제품)의 시험·평가항목 및 규격 개발 등 인증에 관한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2.3 : 1	3.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267백만원	35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 044-203-4209 (www.motie.go.kr)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 02-6000-7364,7369 (www.keit.re.kr)

12.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다양한 응용성 및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닌 그래핀 소재를 조기 상용화함으로써 글로벌 그래핀 시장을 선점하고, 그래핀 소재에서 완제품까지 value chain을 포함하는 그래핀 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그래핀 소재 및 5개 응용분야 부품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 OLED, 전자파차폐, 터치패널, 하이배리어소재, 고내식코팅재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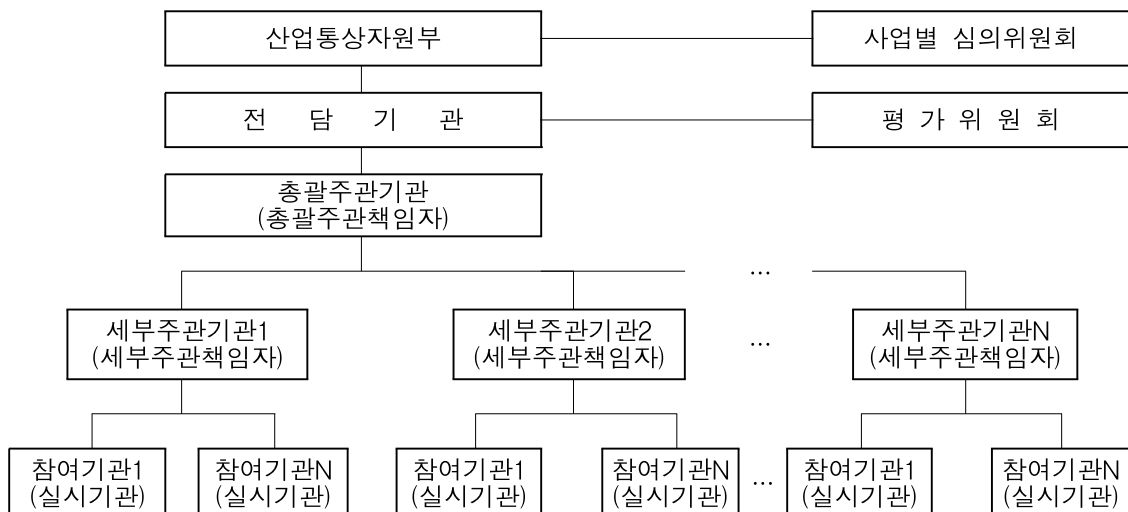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6년 이내로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절차

로드맵 통합기술청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로드맵/통합기술청사진 수립
과제기획	기술위원회 / PD 과제기획전담팀	수요조사
		과제기획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14. 5월	'14. 5월~6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10억원 (계속 11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그래핀 소재 및 5개 응용분야 부품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65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 : ☎ 02-6009-7367, 7368 (www.keit.re.kr)

13.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역할을 할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 기술 개발
 - 리스크가 많은 산업기술 분야에 대해 정부 주도의 혁신적 R&D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

2. 지원대상분야

-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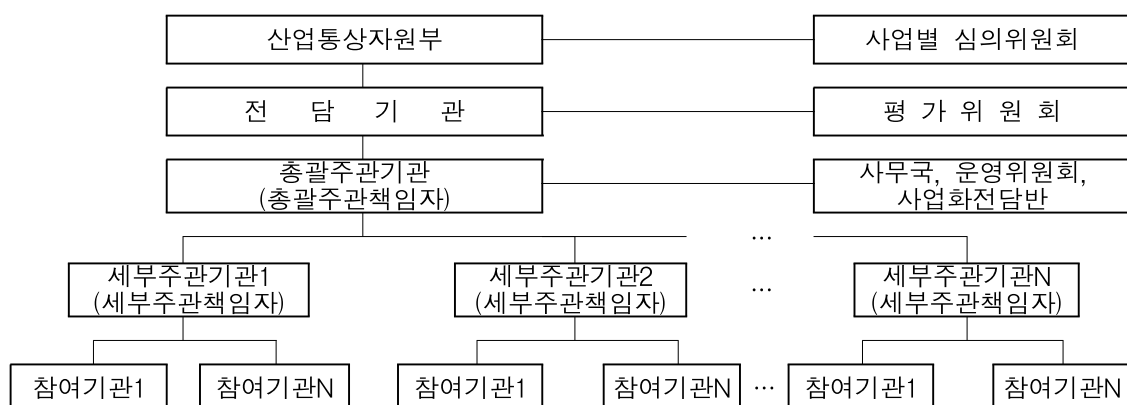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75% 이내) 형태로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평가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단계·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불성실과제가 아닌 과제는 기술료 계약 체결시 정한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적용
성과활용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차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14. 5월	'14. 5월~6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411.14억원(계속 411.1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4개 응용분야 부품개발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신시장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으로 중견·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제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2:1	10: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3,900백만원	7,96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 ☎ 044-203-4522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 ☎ 02-6009-8213 (www.keit.re.kr)

14. 나노융합2020사업

1. 개 요

- 나노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지향하는 나노융합기술 R&BD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나노기술 시장 선점 달성(산업부/미래부 공동연구사업)

2. 지원대상분야

- 기존 기초연구성과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공공부문(대학 및 연구소)이 보유한 상용화 가능한 우수 나노기술을 산업계의 실수요와 연계하여 상용화를 달성하는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지원 사업'
-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현장(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긴급한 당면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전문가 혹은 기술을 매칭하는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 사업'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 기반 기술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최종 상용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을 원칙으로 함. 단, 선행기술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부문이 1년간 주관기관 수행이 가능하나 이후 주관기관을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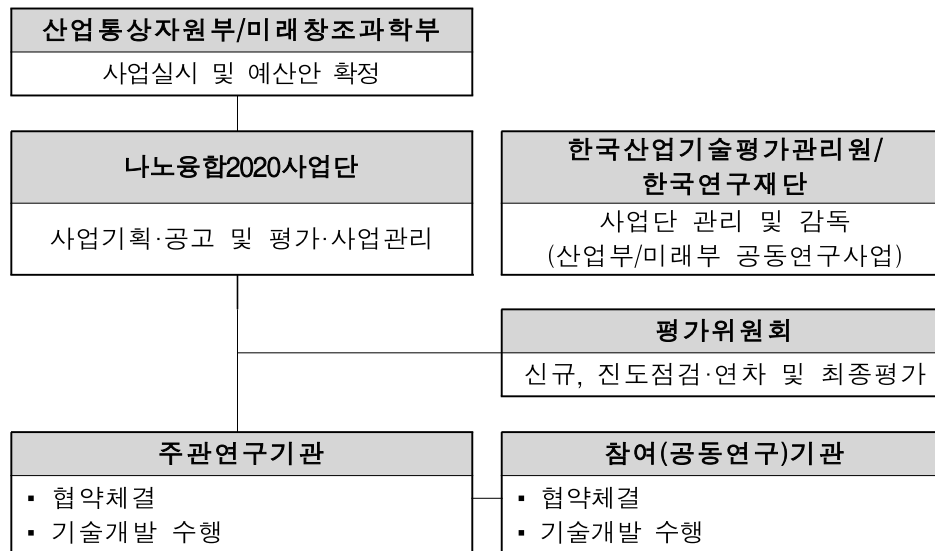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사업자등록 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공공부문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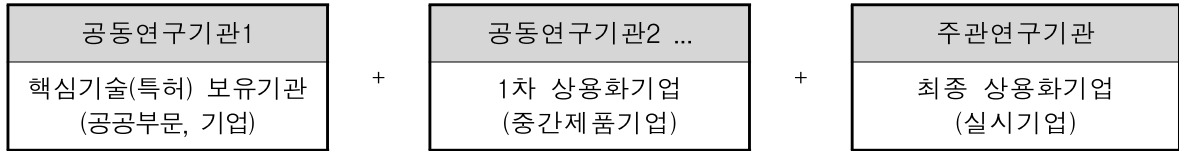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과 기간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 파급효과, 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 단년도 협약임. ※ 현안해결 나노기술 매칭 사업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함.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선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나노기술 분야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공공부문 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최종 상용화를 추진하는 실시기업으로 구성된 패키지형 과제로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짐.



※ 1차 상용화기관(중간제품기업)은 생략될 수 있음.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2월 ~ '14. 2월	'14. 2월~3월	'14. 4월	'14. 5월

7. 지원규모 : 145.3억원 (신규 44.16억원, 계속 101.14억원)

* 본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 미래부 예산(33.2억원(신규 9.7억원, 계속 23.5억원)) 미포함

8. 중점 추진사항

-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유형 I~III)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유형	형태	정의
I	시장 창출형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II	제품 완성형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 :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III	공정 혁신형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 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최종 상용화 목표의 필수 요소(이하 예시)

-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3.80 : 1	3.9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616백만원	61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테크 : ☎ 044-203-4393 (www.motie.go.kr)
- 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 02-6000-7492, 7494, 7496 (www.nanotech2020.org)

15.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1. 개 요

- 기술의 개발·이전·확산 및 기술간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제품, 안전기준, 시험·검사 방법 등의 표준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표준제정 보급, 인증제 운영을 위한 인증 설비 구축, 품질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와 계량·측정기의 조작방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 계량·측정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IT분야, 차세대 신성장 동력 분야 등 우리기술 선도분야와 녹색기술 표준화 등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제정·보급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신수요분야 시험장비 구축 등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신품질경영기법 개발·보급 및 확산, 품질경쟁력 수준조사 및 평가, 지역별 안전품질경영 네트워크 기관운영 등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 및 제품안전 선진기술력 확보, 제품안전에 위한 안전기준 및 시험·검사방법의 선진화 등 기반조성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참조표준 개발·보급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국가코디네이터 분야별 표준프레임워크/표준화 로드맵 개발 및 국가 R&D 과제의 표준화 기획/자원/평가 등을 통한 표준화 연계 활성화
계량·측정기술고도화	IT융합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의 조작 방지 및 성능향상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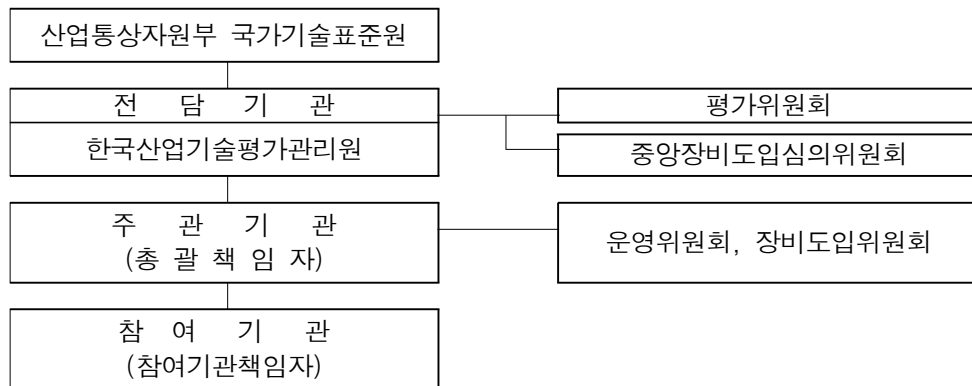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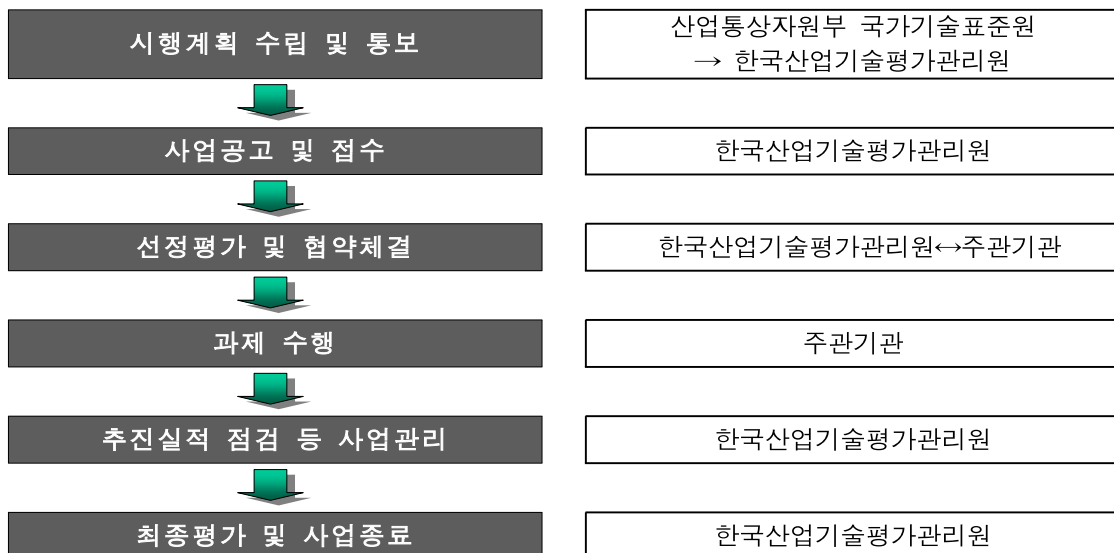
구 분	지원내용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분야당 연간 15억원 내외 지원
품질혁신기반구축	소요비용의 75%~100%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억원 내외 지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과제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100%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100%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75%까지 정부출연금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3월	'14. 4월	'14. 5월

* 신규 과제 지원 기준이며 세부사업에 따라 추진일정이 상이

7. 지원규모 : 475.71억원 (신규 213.09억원, 계속 262.62억원)

구 분	신 규	계 속	합 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74.54억원	158.22원	232.76억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10억원	100.2억원	110.2억원
품질혁신기반구축	20.0억원	0.4억원	20.4억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8.05억원	2.5억원	40.55억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24.0억원	0.5억원	24.5억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32.0억원	0.6억원	32.6억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14.5억원	0.2억원	14.7억원
합 계	213.09억원	262.62억원	475.7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개발기술의 조속한 국제표준 선점과 원천기술의 국제표준개발, 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시험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특화된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으로 시험능력 수준 선진국 수준 제고
- 시장변화, 생산방식변화, 고객요구 다양화, 서비스 경쟁력 등 기업경영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품질경영 기법개발
- 소비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기술 개발 및 제품안전에 관한 기반조성 구축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 IT기술을 이용한 계량·측정기기의 기술개발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IT 융·복합화로 새로운 계량·측정기기의 선도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계량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1.3 : 1	1.5 : 1	2.46 : 1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	-	-
품질혁신기반구축	-	-	1.5 : 1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3.4 : 1	2.9 : 1	2.24 : 1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	-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	-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102백만원	149백만원	128백만원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	-	1,050백만원
품질혁신기반구축	-	-	226백만원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115백만원	145백만원	119백만원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	1,000백만원	1,950백만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	-	3,500백만원
계량측정기술고도화	-	-	-

11. 문의처

사업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02-509-내선번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내선번호)	
	소관과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국가표준기술력향상	국제 표준과	7400	표준인증평가팀	8261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인증산업진흥과	7289	표준인증평가팀	8262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제품안전정책과	7238	표준인증평가팀	8263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	계량측정제도과	7230	표준인증평가팀	8263
품질혁신기반구축	시험인증정책과	7285	표준인증평가팀	8264
국가표준코디네이터	국제 표준과	7399	표준인증평가팀	8265

16.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온실가스(CO₂) 저감과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할 세계 최고수준의 중대형 리튬 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시험·평가·인증기반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용 핵심 소재 및 부품 개발
- 개발된 부품·소재를 적용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최적화된 셀 및 팩 개발
- 동 사업 기술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연계, 이차전지 평가, 분석 기준 마련 등 사업화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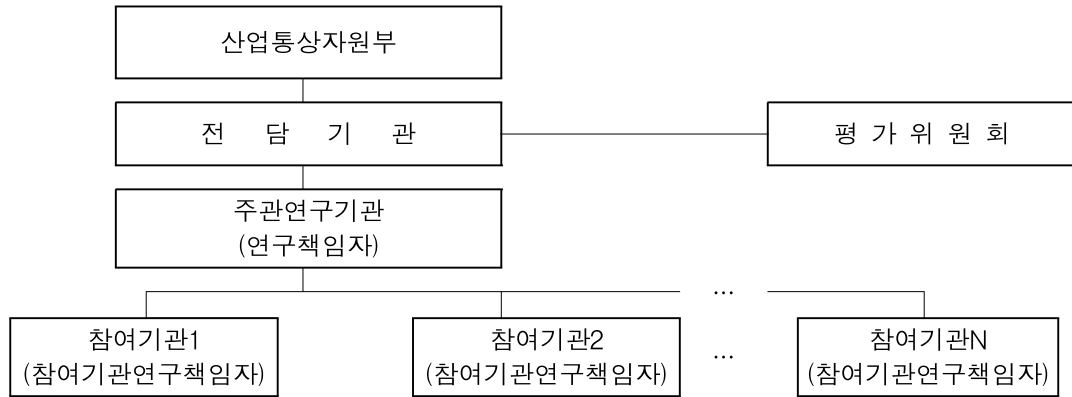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중대형 리튬이차전지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7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별 중간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5~8월	'14. 6~9월

7. 지원규모 : 77.15억원 (계속 77.1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학·연 협업형 R&D 추진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품소재 국산화율 제고와 관련 업계간의 supply chain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75 : 1	2 : 1	3.7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730백만원	1,000백만원	1,11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 042-715-2234 (www.keit.re.kr)

17.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빛을 비추는 단순 조명 기능을 뛰어 넘어 통신·제어·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제공하는 신개념 LED시스템조명 개발

2. 지원대상분야

- LED 시스템조명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부품 및 조명 엔진모듈 개발
- 시스템조명 엔진모듈을 적용한 실내용 LED 시스템조명 응용제품 개발
- 응용제품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조명 평가지표, 설계 가이드라인 등 원천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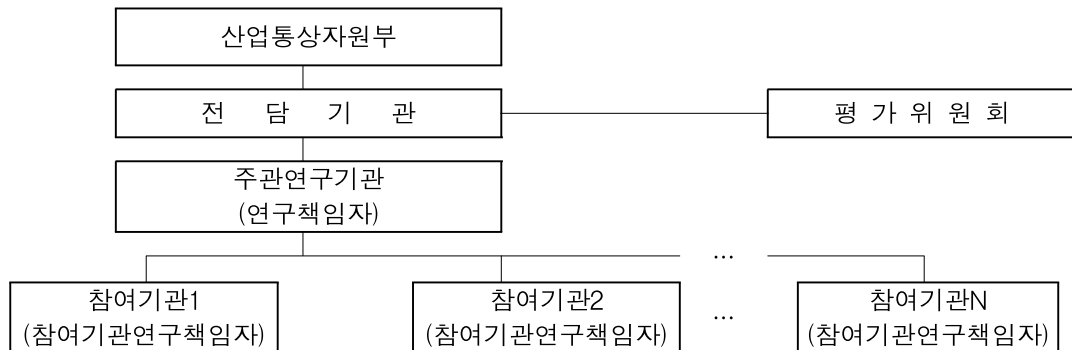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LED 시스템조명용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을 적용한 응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사업자단체 등
- 지원조건 : 3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 / 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과제별 중간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55억원 (계속 5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우리나라가 기존의 LED조명 선진국 Catch-up에서 First-mover로 전환하기 위해 세계 최초 LED조명 플랫폼(시스템조명)을 확보함으로써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LED조명시장 세계 주도권을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4.25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1,337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평가팀 : ☎ 042-715-2233 (www.keit.re.kr)

18.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1. 개 요

-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지,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가 큰 휴대폰, DTV,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시장규모가 크고 수입비중이 높은 휴대폰, DTV, 자동차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상용화 단계까지 기획하고, 글로벌 R&D 추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확대가 가능한 품목, 분야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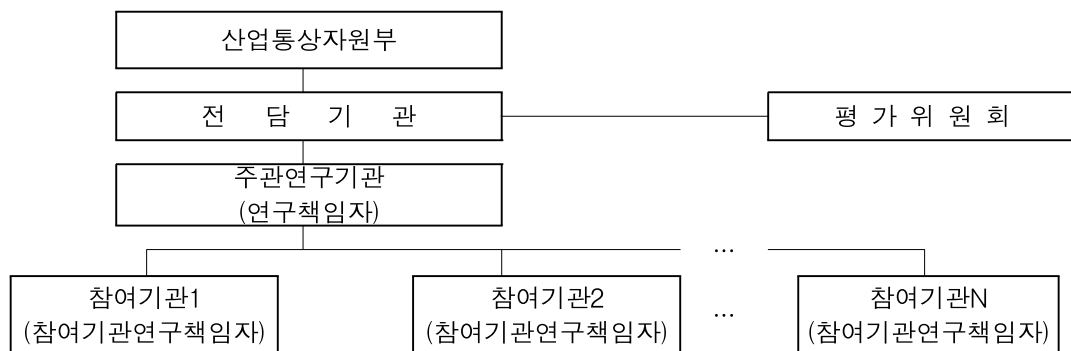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시스템반도체 제품의 조기 상용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조합 등
- 지원조건 : 2~5년 이내,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체계는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절차

- 사업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관리전담기관) → 사업계획서 평가(평가위원회/평가전담기관) → 지원과제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정부출연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주관기관)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1월 ~ '14. 2월	'14. 3월	'14. 4월	'14. 5월

7. 지원규모 : 251.46억원 (신규 120.46억원, 계속 13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대형 R&BD) 시장규모가 크고 수입비중이 높은 휴대폰, DTV, 자동차용 핵심 시스템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집중 투자
- (수요연계형 공동 R&D) 국내 글로벌 수요기업은 개발목표 및 사양제시, 팹리스는 설계·개발, 파운드리를 제조, 學·研은 원천기술을 지원하는 공동 R&D추진을 통해 상용화 연계
- (글로벌 R&D) 해외 선진기관·기업과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공동개발, 이머징마켓 수요창출형 상용화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시장 확대
- (수요자 지향 R&D) 한정된 사업기간,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 및 수요업체에서 요구하는 상용화 진행이 시급한 품목에 대해 산업체 중심의 자유공모 과제 진행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42 : 1	2.00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143백만원	3,000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5,4276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비 전자부품평가팀 : ☎ 042-715-2215 (www.keit.re.kr)

19.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1. 개 요

- 신성장동력분야등의 사업화유망기술 및 우수BM(Business Model)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 가능성이 높은 우수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 과정을 지원하고,
- 사업화유망기술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등 사업화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글로벌 선도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전 산업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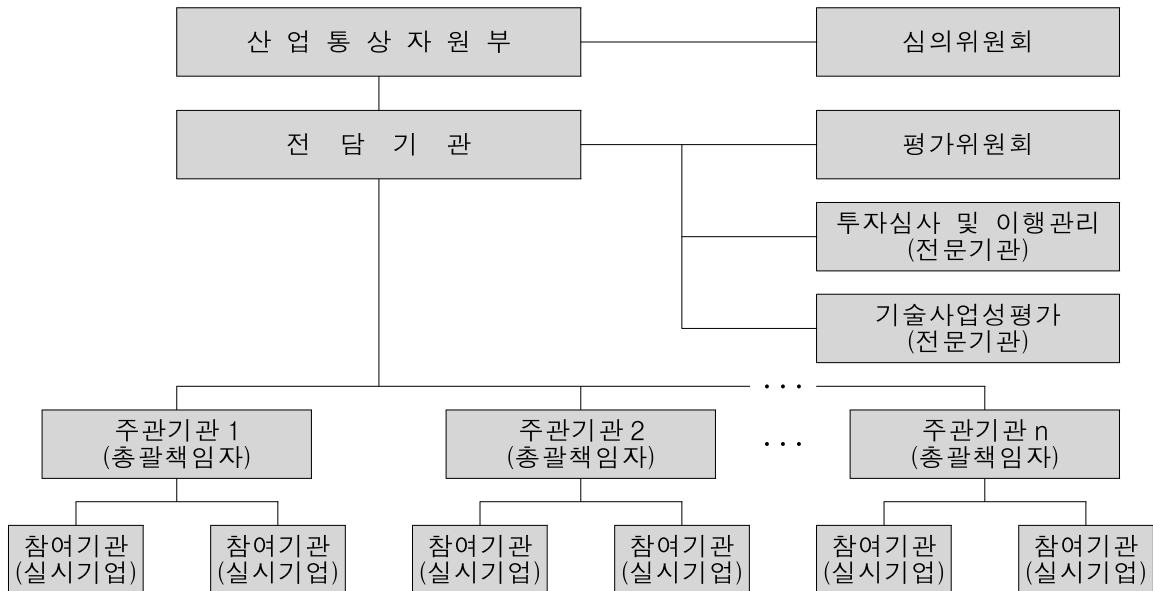
- 중소기업¹⁾, 중견기업²⁾, 기술사업화전문기관(BA)³⁾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
 - 3)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 테크노파크, 기술지주회사, 창업보육센터, 창업투자회사, 은행, 공공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4. 지원내용

- 글로벌시장 창출·선점이 가능한 핵심기술과 우수 BM(Business Model) 및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초기 필요자금을 연간 15억 이내로 지원
- 총 사업기간 2년 이내에서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 결정
-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BM기획형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기획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A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진도관리·중간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발표평가)
연차·최종평가	전담기관(KIAT)	평가위원회(현장실사+발표평가)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IAT)	최종평가결과 성공 또는 성실수행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5년 이내에서 징수
성과활용관리	전담기관(KIAT)	사후관리평가 등

6. 추진일정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사업화기획 및 투자연계	과제별 선정최종평가	협약 및 사업비지급
'14.2월~4월	'14.5월	'14.6월~7월	'14.8월	'14.9월

7. 지원규모 : 384.5억원 (신규 259.9억원, 계속 124.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신시장 창출가능성이 높은 BM(Business Model)의 사업화
- 글로벌 진출계획이 명확하고 시장파급효과가 큰 산업기술의 사업화
- 우수 BI(Business Idea)의 발굴 및 사업화를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5.5 : 1	8.0 : 1	6.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130백만원	1,220백만원	91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 044-203-4532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 ☎ 02-6009-4342, 4346, 4345 (www.kiat.or.kr)

20-가.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신뢰성산업체확산

1. 개 요

- 글로벌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뢰성 지원기관*의 인프라(인력·장비·기술)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고장문제 해결, 내구수명 연장 등)을 지원

* 신뢰성 인프라가 갖춰진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을 의미

2. 지원대상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관련 제조업 전분야

3. 신청자격

- 국내 부품소재기업 및 수요기업,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 공공연구기관, 대학, 신뢰성 전문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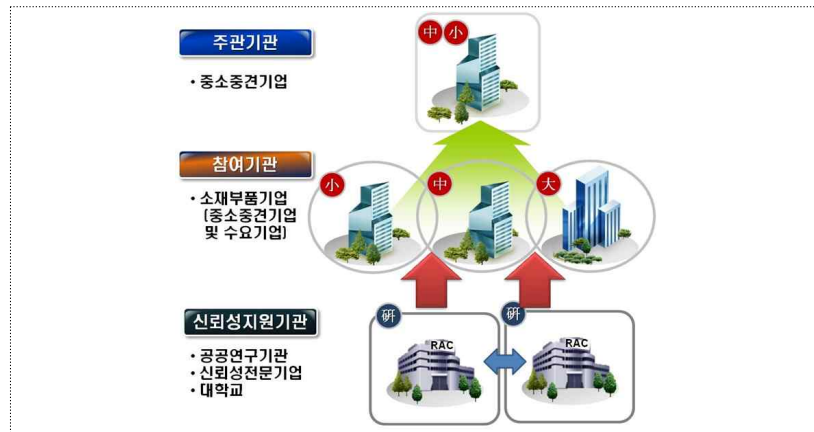
- 국산 소재부품의 필드고장문제(A/S, 필드클레임, 리콜)해결, 내구수명향상 등 신뢰성 향상 지원
- 지원유형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규모*
수요기업 연 계 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과 소재부품 기업간 신뢰성향상을 전제로 구매확약서(또는 MOU) 제출	2년 이내, (연간 3억원 내외)
	참여기관	소재부품기업, 국내·외 수요기업, 신뢰성지원기관		
자립형	주관기관	중소·중견 소재부품기업	개발생산 제품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1년 이내 (1억원 내외)
	참여기관	신뢰성지원기관		

* Matching Fund (민간출연 25%이상)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3월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97.9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77.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신뢰성향상을 통한 기업경쟁력강화 및 글로벌 수출판로개척, 신규거래처 확보, 수출 확대 등의 성과 창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1 : 1	3.9 : 1	2.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79백만원	295백만원	21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 044-203-426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반팀 : ☎ 02-6009-3923, 3926, 3928 (www.kiat.or.kr)

20-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 글로벌동반성장R&BD

1. 개 요

- 해외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미리 확보한 소재·부품 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소재 부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 분야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3. 신청자격

사업구분	주관기관 유형	참여기관 유형
글로벌 동반성장 R&BD	국내 중소기업 또는 국내 연구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주관기관이 국내 연구기관 또는 대학인 경우, 국내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1) 사업참여시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 관련 협정서(MOU), 협약체결시에 계약서 제출

2) 주관기관은 해외글로벌 수요기업이 발급하는 「기술개발 의뢰서」, 혹은 「구매의향서」 제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4. 지원내용

- 신규 지원규모(안) : 총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5억원

사업구분	연도별 사업금액	사업기간
글로벌 동반성장 R&BD사업	과제당 2억원 내외	최대 3년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사업형태 : R&D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및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 및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행 및 사업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결과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성과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 추진일정

과제기획 및 수요조사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14. 5월~6월	'14. 7월	'14. 9월 ~

7. 지원규모 : 29억원(신규 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한 해외글로벌 기업의 수요 규모, 신빙성 등 시장성에 초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3.5 : 1	11.5 : 1

※ 공모과제에 대한 경쟁률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지원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지원금	-	350백만원	17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과 : ☎ 044-203-426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북미유럽팀 : ☎ 02-6009-3944 (www.kiat.or.kr)

2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광역경제권별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 6개 권역, 22개 선도산업(40개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지원
 - * 선도산업 분야 및 프로젝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고

3. 신청자격

- (기술개발)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하며, 단독 참여는 불가
- (산업생태계지원) 2개 이상의 지역발전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

4. 지원내용

- 3년 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사업화가 가능한 유망상품(End-Product, 유·무형 제품&서비스, 완제품&부품소재) 개발 및 유망상품을 개발을 위한 기업지원(기술 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리기관) 권역별 지역사업평가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강원, 제주)
- (사업수행)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6. 추진일정

연차평가	평가결과 확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 '14. 5월	'14. 6월	'14.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약2,750억원 (계속)

8.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 044-203-442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 02-6009-3763~3766 (www.kiat.or.kr)
- 권역별 지역사업평가원

권역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문의전화
충청권	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irpe.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86-2 대덕테크비즈센터 8층	042-934-8371, 6196, 8378, 8375
호남권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irpe.or.kr)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3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062-602-7156, 7162, 7164, 7169
동남권	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ongnam.irpe.or.kr)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100번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한미르관 4층	051-629-7592, 7693, 7588, 7582
대경권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irpe.or.kr)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2403호	053-818-9517, 9523, 9513, 9515, 9507, 9518
강원권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irpe.or.kr/)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1길 청정산업신기술지원센터 2층	033-258-2651, 2657, 2656
제주권	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irpe.or.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층	064-759-7425, 7422

22.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1. 개 요

-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시·도의 연계협력 촉진과 산업분야의 지역 간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

2. 지원대상분야

-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R&D 및 비 R&D 분야를 지원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지역발전 지원기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광역시도 소재 기관 및 2개 이상 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
 - * 테크노파크(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
 - ** 단, 비R&D분야는 기업 등 영리단체를 제외
- 2개 이상 지자체의 지방비 대응 필수

4. 지원내용

- 광역경제권 발전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기획 및 네트워킹, 문화·관광 등 모든 유형 사업 지원

5. 추진체계

-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 (예산수립)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수행) 기업, 대학, 지자체,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등

6. 추진일정

연차평가	평가결과 확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 '14. 5월	'14. 6월	'14. 7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지원규모 : 약240억원 (계속)

8.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 044-203-442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광역선도산업팀 : ☎ 02-6009-3762, 3764 (www.kiat.or.kr)

23.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1. 개 요

- 개방형 혁신 및 글로벌 기술경쟁 가속화에 따라, 국제기술협력을 통해 해외기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

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요령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해외 주요국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해야하는 판단되는 기술 분야

* 양국 정부간 공동기술사업의 경우, 정부간 협의에 의해 사전 기획된 협력 분야 지원

3. 신청자격

- 국내외 산학연으로 구성된 국제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되, 국내기업의 참여 필수
 - 주관기관은 국내 산학연(단, 사업유형별로 주관기관 자격이 상이하므로 세부 공고 참조)
 -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에 한하며 (D&B Report기준), 국내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기업에 한함

4. 지원내용

- 해외기관(산·학·연)과의 공동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간
산업전략 연계형	연 7억원 내외	3~5년 이내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 (한-중, 한-프랑스, 한-이스라엘 등)	연 3억원 내외	3년 이내
EU 디자인 국제공동연구개발프로그램 참여 지원 (EUREKA, EUROSTAR, Horizon 2020)	연 3억원 내외	3년 이내

* 사전기획과제(3천만원 내외) 지원 가능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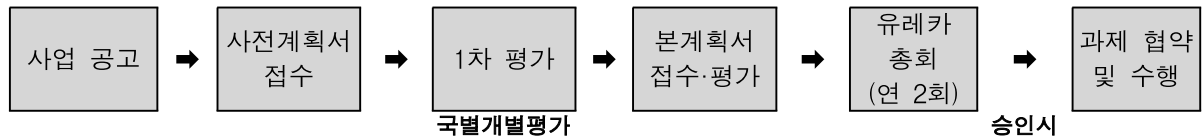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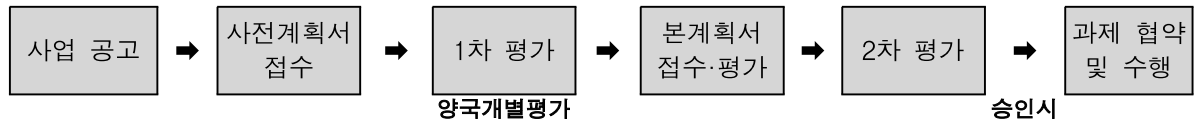
- 산업전략 연계형 국제공동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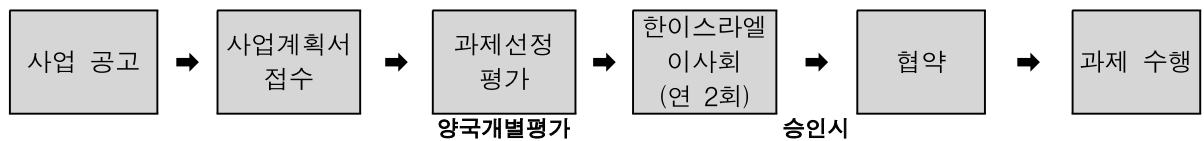
- 유럽 다자간 국제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한-중, 한-프랑스 등)



- 양국 정부간 국제공동기술개발(한-이스라엘 공동연구개발)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3~9월	'14. 10월	'14. 11월

7. 지원규모 : 총 482.5억(신규 67.4억원, 계속 415.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공동연구 및 결과물 공유에 대한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MoU 등) 체결 필요
- 지재권 보고서 작성을 통해 확보 가능한 지재권 및 실시권 전략 제시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계획서는 국문과 영문 병행 작성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5 : 1	2.8 : 1	2.0 : 1

* 2013년은 사전계획서에 대한 1차 통합평가 후, 선정된 과제별 지원 경쟁률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00백만원	500백만원	598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 ☎ 044-203-450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전략팀 : ☎ 02-6009-3180, 3192~3, 3205~3206 (www.kiat.or.kr)

24.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1. 개 요

- 미래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분야 전반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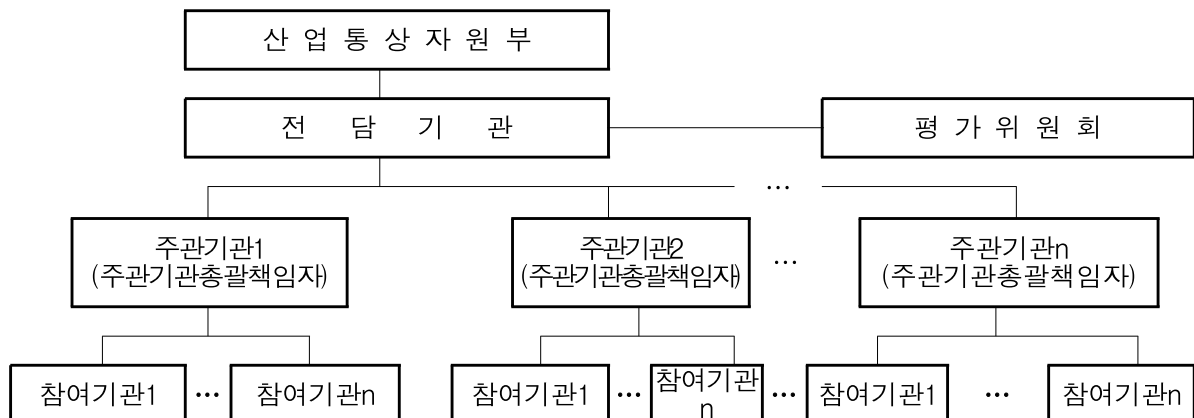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단체 등

4.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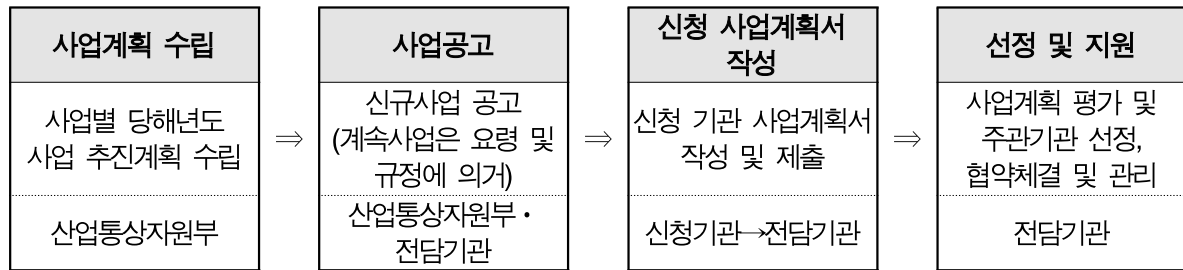
- 세부사업별로 상이 하며 평균 23억 내외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로 사업별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중·고생, 대학(원)생, 재직자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2월 ~ 3월	'14. 3월	'14. 1월 ~ 6월

7. 지원규모 : 469억원 (신규 99억원, 계속 370억원)

구 분	2014년 예산(억원)		
	신 규	계 속	합 계
산업기술 인재양성	99	312	411
인적자원생태계조성		58	58
합 계	99	370	469

8. 중점 추진사항

- (산업기술 인재양성) 산업계 수요 및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선도산업, 신산업분야의 핵심·원천기술별 R&D를 선도할 인력양성 및 고용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인적자원생태계조성) 산업기술인력 수급통계조사, 성과분석 등 인력정책 기획기능 및 기반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28 : 1	2.6 : 1	2.8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96백만원	611백만원	248백만원

11. 문의처(※ 세부 사업별로 전담부서 상이함)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총괄) : ☎ 044-203-4222, 4227 (www.motie.go.kr)
- 전담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044-203-내선번호)		전담기관	
사업	지원분야	소관과	연락처	담당팀	연락처
산업전문인 력역량강화 (산업기술 인재육성)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엔지니어링팀	43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4
	기술경영전문인력	산업기술시장과	45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재산전략팀)	02-6009-4362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바이오나노과	439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5
	해양플랜트특성화전문인력	조선해양플랜트과	43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인력팀)	02-6009-3232
	산업융합특성화인재양성	창의산업정책과	436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7
	디자인인력양성	디자인생활산업과	437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3
	봉제전문인력양성	섬유세라믹과	42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5
	장애인산업기술고급인 력양성	산업기술정책과	45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4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	산업기술개발과	45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8
	하이브리드슈퍼섬유	섬유세라믹과	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5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	철강화학과	42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7
	환경규제및안전전문 인력양성	기후변화 산업환경과	42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9
	바이오제조 GMO 기술인력양성사업	바이오나노과	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3
	산업융합·연계형 로봇창의인재양성	기계로봇과	431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6
산업전문인 력역량강화 (인적자원 생태계조성)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산업인력과	42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02-6009-3224
	산업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산업인력과	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02-6009-3221
	청소년창의기술인재 센터지원	산업기술개발과	45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02-6009-3236
	Tech-Force Net 구축	산업인력과	42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02-6009-3227
	기획평가관리비	산업인력과	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기획팀)	02-6009-3223

25.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산업기술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육성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기술혁신역량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산업융합기반구축	산업 고도화 및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창의산업, 소재부품 산업, 주력산업 분야의 공동활용 기반을 조성
디자인기반구축	제품·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와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디자인, 해외진출, 전략정보기반 등의 연구기반구축을 지원
엔지니어링기술진흥	플랜트·원전·건설 등 대형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엔지니어링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성장동력기반구축	미래 환경·시장 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 발전에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구축을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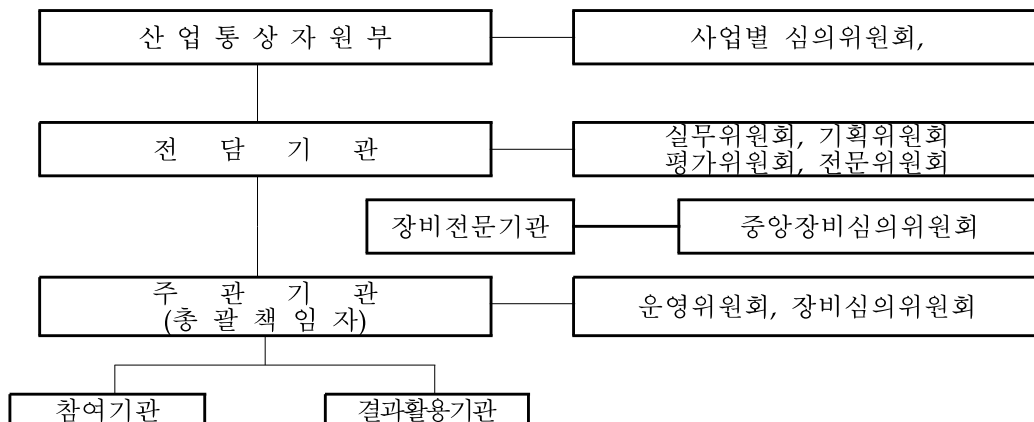
-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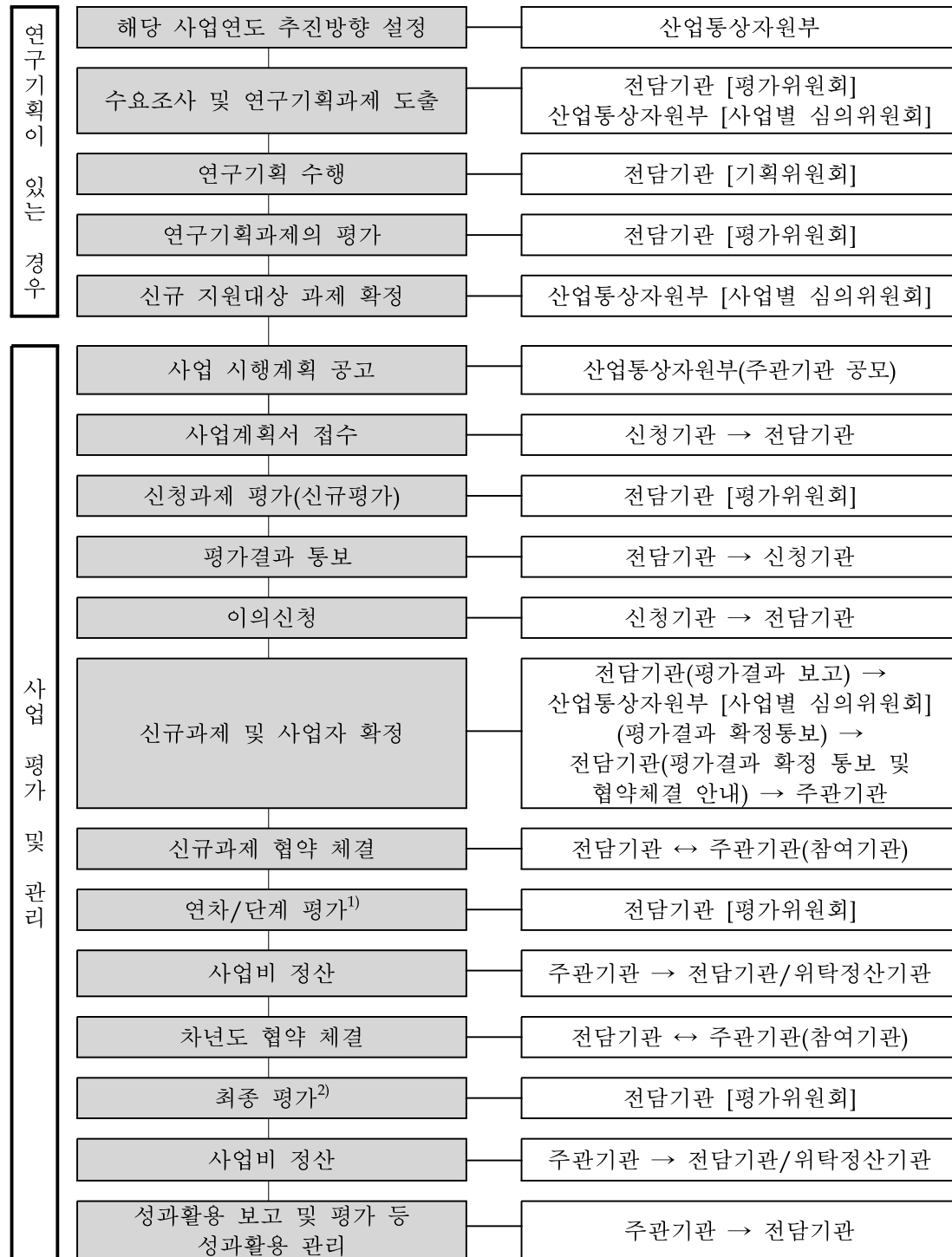
-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 또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 총 사업기간 5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각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 출연금 지원 조건, 추진 방법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 1), 2)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는 신규평가를 준용함.

6. 추진일정(예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3월~5월	'14. 6월	'14. 7월	'14. 8월

* 신규과제 지원 기준이며 내역사업에 따라 추진일정 상이

7. 지원규모 : 1,579.57억원(신규 164.61억원, 계속 1,414.96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사업 유형화'에 따라 내역사업 및 과제를 기반구축의 대표 유형별로 기획·평가·관리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제고
- 차년도 예산반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기획을 통해 신규 투자적정성 등을 신규사업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사전 검증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4 : 1	1.8 : 1	1.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144백만원	974백만원	1,09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 ☎ 044-203-450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기반사업팀 : ☎ 02-6009-3291~4 (www.kiat.or.kr)

26.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1. 개 요

-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감성터치 관련 제품 신뢰성 및 인증기반 구축
- (기술개발) 감성터치 관련 핵심기술 개발 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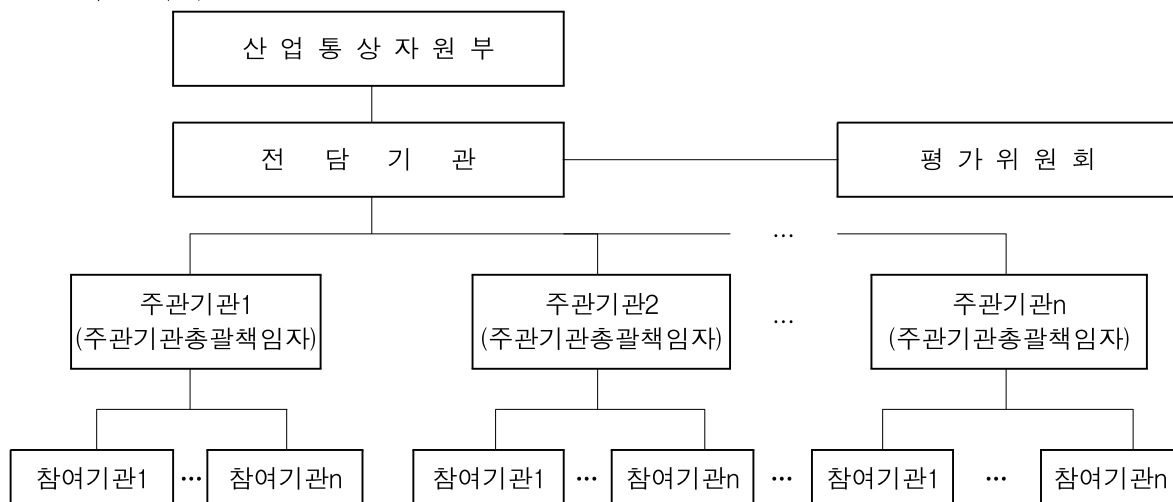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210.5억원(신규 97.66억원, 계속 112.84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7 : 1	3.14 : 1	4.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633백만원	890백만원	67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2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3 (www.kiat.or.kr)

27.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IT 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개발·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상용화지원센터와 집적생산시설 구축 및 장비도입,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집적생산단지 조성 및 장비도입
- (기술개발)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의료영상기기, 인공장기, 생체신호기기, 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원격 및 재택의료기기 등)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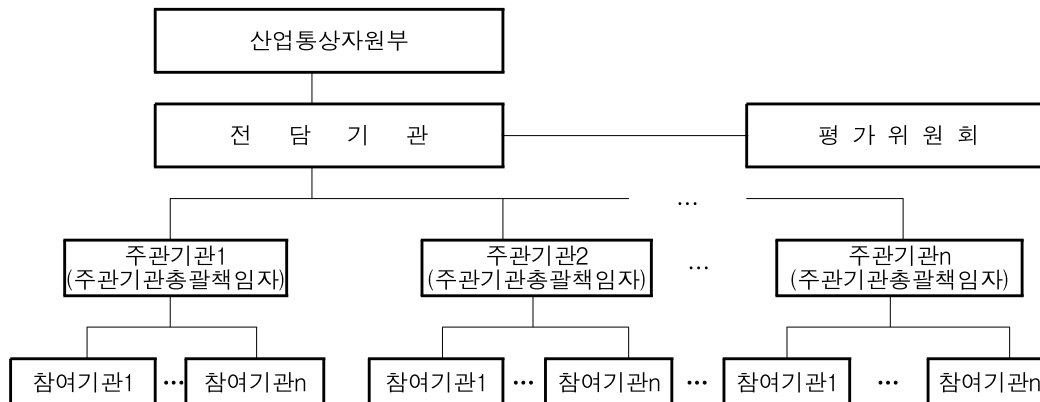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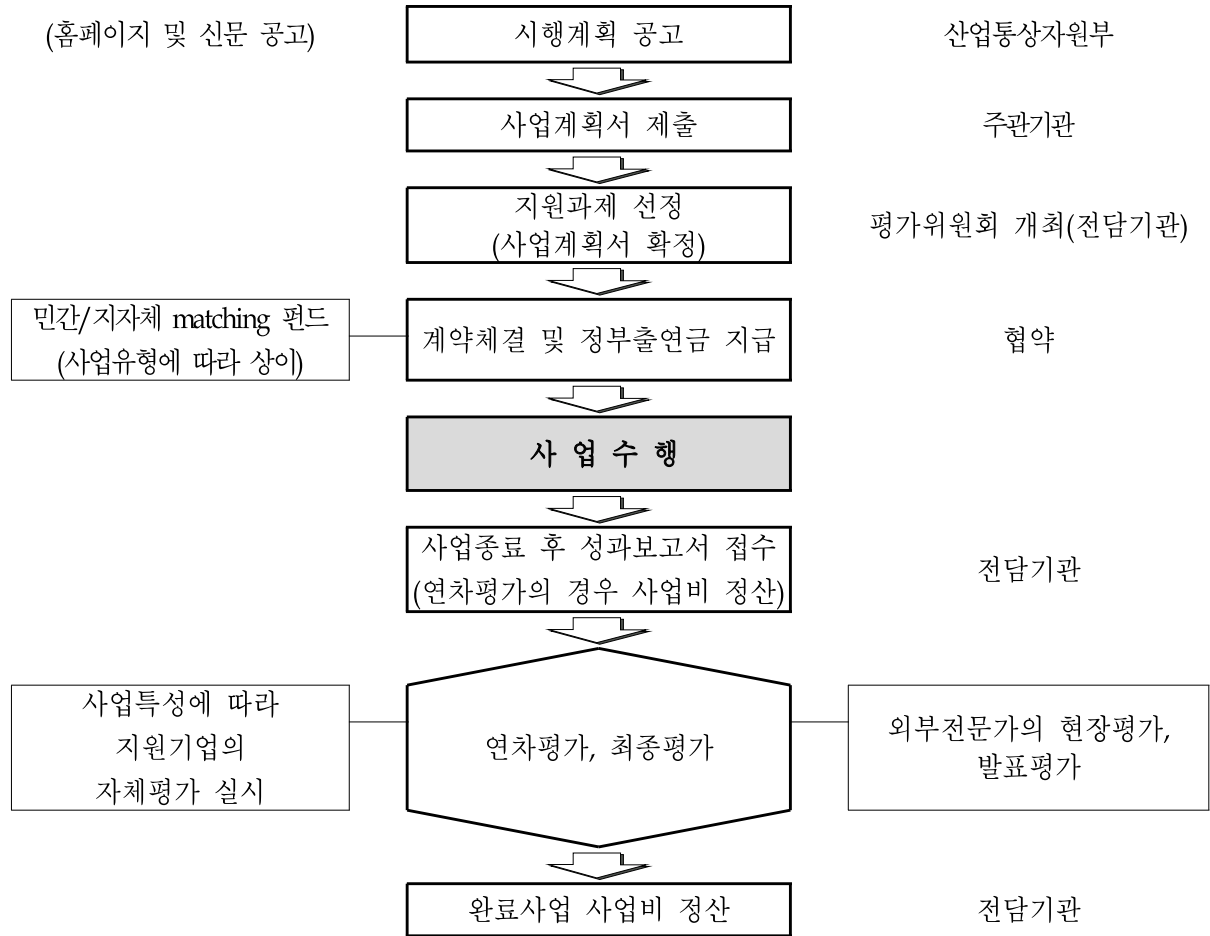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

7. 지원규모 : 122.6억원(신규 4.98억원, 계속 117.6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5:1	1.3:1	1.5: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00백만원	400백만원	37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4 (www.kiat.or.kr)

28.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1. 개 요

- 섬유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 신소재(섬유)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메디컬 소재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상용화기술개발(치료/수술용 섬유소재 개발사업,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소재 개발사업, 원천기술용 개발사업 등)
- 기반구축 : 메디컬 섬유소재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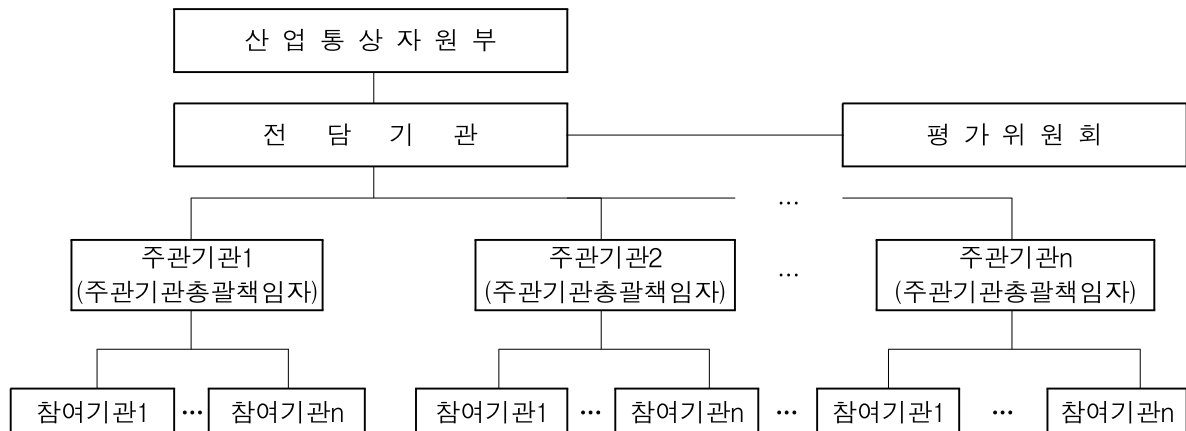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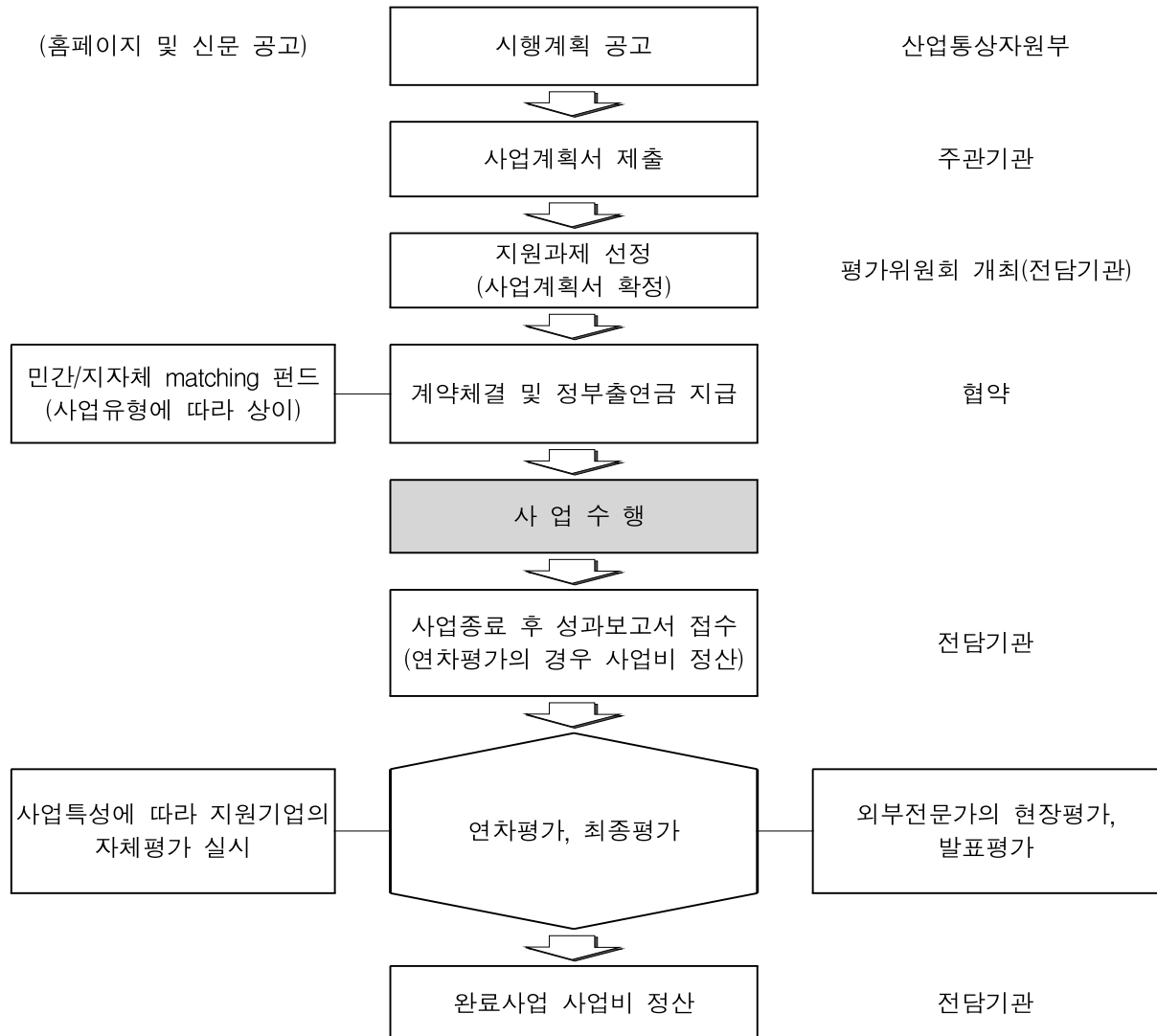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53.59억원(신규 20억원, 계속 133.59억원)

8.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5 : 1	2.3 : 1	2 : 1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407백만원	387.5백만원	333백만원

10.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2-203-429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6 (www.kiat.or.kr)

29. 탄소밸리구축사업

1. 개 요

-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기술경쟁력 확보 및 비즈니스 신규 수요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탄소섬유,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개발사업
- 기반구축 : 탄소 복합부품 성형기술 지원 기반조성사업,
탄소소재 일류화 지원 기반조성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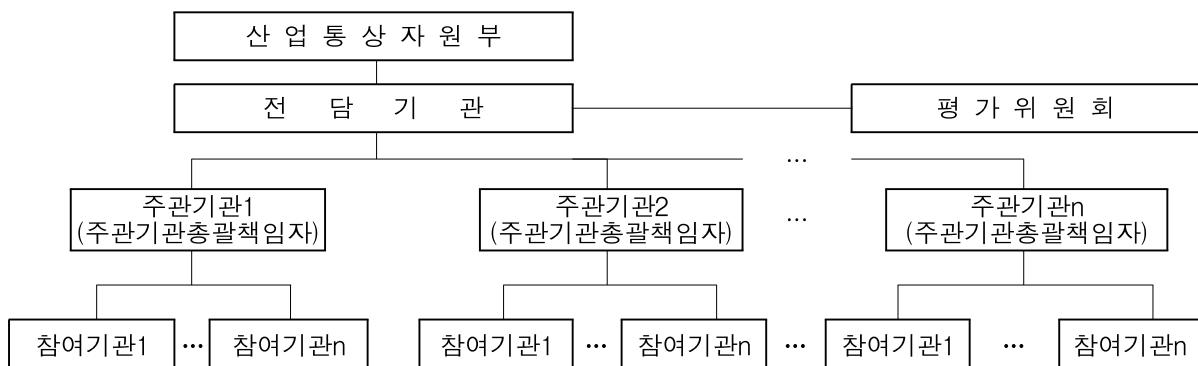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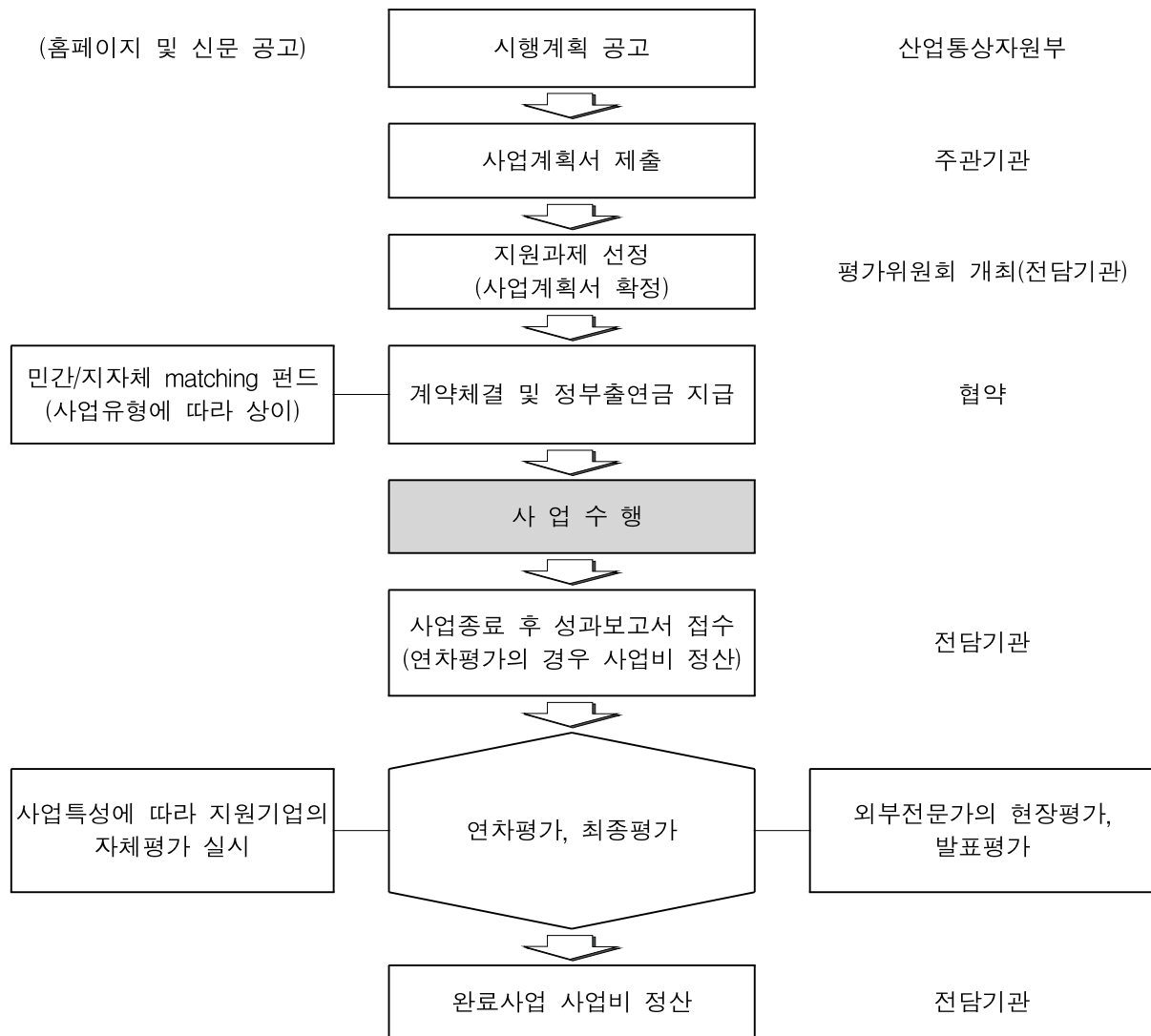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년 이내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285.01억원(신규 30억원, 계속 255.01억원)

8.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3 : 1	1 : 1	1.9 : 1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679백만원	1,000백만원	462백만원

10.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세라믹과 : ☎ 044-203-429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단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6 (www.kiat.or.kr)

3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1. 개 요

-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차 클러스터와 전기자동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2. 지원 대상 분야

- 핵심부품기술개발
- 실용화연구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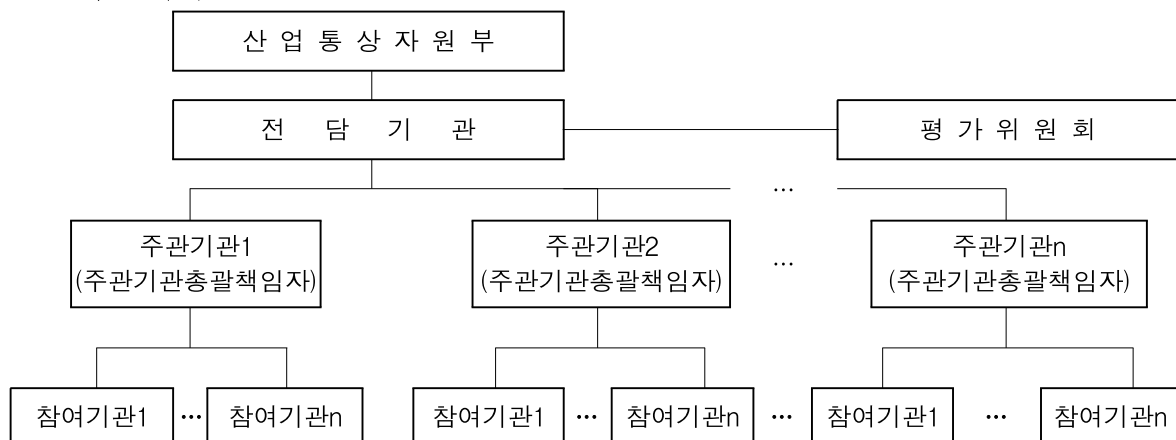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79억원(신규 34.4억원, 계속 144.6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2 : 1	2.25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70백만원	463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8 (www.kiat.or.kr)

31.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친환경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세계 4위 달성 및 미래시장을 선점

2. 지원 대상 분야

- 기술개발 :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 기반구축 : - 디젤기술전문센터 구축사업
- 핵심부품소재센터 구축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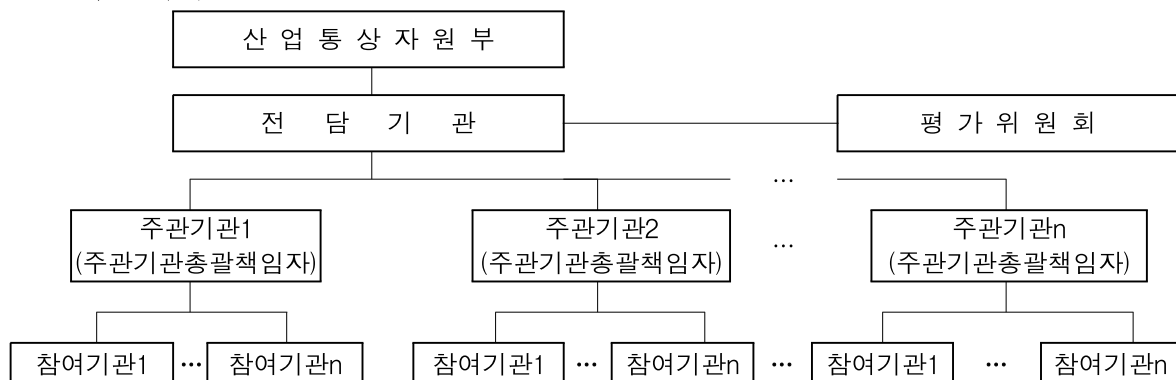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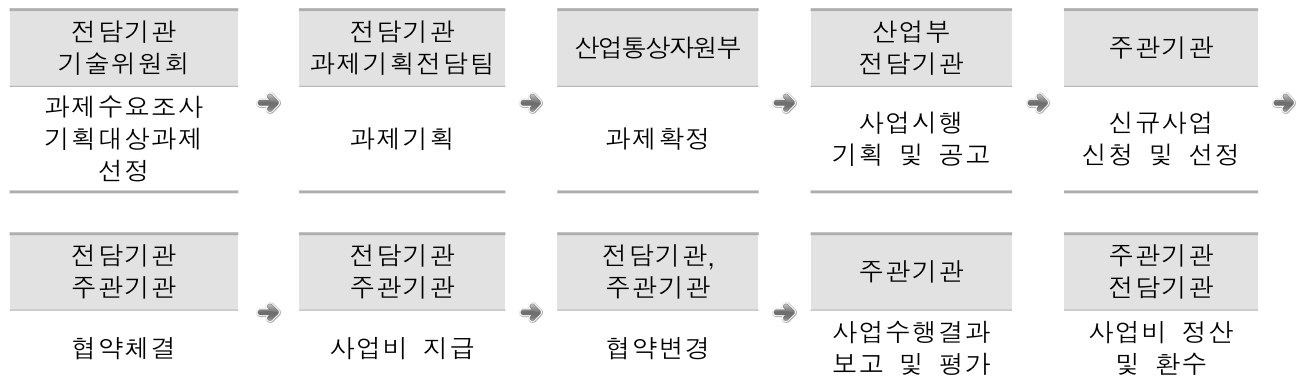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2년 이내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49.8억원 (신규 26.2억원, 계속 123.6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2 : 1	2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760백만원	788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8 (www.kiat.or.kr)

32.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FTA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 산업을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상용차부품 핵심요소기술개발사업
- 기반구축 : - 상용차부품 R&D지원 인프라구축
-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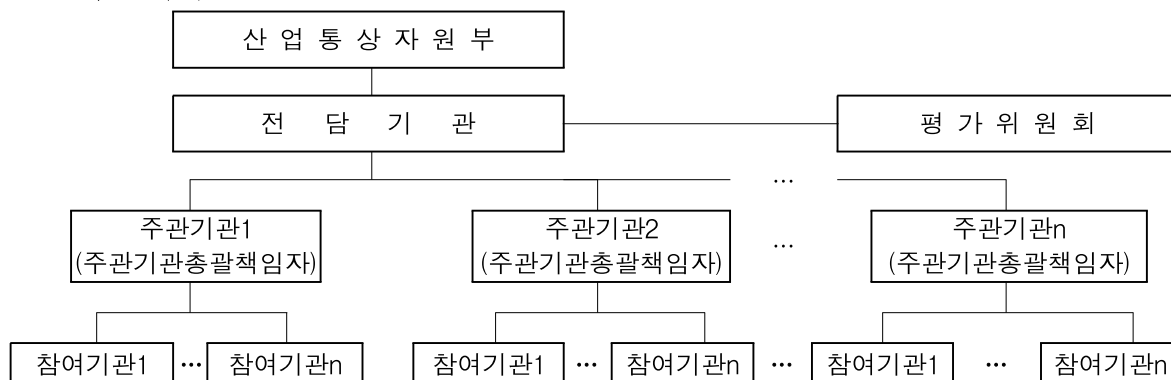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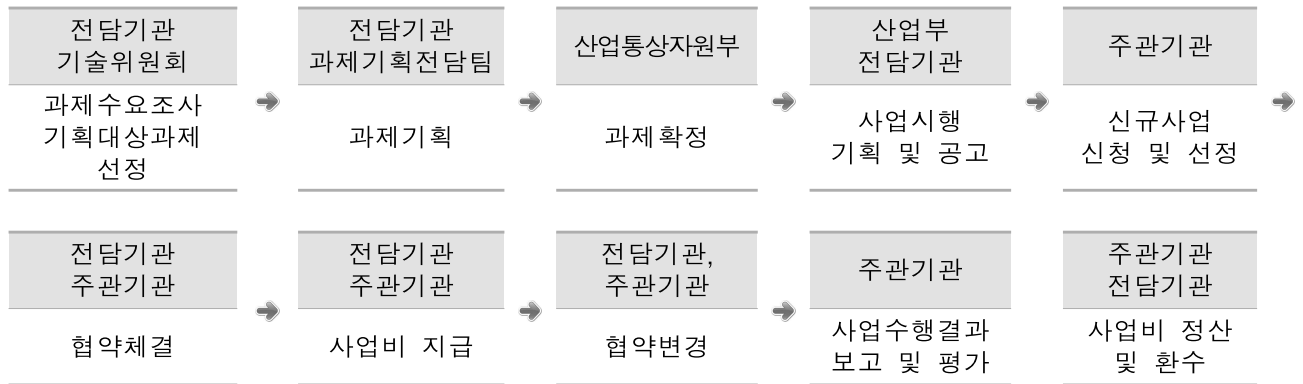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95.64억원(신규 5억원, 계속 90.64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1.5 : 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713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8 (www.kiat.or.kr)

33.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1. 개 요

- 로봇융합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구축과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상용화기술개발을 통해 로봇산업 R&BD허브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로봇혁신센터, 협동화팩토리센터 등 기반구축사업
- (기술개발) 로봇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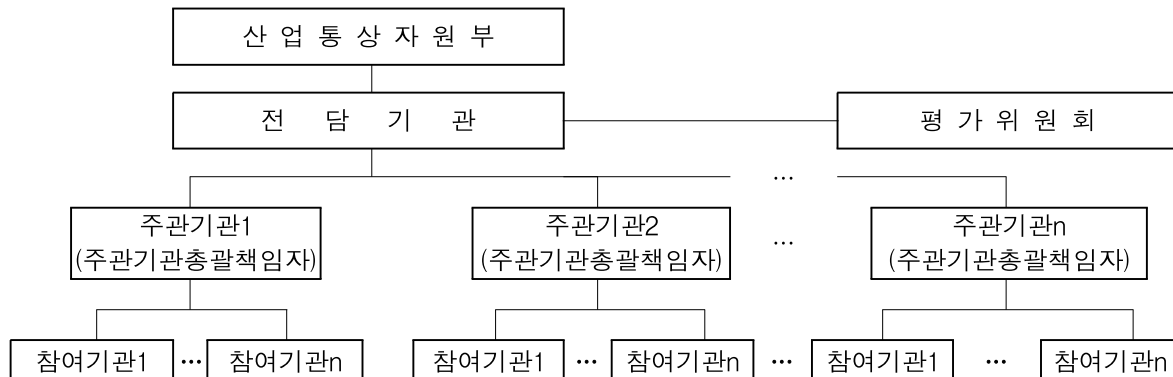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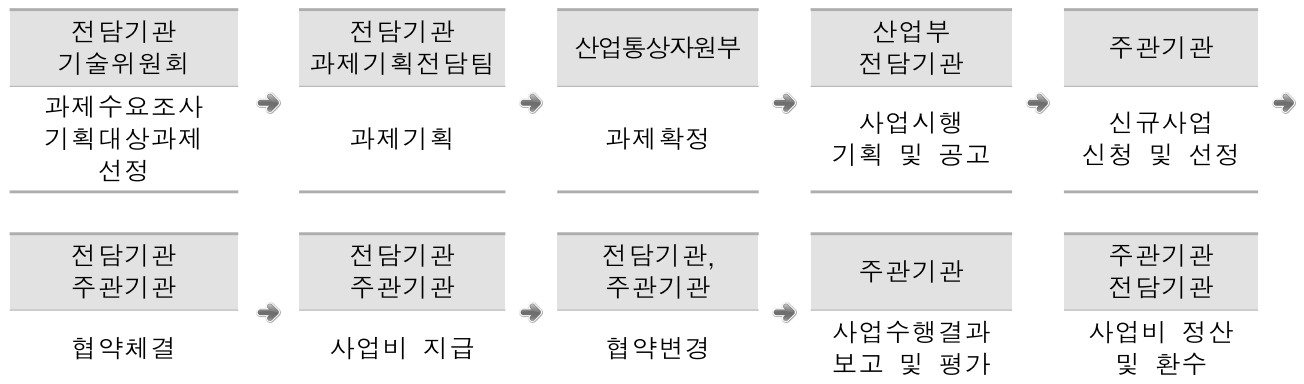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215.88억원(신규 43.6억원, 계속 172.2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2.3 : 1	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547백만원	43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6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3 (www.kiat.or.kr)

34.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1. 개 요

- 영상산업(영화, 방송 등) 이외의 他산업 분야에 3D영상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3D융합 신산업 창출 및 육성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3D융합기술지원센터, 3D상용화지원센터, 3D디스플레이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및 연계클러스터추진단 운영
- (기술개발) 3D 기반기술 및 3D 제품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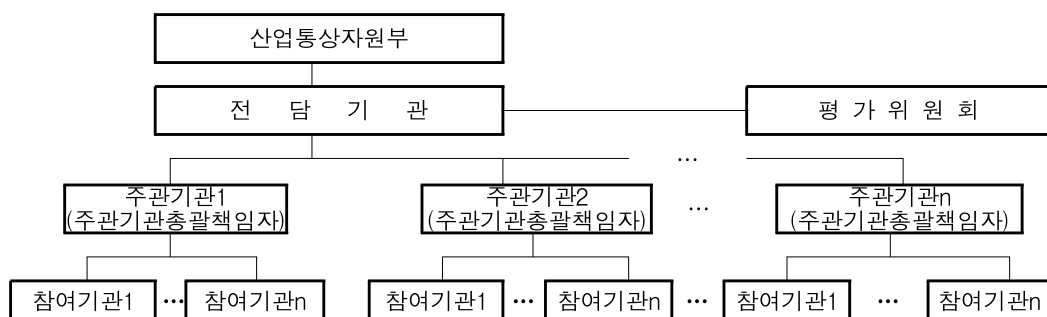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5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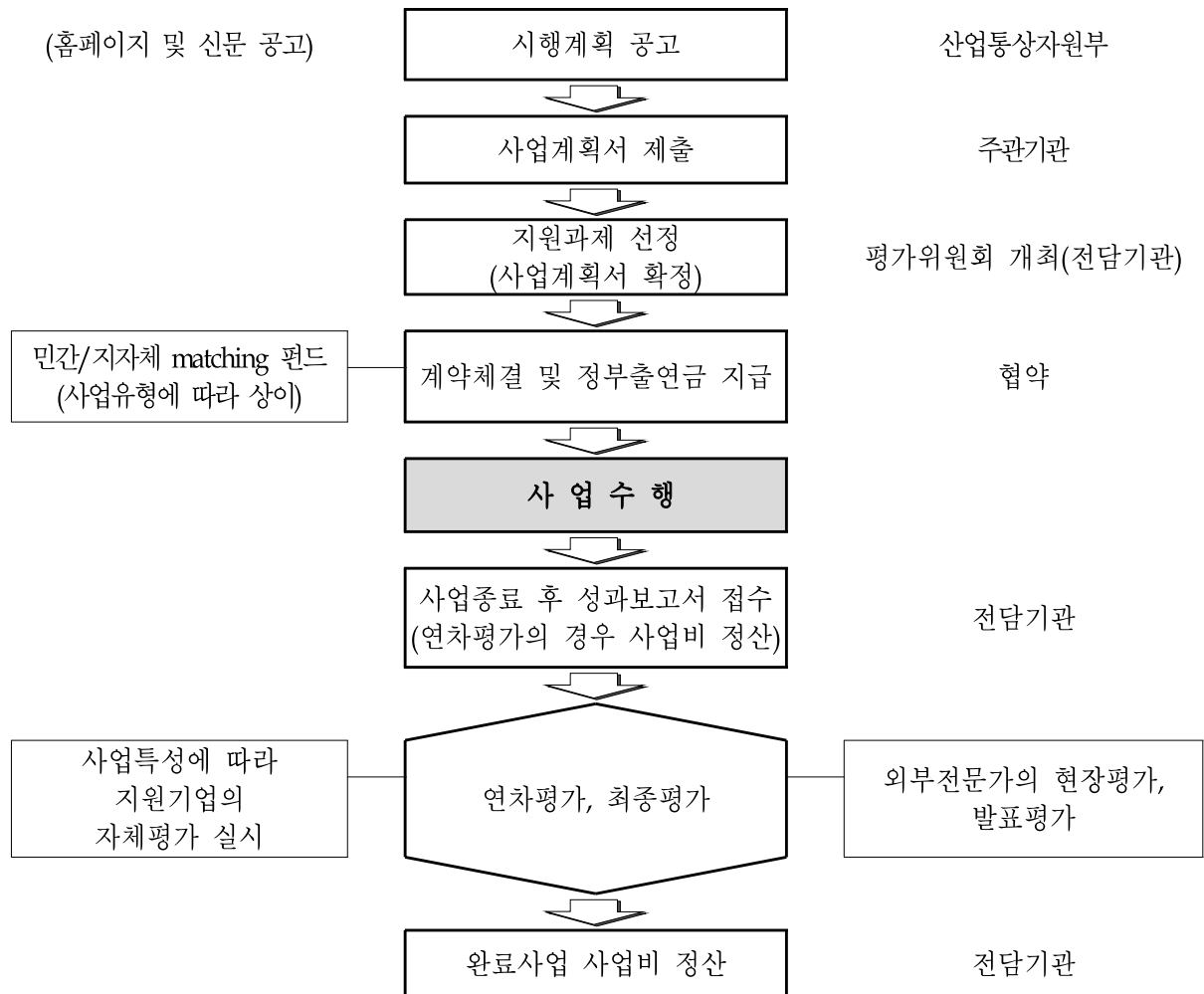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

7. 지원규모 : 257.29억원 (계속 257.29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1.4:1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316백만원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6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4 (www.kiat.or.kr)

35.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1. 개 요

- 친환경 고효율 글로벌 리드형 성장가능 건설기계·부품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센터 구축 및 종합기술지원
- (기술개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관련 기술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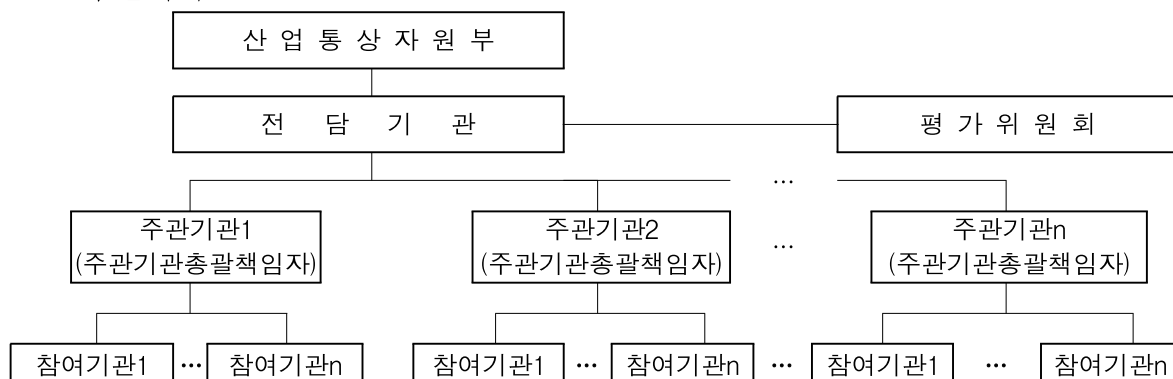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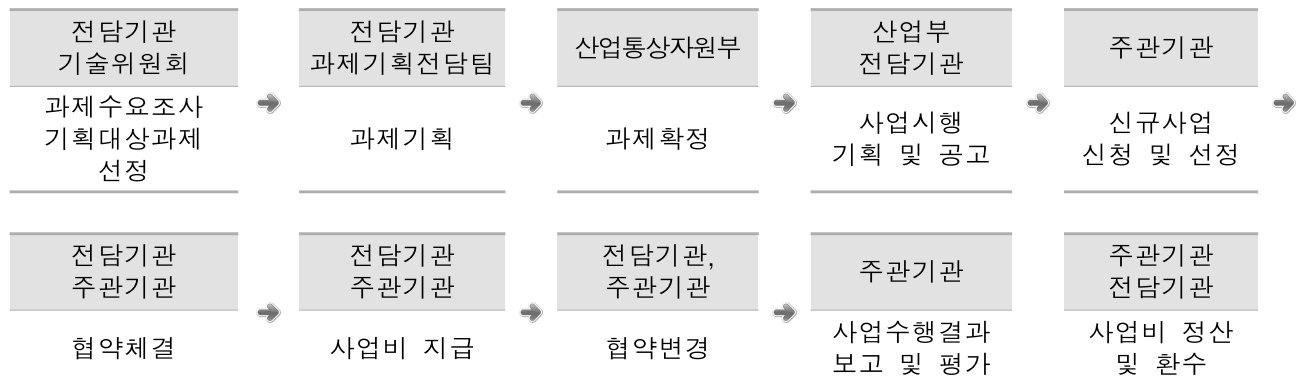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5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184.01억원(신규 14억원, 계속 170.01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1 : 1	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1,905백만원	75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3 (www.kiat.or.kr)

36.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1. 개 요

- 동물약품산업 경쟁력강화 및 충남지역 동물약품 클러스터 조성
 - R&D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망 중소기업 육성
 - 동물약품 원료시생산 시설·장비 구축 (충남 예산)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동물약품 허브조성
- (기술개발) ① 동물약품 합성원료 제조 기술개발, ② 발효/천연물 소재 활용 동물약품 실용화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기반조성
 - 지원자격 : 해당 지역 소재, 동물약품분야 기술지원이 가능한 기술혁신지원기관(출연연 등)
- 기술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4. 지원내용

- 기반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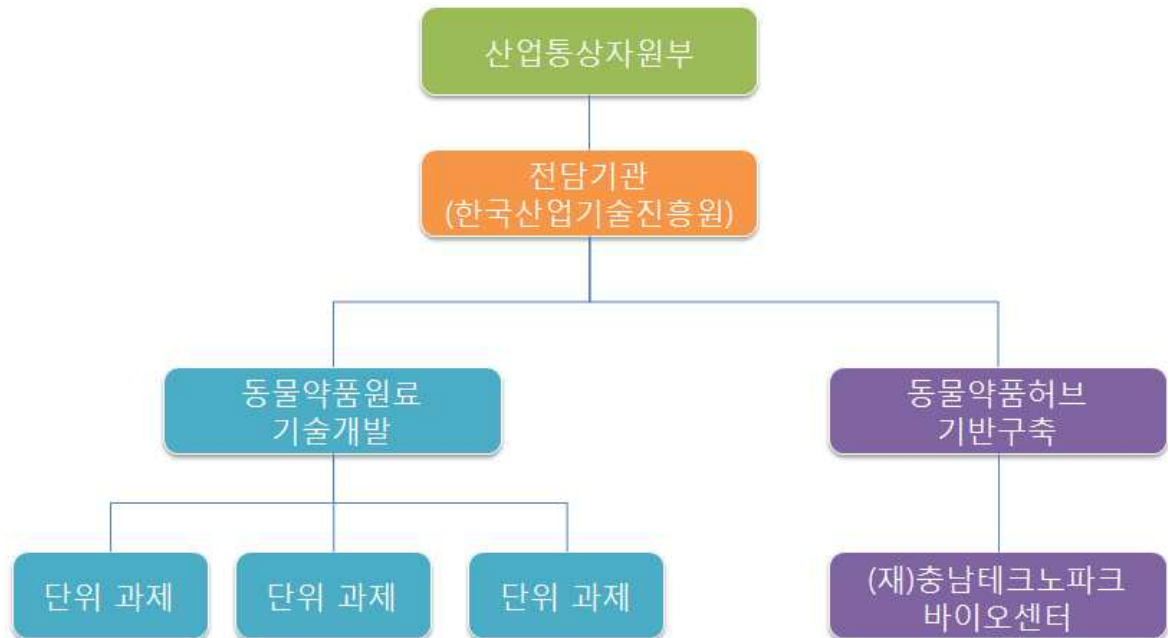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비고
○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	3년 이내	10억원/년 내외	RFP

- 기술개발

대상과제	지원기간	지원규모*	비고
① 동물약품 합성원료 제조 기술개발	3년 이내	2.5억원/년 이내	자유공모
② 발효/천연물 소재 활용 동물약품 실용화 기술개발	3년 이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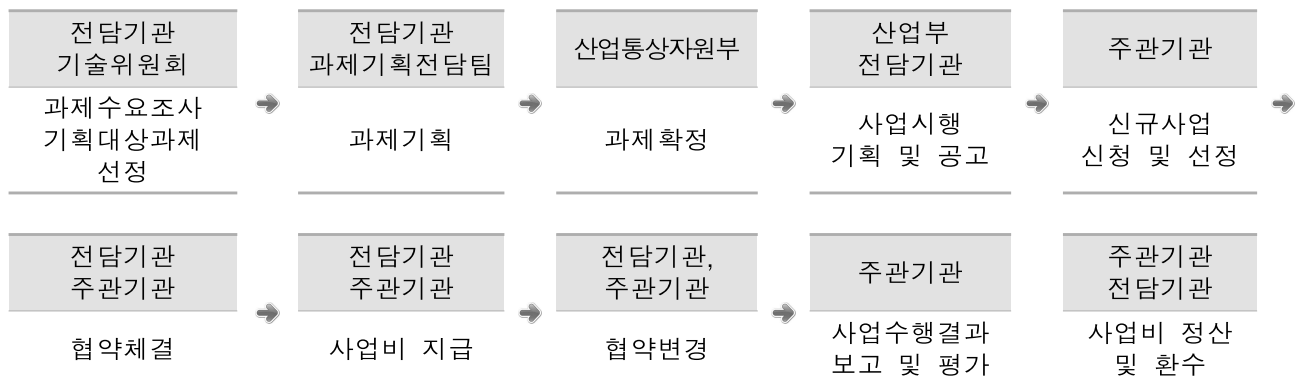
○ 추진체계



* 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참여기관) 기업, 연구기관, 대학, 지역특화센터 등

* 기반조성사업 : (주관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계속사업 지원으로 해당사항 없음

7. 지원규모 : 12.85억원 (계속 12.8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3.3: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5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테크 : ☎ 044-203-4394 (www.motie.go.kr)
- 전남기관명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1 (www.kiat.or.kr)

37.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1. 개 요

- F1서킷 활용, 고성능/고효율 모터스포츠 및 프리미엄급 자동차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 부품 평가기반 구축 및 전용장비 도입으로 부품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 : 프리미엄 차량에 장착 되는 고성능 핵심부품 개발
- 기반구축 : 자동차부품 평가기반 구축 및 전용장비 도입(센터구축 포함)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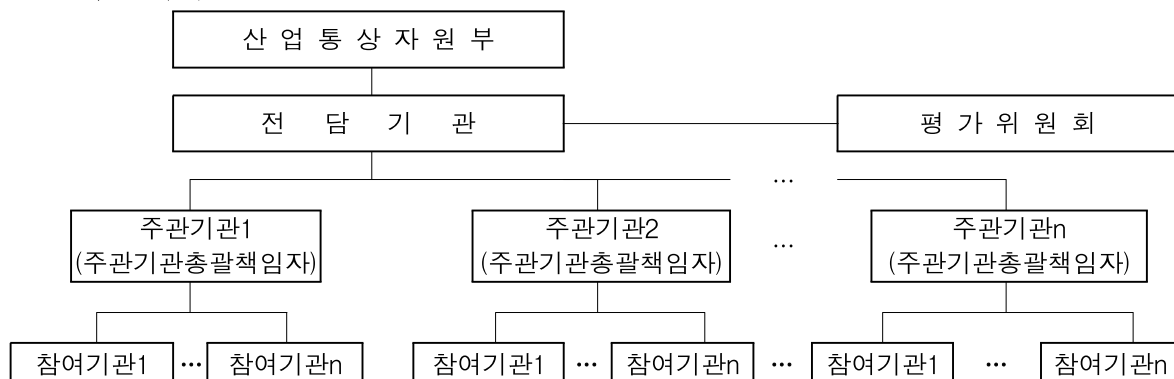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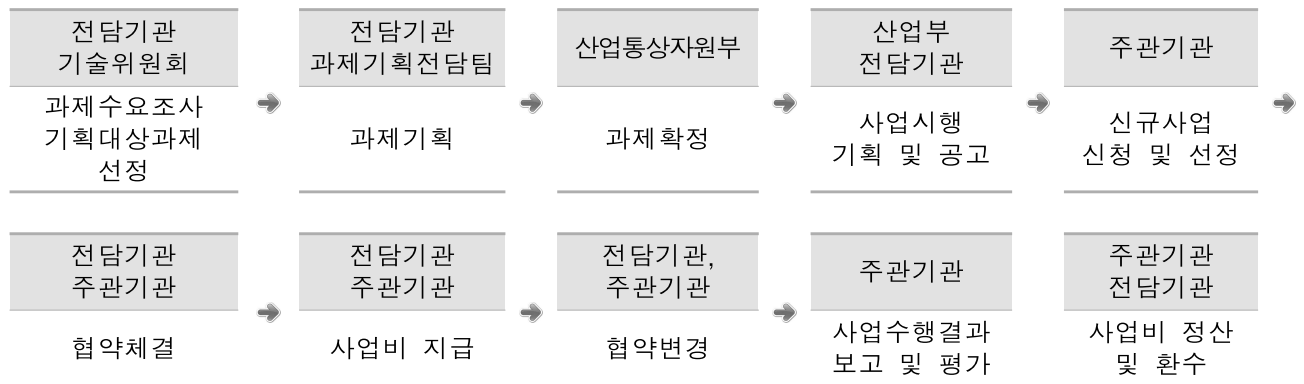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40억원 (신규5억원, 계속 35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1: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66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8 (www.kiat.or.kr)

38.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1. 개 요

- 금형, 사출 등 생산기반기술을 의료기기 분야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소모성 의료기기의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달성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메디칼몰드 생산기술센터 건축 및 장비구축 등
- (기술개발) 메디칼몰드 고분자성형기술, 메디칼몰드 미세금속성형기술, 메디칼몰드 무오염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등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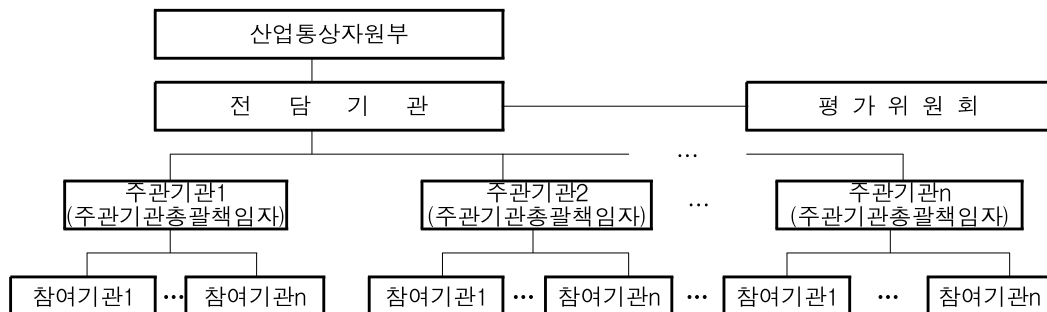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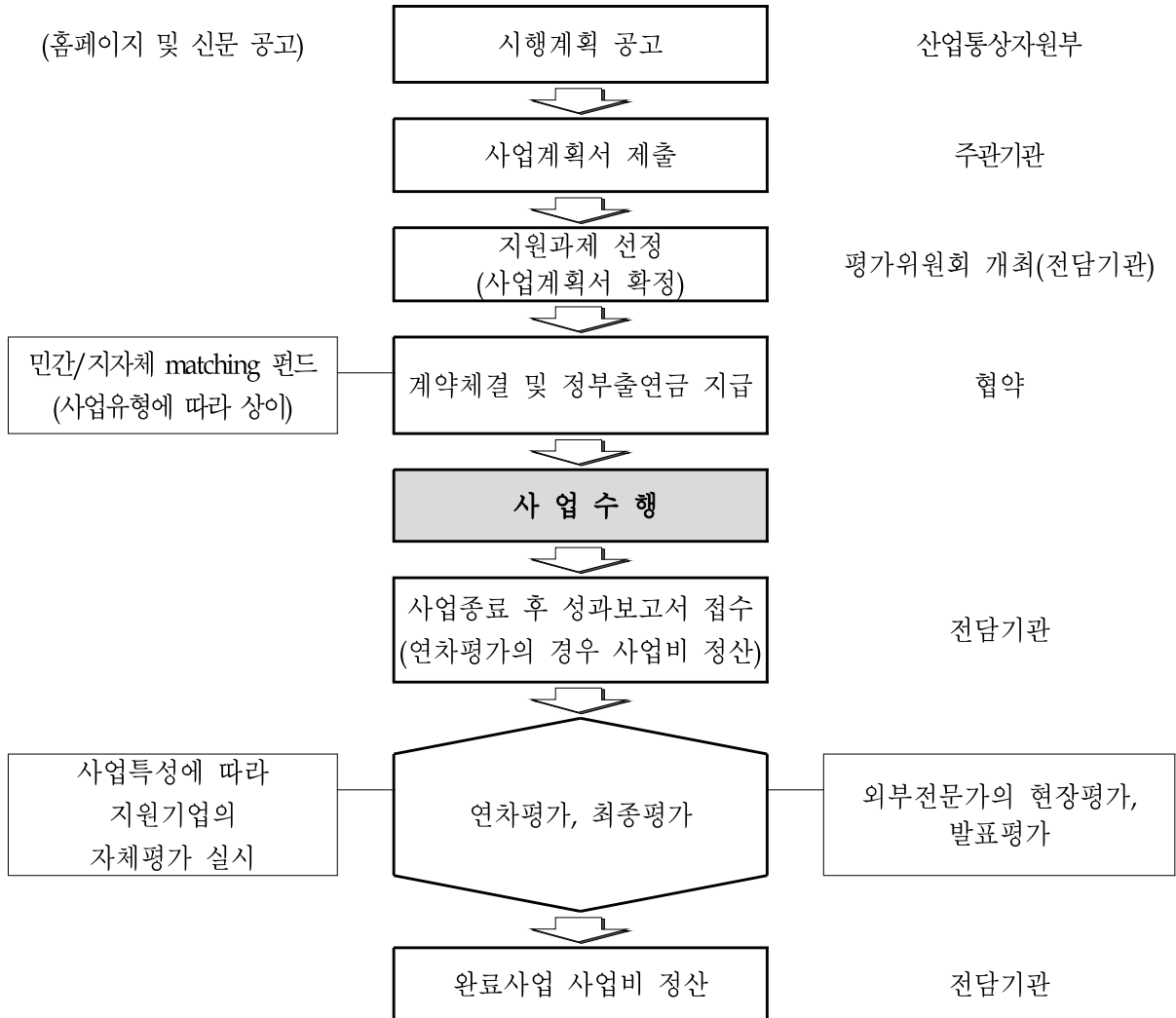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

7. 지원규모 : 15억원 (계속 1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1.5: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30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4 (www.kiat.or.kr)

39. 덴탈소재 및 치과기공 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치과보철물 생산 기술, 치과기공 소재 및 기기장치 기술개발을 통한 치과기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 대상 분야

- (기반조성) 치과기공 자동화생산장비 구축
- (기술개발) 치과기공 소재 및 기기장치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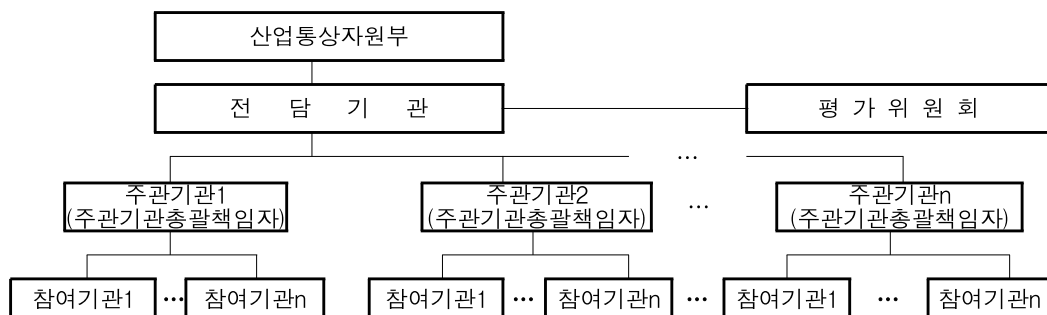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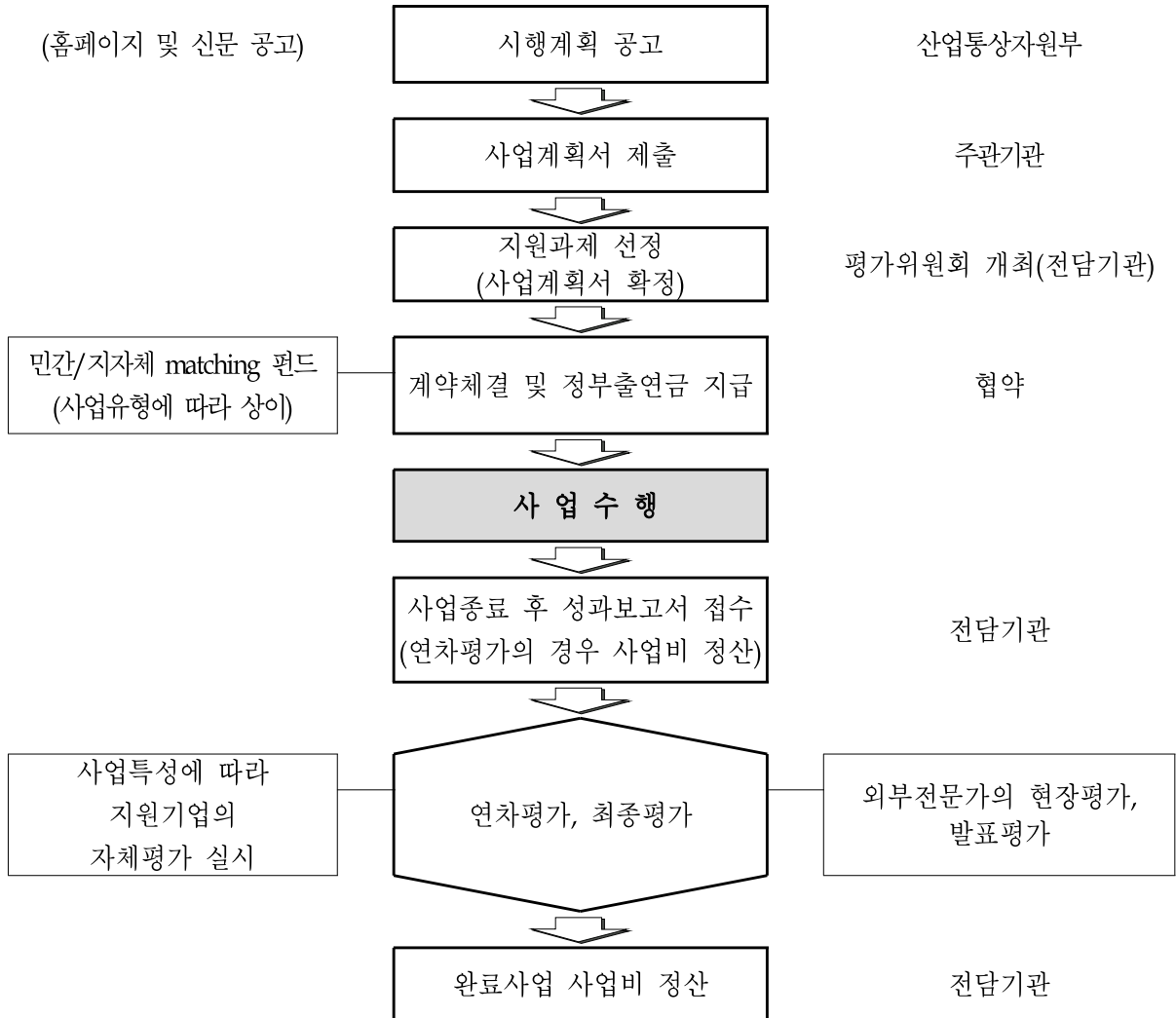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

7. 지원규모 : 30억원 (신규 10억원, 계속 2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3.5: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183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7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4 (www.kiat.or.kr)

40.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1. 개 요

- 지역별(시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지원대상분야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범위 내에서 지원

지역	특화산업
강원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경남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광주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대구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대전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울산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전남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전북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제주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충남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충북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3. 신청자격

- 주관기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특화산업분야의 기업
- 참여기관은 해당지역 및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3억원 이내, 총 3년 이내
 - 지원조건 :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방식 : 자유공모형, 사전기획형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 지역기업의 특성·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규모 및 기간, 조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기술료 징수 :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 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기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추진절차



※ 전담기관(KIAT), 관리기관(해당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지역산업평가단))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3월	'14. 4월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1,674억원 (신규 464억원, 계속 1,210억원)

* '13년 12월 기준 예산이므로 추후 지원공고시 변경 가능

8. 중점 추진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함께 지원하되, 계속사업은 기업특성조사·수요조사 등을 통한 사업내용 조정 가능
- 신규사업은 기존 ① 고용창출형R&D 유형 외, ② 사전기획형R&D 등 지원유형별로 지역 기업의 특성·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자율로 선택하여 기획이 가능하나, ③ 지역주도형 R&D는 필수로 설정(세부사항 추후 공지 예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2.58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16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과 : ☎ 044-203-4421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 : ☎ 02-6009-3723 (www.kiat.or.kr)

41.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

1. 개 요

- 공공연구기관* 또는 공과대학이 중소·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혁신 요구사항을 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One-stop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공공연구기관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말함

2. 지원대상분야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애로기술
 - 애로기술 해결, 불량률 감소 및 수율향상 지원, 측정·분석 지원, 기술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4.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 또는 공과대학 기술코디네이터가 기술서비스정보망(www.helppteck.kr)에 요청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 규모
기술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공공연구기관 senior급 연구원 활용, 신청 접수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진단 및 처방' 제시	○ 공공연구기관 고경력 연구원 23명 - 1인당 25백만원
맞춤형 기술 서비스사업	○ 기술지원 난이도에 따라 상시기술서비스사업(3개월 이내)과 복합기술서비스사업(6개월 이내)으로 맞춤 지원	○ 상시기술서비스사업 - 10백만원/3개월 이내 ○ 복합기술서비스사업 - 40백만원 이내/6개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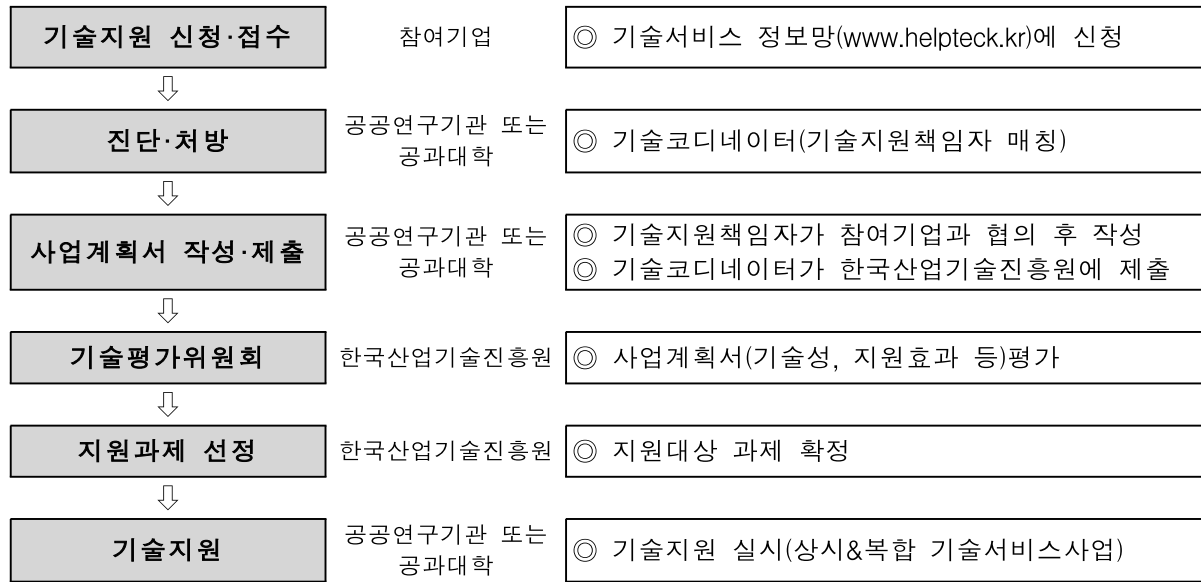
* 기술코디네이터 운영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구 분	신청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수행
기술코디네이터	'14. 1월	'14. 1월	'14. 1월~
맞춤형 기술서비스사업	'14. 2월~(수시접수)	수시	수시

7. 지원규모 : 55억원 (신규 5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생산현장 애로기술에 대해 공공연구기관 또는 공과대학의 연구자원(연구인력, 연구장비 등)을 연계·활용한 맞춤형 기술을 적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기술코디네이터 1.8 : 1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1.45 : 1	기술코디네이터 1.75 : 1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1.65 : 1	기술코디네이터 1.48 : 1 맞춤형기술서비스사업 2.2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100백만원	5,100백만원	4,92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 ☎ 044-203-450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 02-6009-3238 (www.kiat.or.kr)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 02-526-3603 (www.istk.re.kr)

42.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1. 개 요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고급연구인력 공급을 촉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대상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3.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4. 지원내용

구분	TRACK 1	TRACK 2	TRACK 3
지원내용	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전문인력 파견 지원	경력연구인력 공급지원 (매칭+채용지원)	신규연구인력 채용지원 (채용+교육지원)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지원조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보유		
지원기간	3년간 인건비 50% 지원		
연간 지원규모	약30명	약250명	약500명

5. 추진체계



6. 추진일정

사업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14. 3월	상시	(TRACK1) 3, 6, 9, 12월 (TRACK2) 6, 9, 12월 (TRACK3) 6, 9, 12월	평가 후 1개월 이내

7. 지원규모 : 233억원(신규32억원, 계속 201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14년부터 고경력 및 신규인력 채용지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공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
- 특히,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은 대기업, 연구기관 퇴직인력과의 매칭을 先지원한 후, 3년간 해당인력 인건비의 50%를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기업)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4.6 : 1	4.3 : 1	6.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10백만원	110백만원	11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장자원부 산업기술기반팀 : ☎ 044-203-450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 ☎ 02-6009-3238 (www.kiat.or.kr)
-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성장지원실 : ☎ 02-576-7692 (www.istk.re.kr)

43. 에너지자원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및 효율적 사용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에너지기술 자립도를 제고하여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다소비기기(전기, 열 분야), 건물, 산업공정, 수송 분야의 효율향상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온실가스감축기술, 가스안전 기술 분야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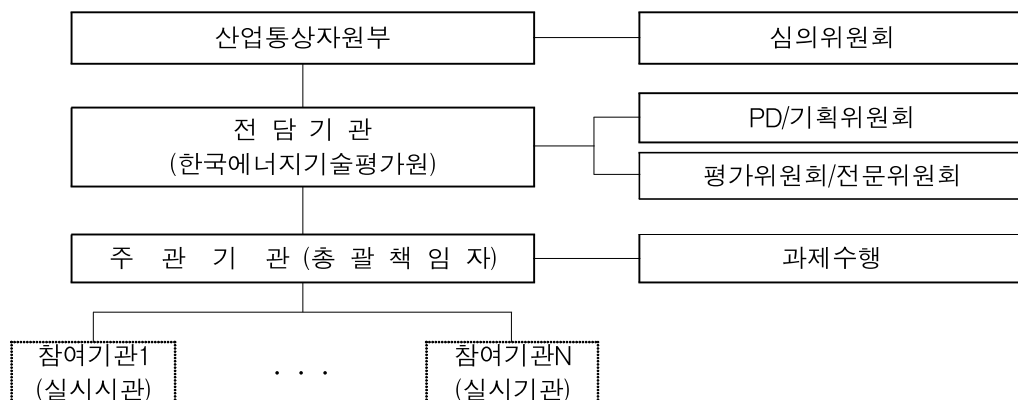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감축기술 전략로드맵, 가스안전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1,731억원 (신규 477억원, 계속 1,25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ICT 등 분야간 융합을 통한 에너지수요관리 기술 및 다소비업종·다소비기기 등의 효율향상 기술개발
- 에너지수요관리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저장 기술 실증, 비즈니스모델 연계 기술개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 이산화탄소 고부가가치화 기술, 포집비용 저감기술
- 국민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고압가스의 안전성 향상 기술, 가스안전관리 기술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0 : 1	2.6 : 1	3.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060백만원	937백만원	89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3, 8377 (www.ketep.re.kr)

44.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분야
-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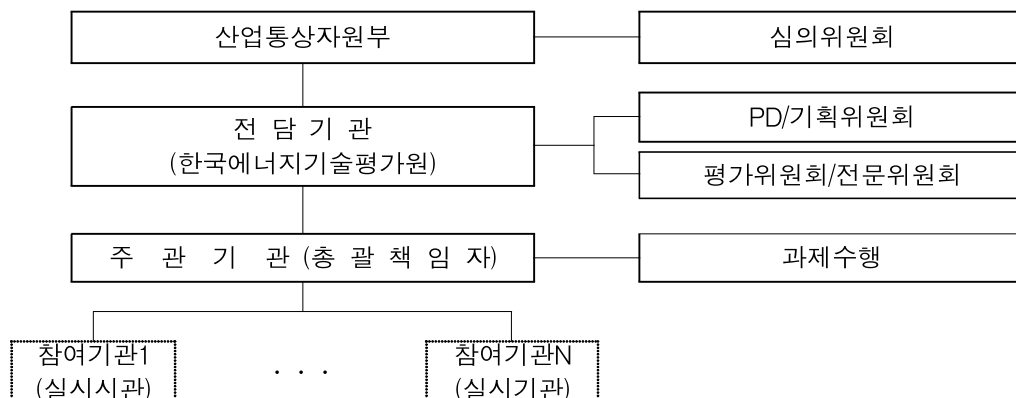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2,243억원 (신규 415억원, 계속 1,82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견인하고 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및 실증 기술개발 확대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3 : 1	2.6 : 1	3.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038백만원	1,089백만원	86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 044-203-5165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5, 8379 (www.ketep.re.kr)

45.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전력분야 R&D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의 정비·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청정화력)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친환경화 기술 분야
- (스마트그리드) 다양한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기존 전력망을 고도화하여 지능형·친환경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 분야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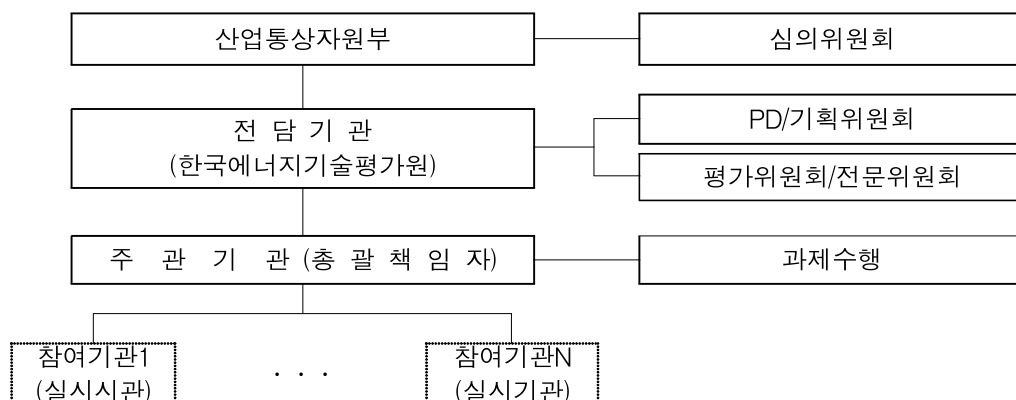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온실가스 감축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726억원 (신규 114억원, 계속 612억원)

- (청정화력) 247억원(신규 38억원, 계속 209억원)
- (스마트그리드) 479억원(신규 54억원, 계속 42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청정화력)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책기조에 따라 상대적 정체 상태에 있는 청정화력 발전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 (스마트그리드)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효율 향상,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핵심 에너지 인프라로서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 출력변동이 심한 신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계시킬 수 있는 지능형 제어시스템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0 : 1	-	3.0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38백만원	-	59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70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2 (www.ketep.re.kr)

46. 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의 원전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 기반구축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 원자력환경 및 해체, 원전기술혁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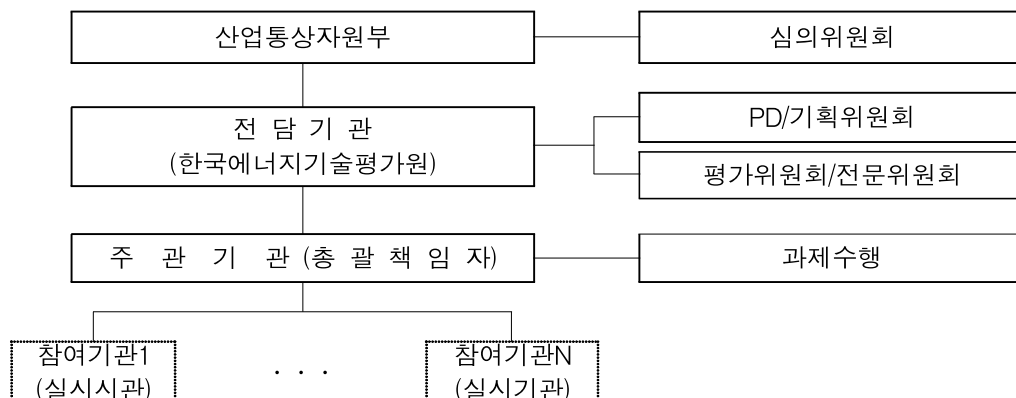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923억원 (신규 38억원, 계속 885억원)

* 원전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신규사업비 규모를 탄력적 운영 예정

8. 중점 추진사항

○ 원전 안전 및 선진화

- 원전 안전성 강화 핵심기술개발, 원전 사이버보안 및 시설방호 기술개발, 원전수출 경쟁력 지속유지 및 강화 기술개발, 가동원전 고장/사고 방지를 위한 신뢰성 강화 기술개발, Stress Test 대응 및 구현, 혁신적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을 위한 안전주도 핵심기술 등 지원

○ 원전설비 및 운영성능

- 원전설비 운영 최적화 및 정비 고도화 기술을 비롯한 현장적용 기술개발, 원전설비 안전성 및 신뢰성 개선 기술개발, 원전설비 안전성의 혁신적 향상·개선 기술개발 등 지원

○ 원자력환경 및 해체

- 소내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제염/해체 사업화 기술개발 등 지원

○ 원전기술혁신

- 원전현장의 현안문제 해결 혁신기술 및 원자력 기초기반기술을 상용화 중간연계 기술개발 등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0 : 1	3.2 : 1	2.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652백만원	359백만원	1,085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 044-203-5323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 ☎ 02-3469-8385 (www.ketep.re.kr)

47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자주개발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자원개발 분야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

2. 지원대상분야

- 석유·가스 등 전통/비전통자원개발 및 금속·비금속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탐사·평가·생산 기술개발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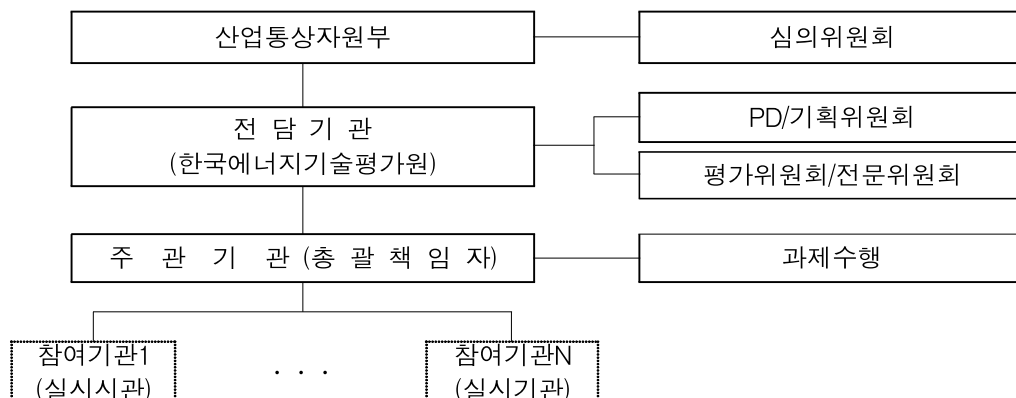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개발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282억원 (신규 8억원, 계속 274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기업이 보유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 연계형 대형·상용화 기술 분야
- 현장연계 대형·상용화 기술개발 수행에 필요한 핵심요소기술, 틈새기술, 미래 유망원천기술 분야
- 핵심기술 단기 Catch-up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유망 서비스 기술 분야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1.7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3,18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 ☎ 044-203-5147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 ☎ 02-3469-8389 (www.ketep.re.kr)

48.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 개 요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2. 지원대상분야

-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 등과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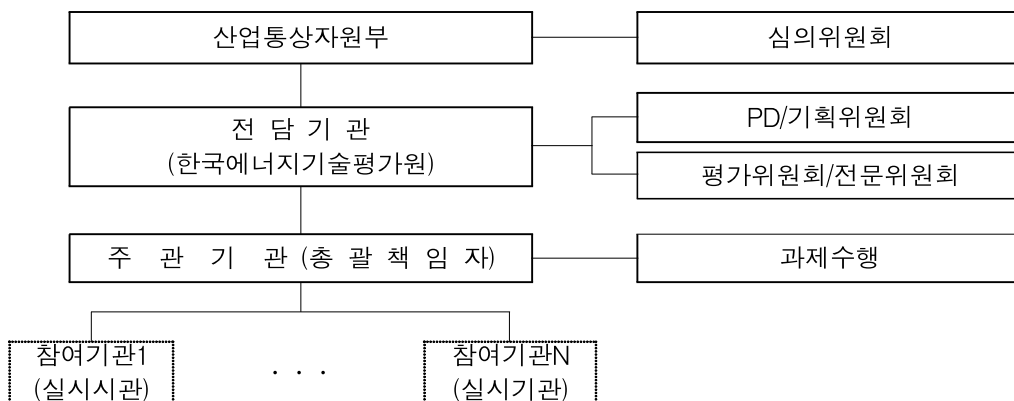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전략로드맵 등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PD/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 6월	'14. 7월 ~ 8월	'14. 9월	'14. 10월

7. 지원규모 : 126억원 (신규 8억원, 계속 11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전문 관리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4.5 : 1	-	-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288백만원	-	-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 ☎ 044-203-5345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2 (www.ketep.re.kr)

49.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너지·자원순환/녹색기술개발지원)

1. 개 요

-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에너지·자원 사용량을 원천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Industrial Structure) 실현
- 에너지효율향상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금속자원 수급 구조개선을 위해 산업생산 공정 중에서 주요자원으로 사용되는 금속물질 등의 사용량을 원천감축 및 효율화하는 대체·저감 기술개발
- 국제 환경·에너지효율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등의 에너지의 사용량 감축 및 효율화하는 대체·저감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사용 후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을 이용하여 금속자원 추출·정제·고순도화 및 제품, 부품을 이용한 재제조 등 부가가치 향상 기술개발
- 그린에너지분야 Supply-chain 육성과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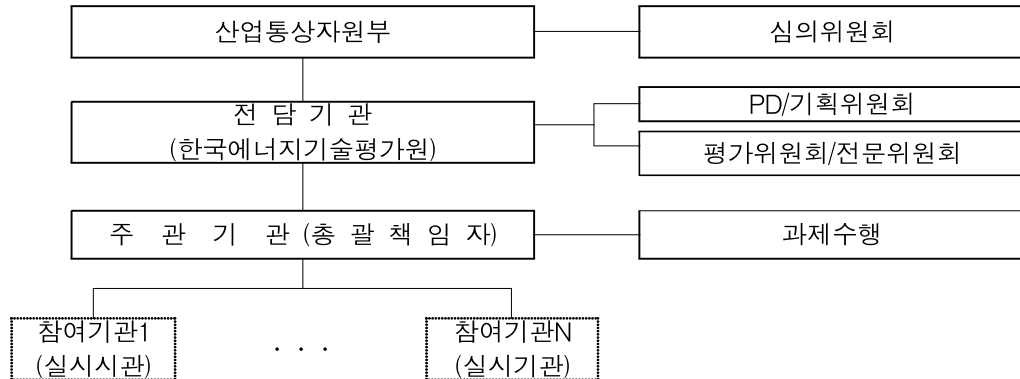
- 중소·중견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 또는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자원순환기술 전략로드맵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협약체결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평가위원회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사업비 정산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211억원 (신규 29억원, 계속 18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 및 자원순환 효율제고를 위한 도시광산 개발, 고가금속 대체 기술개발
-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대응 기술개발
- 에너지 및 자원 이용효율 개선을 위한 재제조 기술개발
- 에너지분야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3 : 1	4.4 : 1	2.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49백만원	700백만원	68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 044-203-4245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4 (www.ketep.re.kr)

50.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신재생 · 전력 · 원자력)

1. 개 요

- 신재생에너지, 전력산업, 원자력 분야 중소·중견기업 R&D 역량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지원
- 태양광, 풍력 등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R&D지원을 통해 세계 Top Brand 제품 및 기술개발을 추진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분야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 전력산업(청정화력, 스마트그리드 등)분야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 원자력 운용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3.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주관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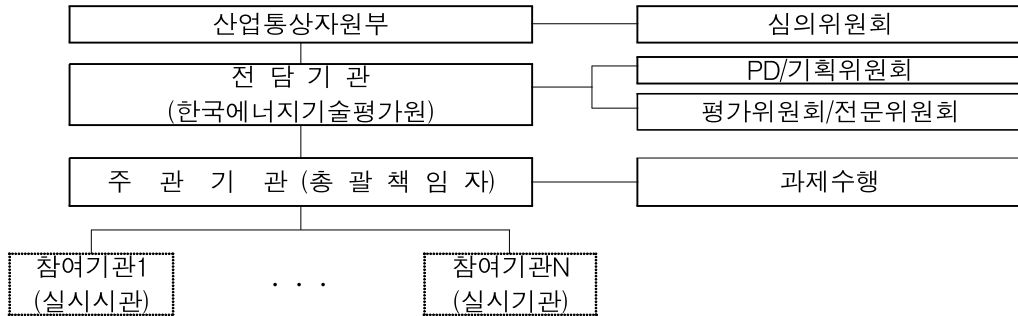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수행기간 3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세부유형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등은 공고 시 별도 안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에너지 부품·소재·장비 마스터플랜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수요조사(연중상시)
		과제기획과제 도출(기획위원회)
		상세 과제기획(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지원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협약체결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안내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	-	-

* '14년도 신규과제 지원 미정, 계속과제에 한하여 추진 예정

7. 지원규모 : 48억원 (신규 미정, 계속 48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제조장비,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 지원
- 고효율, 친환경 청정화력발전시스템 유지보수 기기 및 주변기기 개발 등 지원
- 스마트그리드 제조업 분야 중전기기 및 기기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지원
- 원자력 운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개발 등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2.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684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1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4 (www.ketep.re.kr)

51.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1. 개 요

- 에너지 선진기술 조기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고유가 등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기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
- 자원 확보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국제공동연구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자원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기술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해양,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지열
- 전력 : 스마트그리드, 수화력발전
- 원자력 : 원전선진화, 원전설비성능향상, 원자력환경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단체(사업별 공고시 별도의 세부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음)

4. 지원내용

- 일반과제(단기핵심과제) : 2~3년 내외로 매년 1~5억원 규모로 지원
 - 선진기술 획득형 : 에너지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혁신성, 파급효과, 시급성이 높은 국제 협력 전략 기술
 - 해외시장 진출형 : 기업의 상용화 제품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상용화·실증 단계의 기술
- 지원기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실시기관이 사용한 총 정부출연금의 20 ~ 40%를 기술료로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기술수요조사(상시)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과제 제안서 신청(신청기관) → 과제 기획(기획위원회) → 기획과제 선정(심의/기술위원회) → 과제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제출(신청기관) → 선정평가(전담기관) → 협약체결(전담기관) → 연차평가(전담기관) → 최종평가(전담기관) → 기술료징수(전담기관) → 사후관리 및 활용(전담기관)
- 기술수요조사(상시) : 해당연도 취합시점은 공고를 통해 확인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3월	'14. 상·하반기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198억원 (신규 75억원, 계속 123억원)

구분	2014년 예산(억원)		
	신규	계속	합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에특)	18	57	76
에너지국제공동연구(기금)	57	66	122
합 계	75	123	198

8. 중점 추진사항

- 국내 미자립 또는 미보유의 핵심 기술 공동 연구개발 지원
- 자원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 지원
- 정부시책과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 글로벌 협력전략 등의 중점 추진분야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1 : 1	2.0 : 1	2.4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538백만원	458백만원	30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3 (www.mk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협력실 : ☎ 02-3469-8340~9 (www.ketep.re.kr)

52.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 개 요

-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에너지 인력저변 확대 및 R&D 전문인력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 에너지 관련 분야

3.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관

*단, 산업인력양성센터, 국제인력교류활성화, 인력지원기반구축 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이외 기관 추진 가능

4. 지원내용

- 「기초인력역량개발」사업

① 에너지기초인력양성(기초트랙)

-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 전력, 원자력, 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기술 인력 양성
- 지원기간 : 4년(1단계 2년 + 2단계 2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3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② 자원개발특성화대학

- 자원개발분야는 10여개 대학을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자원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
- 지원기간 : 5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3.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50% 이상

③ 창의인력육성 프로그램(Inno-에너지테크 유니버시아드)

- 학생들이 학습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에너지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Mini Project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지원기간 : 1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2억원 이내

○ 「연구개발고급인력지원」사업

① 에너지 미래선도 인력양성(GET-Future)

- 신재생, 전력, 원자력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최고급 R&D인력양성을 위해 10대 "GET(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연구실 지원

- 지원기간 및 금액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원기간	1년	3년	3년	3년
지원금액	연 2억원 이내	연 5억원 이내	연 10억원 이내	연 10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3단계 이후부터 총사업비의 25% 이상

② 정책연계·융복합 인력양성(고급트랙)

- 에너지 분야 정책적 우선순위가 있는 전략응용·공통요소 기술분야 고급 R&D 인력 및 융복합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인력 양성

- 지원기간 : 5년(1단계 2년 + 2단계 3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산업 수요 및 에너지 분야 정책에 따른 중기 미래 수요를 반영한 미래수요 인력양성 포함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2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③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에 대한 통섭적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전략의 개발 및 산업·기술계 필요에 부응하는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

- 지원기간 : 5년(1단계 2년 + 2단계 3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연 2.5억원 이외, 민간부담금 총 사업비의 25% 이상

○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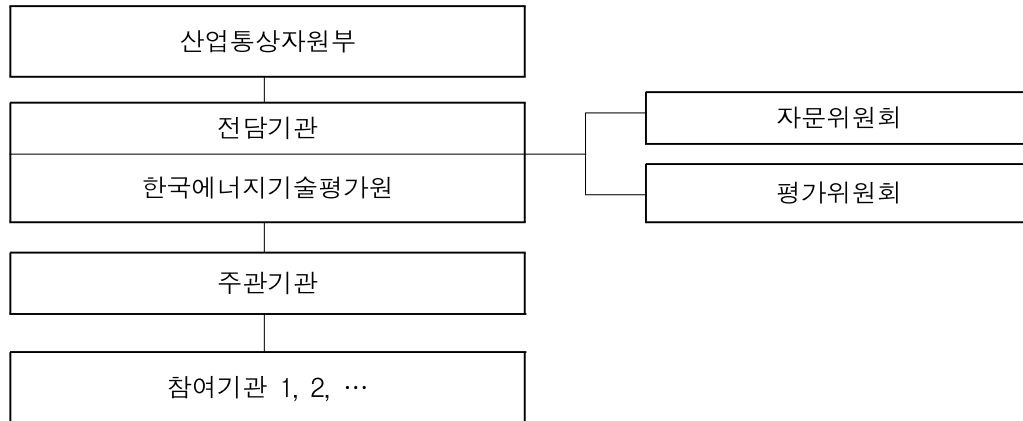
-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체 재직자 또는 퇴직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국제인력교류활성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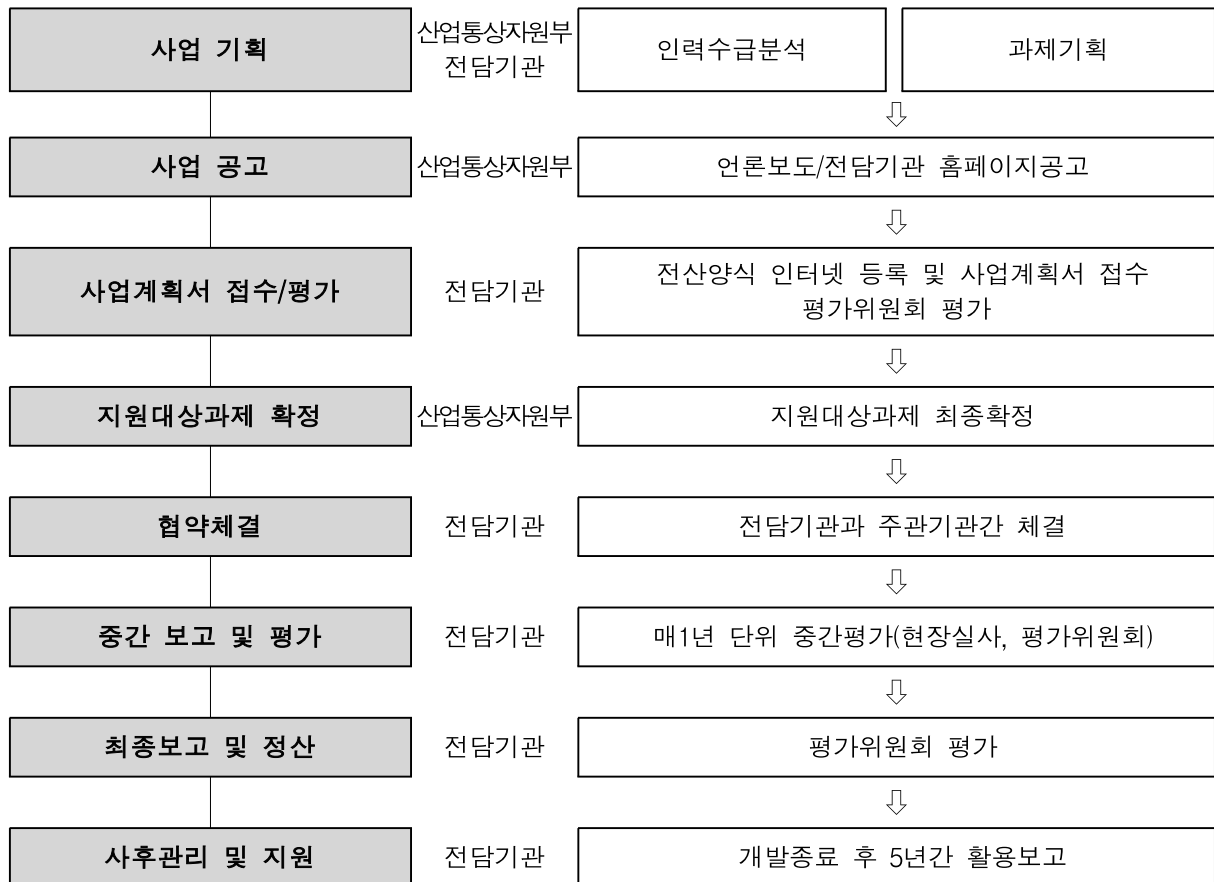
- 석탄자원, 전력, 신재생 등 에너지 분야 국내 인력의 해외교육·연구 지원 및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 인력의 국내 학위취득 및 단기연수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14. 3월~'14. 4월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409억원 (신규 92억원, 계속 317억원)

구 분	2014년 예산(억원)		
	신 규	계 속	합 계
에너지자원 (효율향상, 기후변화, 자원개발 등)	60	109	169
전력·원자력·신재생	32	208	240
합 계	92	317	409

* 신규 및 계속 구분은 다소 변경 가능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 R&D 정책적 우선순위 및 인력수급 분석결과에 따라 시급한 분야 중점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0 : 1	3.6 : 1	2.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341백만원	329.2백만원	292.6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4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융합인재양성팀 : ☎ 02-3469-8361~8364 (www.ketep.re.kr)

53.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에특)

1. 개 요

- 에너지자원기술 동향분석, 중장기 R&D계획,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보화 사업
- 에너지자원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 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정책기획·연구(에특)
 - 에너지자원기술정책지원 :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통한 에너지R&D 투자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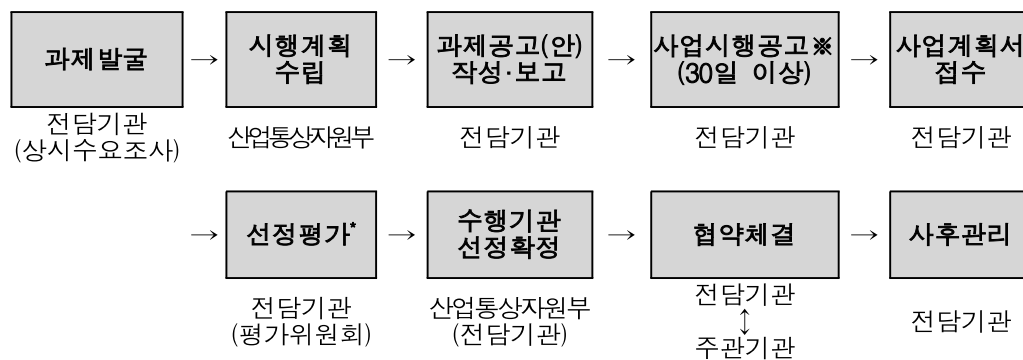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기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 후 총 정부출연금의 20 ~ 40%를 기술료로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14. 4~5월, 8~9월	'14. 5~6월, 9~10월	'14. 6월, 10월

7. 지원규모 : 10.34억원 (신규 1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에너지·자원 기술 정책 지원

○ 에너지·자원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에 의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산업화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 : 1	1.15 : 1	1.2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 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87.92백만원	215.91백만원	182.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 044-203-4542, 4545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미래전략팀 / 평가총괄팀 : ☎ 02-3469-8391 / 8412 (www.ketep.re.kr)

54. 에너지·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1. 개 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에너지·자원의 선순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및 대·중소기업간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부산물 및 폐기단계 제품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산업 성장 기반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산업단지 내 에너지·자원순환네트워크 구축
 - 산업단지 내 기업간 부산물·폐기물 및 에너지 교환 네트워크 활성화
- 대·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 공급망을 활용한 중소협력업체 에너지 관리, 녹색제품설계, 환경규제대응 등 종합 지원
-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 도시광산, 재제조 관련 기술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의 산업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기반 구축 및 보급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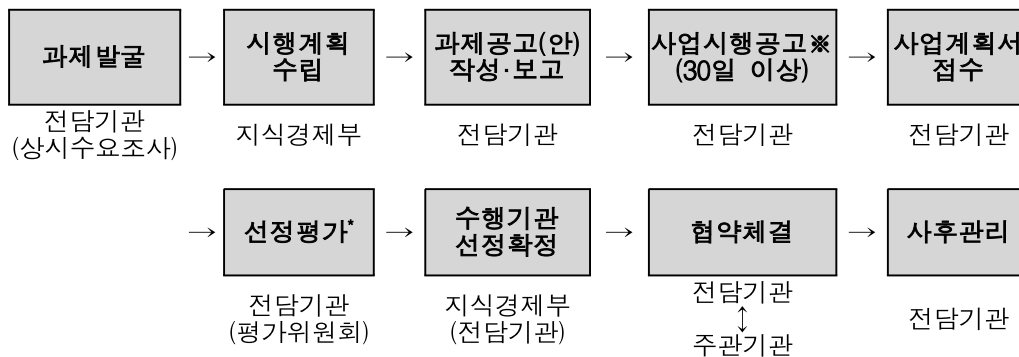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기준은 기술개발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후 총 정부출연금의 20 ~ 40%를 기술료로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14. 4월 ~ 5월	'14. 5월 ~ 6월	'14. 6월 ~

7. 지원규모 : 120.48억원 (신규 19.16억원, 계속 101.32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오염원 무배출 실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 확대 조성,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모델 다각화, 에너지·자원순환기술보급 등을 통해 순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과제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 : 1	1.15 : 1	1.11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88백만원	216백만원	19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 : ☎ 044-203-4245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평가총괄팀 : ☎ 02-2469-8412 (www.ketep.re.kr)

55-가.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력) - 신재생분야

1. 개 요

- 에너지자원기술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동향분석, 중장기 로드맵 수립, 산업체 실태조사, 성장동력 창출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보화 사업
- 신재생에너지기술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으로 기술개발-실증-사업화-수출 산업화에 이르는 선순환 연결구조 구축

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전력기금)
 - RPS 제도시행 정책수립, 법령개정 기초자료 제공,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 신재생에너지 통계·산업분류체계 정립 등 기반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로드맵 수립, 사업추진 전략 설계, 자원조사, 타당성조사 등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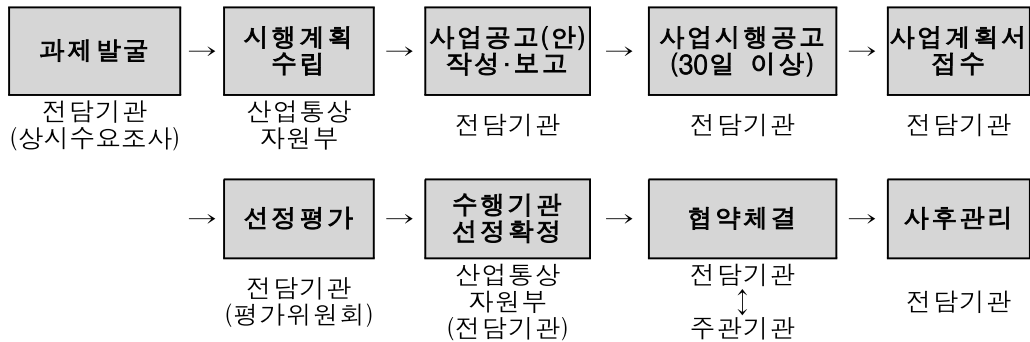
- 정책지정 또는 지정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과제 지원
-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50 ~ 100% 지원
- 기술료 징수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종료후 총 정부출연금의 20 ~ 40%를 기술료로 징수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14. 4월, 8월	'14. 5~6월, 9~10월	'14. 6월, 10월

7. 지원규모 : 20.01억원 (신규 18.51억원, 계속 1.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신재생에너지 정책 기획 지원
- 신재생에너지 정보화 및 정책지원 기반구축에 의한 동향분석-제도설계-검토-제도화 선순환 구조 구축 추진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 : 1	1.15 : 1	1.59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87.92백만원	215.91백만원	128.57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 044-203-5165 (www.motie.go.kr)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팀 : ☎ 031-260-4812, 4819 (www.kemco.or.kr)

55-나.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전력) -전력기술기반구축 분야

1. 개 요

- 전력기술정보의 교류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관련 R&D정책 수립에 활용

2. 지원대상분야

- 전력기술 정보 및 활용 방안, 전력기술 및 자원상거래 서비스의 고도화 등 전력 산업 관련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 시킬 수 있는 분야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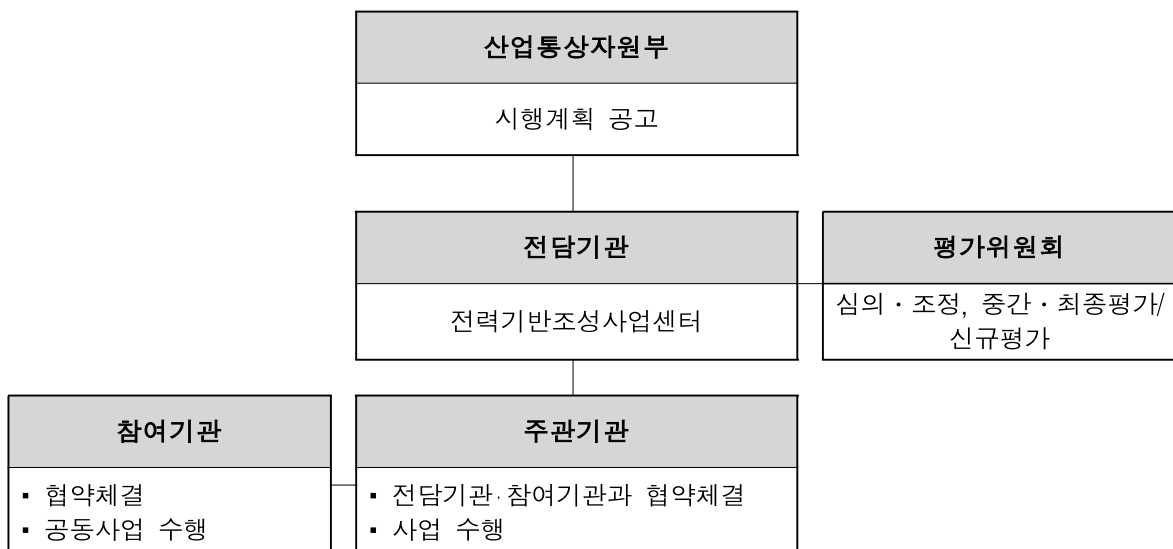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
 - 전력산업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기타 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사업형태에 따라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추진절차	수행주체
수요조사 실시	전담기관(수요조사위원회)
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안) 확정	전담기관(선정평가위원회)
세부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산업부·전담기관
신청과제 평가	전담기관(평가위원회)
지원대상과제 및 사업자 확정	산업부
선정과제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중간 평가	전담기관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위탁정산기관
최종 평가	전담기관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주관기관 /전담기관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2월 ~ 4월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48.85억원 (신규 22.9억원, 계속 25.9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전력분야 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활용·확산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녹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R&D 기술정책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71 : 1	1.67 : 1	3.7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704백만원	305백만원	20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70 (www.motie.go.kr)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 02-6007-0362(www.etep.or.kr)

56. 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

1. 개 요

- 전력산업분야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해 기술 및 제품의 표준 제·개정 및 적합성 확인을 위한 인증체계 지원

2. 지원대상분야

구 분	지원대상 분야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및 기반 구축지원, 국제표준 우선선점을 위한 표준화사업,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지원
전력기술 표준화 및 인증	전력기술분야의 표준개발 및 기술기준 제·개정 관련 전기설비의 신뢰성 및 안전 확보, 국제표준 선점, 스마트그리드 조기상용화 및 원전해외수출을 위한 지원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구축지원을 통한 스마트그리드 기기 및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사전검증을 통한 보급·확산 기반조성
원전부품/설비 통합인증기반구축	원전의 안전성 및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원전부품 및 설비에 대한 통합인증시스템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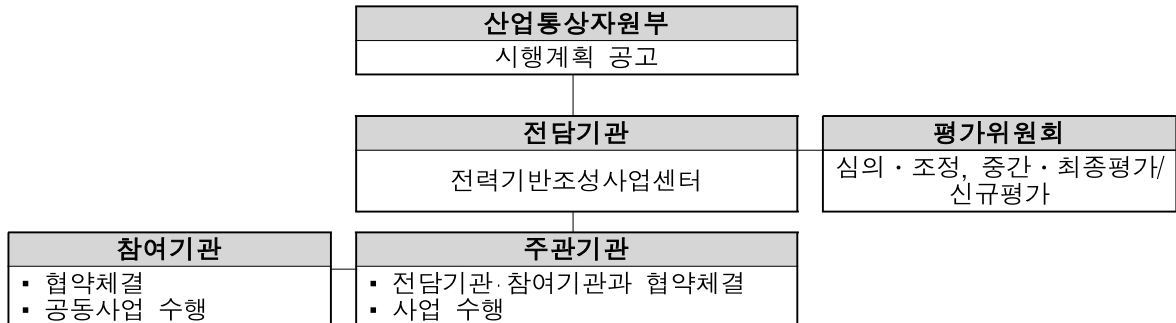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
 - 전력산업관련 기업,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학교 및 부설연구소, 기타 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지원내용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사업형태에 따라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 '14년도 신규 사업인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으로 지원체계 확정 후 안내 예정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2월 ~ '14. 3월	'14. 4월	'14. 5월	'14. 6월

7. 지원규모 : 164.88억원(신규 44.2억원, 계속 120.68억원)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신규	계속	합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1,420	2,060	3,480
전력기술표준화 및 인증	-	5,008	5,008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구축	-	5,000	5,000
원전부품/설비통합인증기반구축(신규)	3,000	-	3,000
합 계	4,420	12,068	16,488

8. 중점 추진사항

- R&D 로드맵 및 시장수요를 반영한 신규 인증품목 추가를 통한 시험설비 구축지원 확대 및 인증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전력·원자력·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을 통한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선점
- 스마트그리드 신규 R&D과제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개발 시, 상호운용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제품 대상 연동시험 지원 추진
- 원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설비를 통합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4 : 1	1.1 : 1	1.2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341백만원	575백만원	1,83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 ☎ 044-203-5172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65, 5270 (www.motie.go.kr)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 044-203-5323 (www.motie.go.kr)
-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설실 : ☎ 031-260-4696 (www.kemco.or.kr)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 02-6007-0364 (www.etep.or.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 ☎ 02-3469-8374 (www.ketep.re.kr)

57.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전력)

1. 개 요

- 국제수준의 시험·연구 장비를 구축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조기 상용화를 도모하고,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 지원대상분야

- 원자력, 발전, 송변전, 배전,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산업분야의 국제수준의 연구·시험장비(시설) 구축

3. 신청자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거
- 산·학·연 기관(비영리기관 중심)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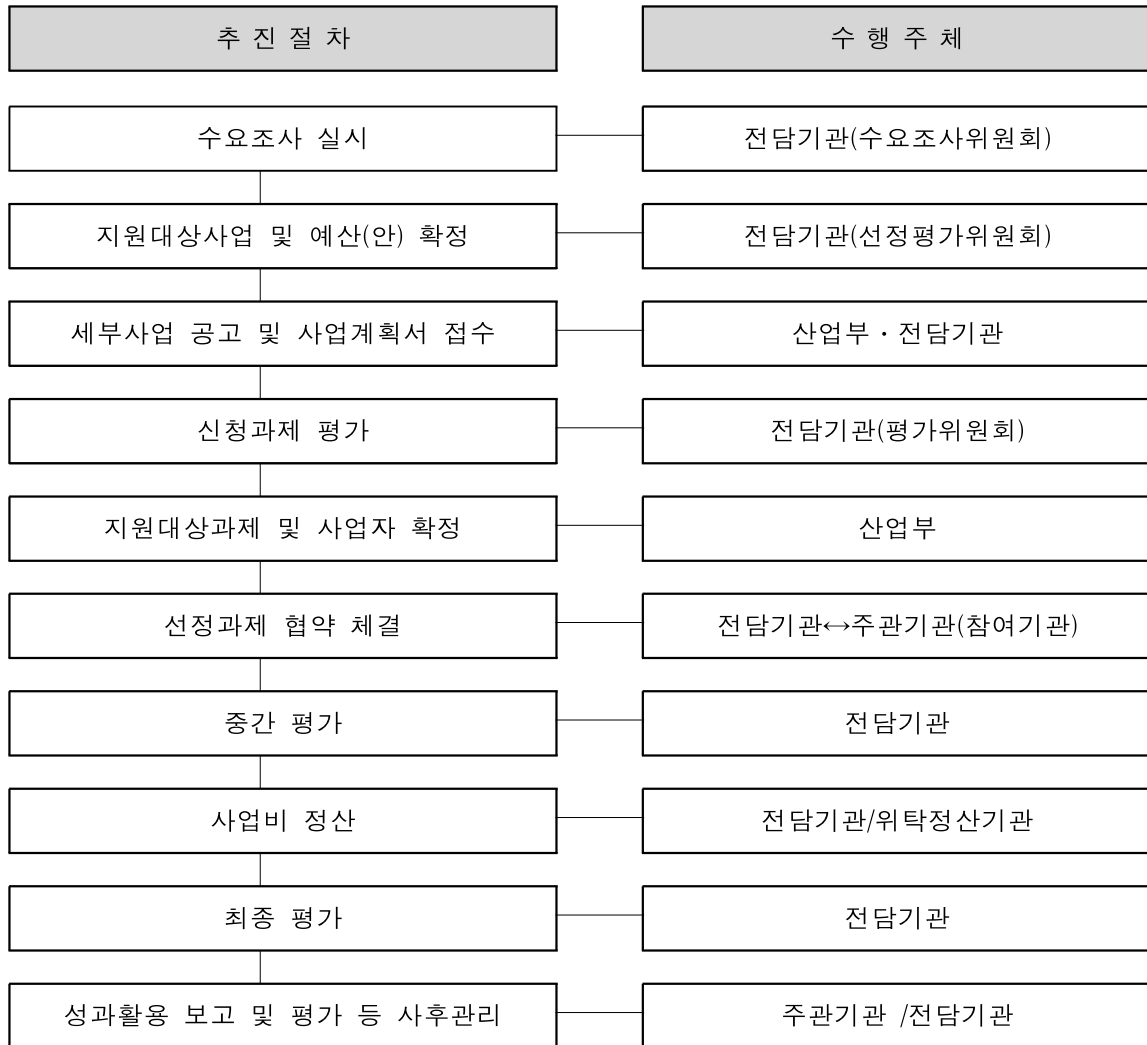
- 공고 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형태로 수행되며, 출연(사업형태에 따라 매칭)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1월 ~ '14. 2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7. 지원규모 : 70억원 (신규 5억원, 계속 65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국가R&D 정책과 부합하는 전력산업분야 연구·시험설비 구축
- 국제수준의 연구·시험 인증기관 지정을 통한 국내 전력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정부정책 및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력 및 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1.5 : 1	(신규사업 없음)	1.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에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8,758백만원	7,330백만원	7,82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 ☎ 044-203-5270 (www.motie.go.kr)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 02-6007-0363(www.etep.or.kr)

58. 민군겸용기술사업

1. 개 요

- 민·군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겸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이전을 확대하며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을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 ※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13.6.27 국회 본회의 의결, '14.2.7 시행 예정)

2. 지원대상분야

- 기술개발(Spin-up) :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규모 확대, 경제성 및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민·군 양 부문에 공통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 기술이전(Spin-on/off) 기술적용연구 : 연구개발, 해외도입, 절충교역, 기타 방법으로 특정산업 분야에서 기확보된 기술로서,
 - 민수산업 분야에서 군수산업 분야로(Spin-on) 또는
 - 군수산업 분야에서 민수산업 분야로(Spin-off) 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용연구

3. 신청자격

-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단체(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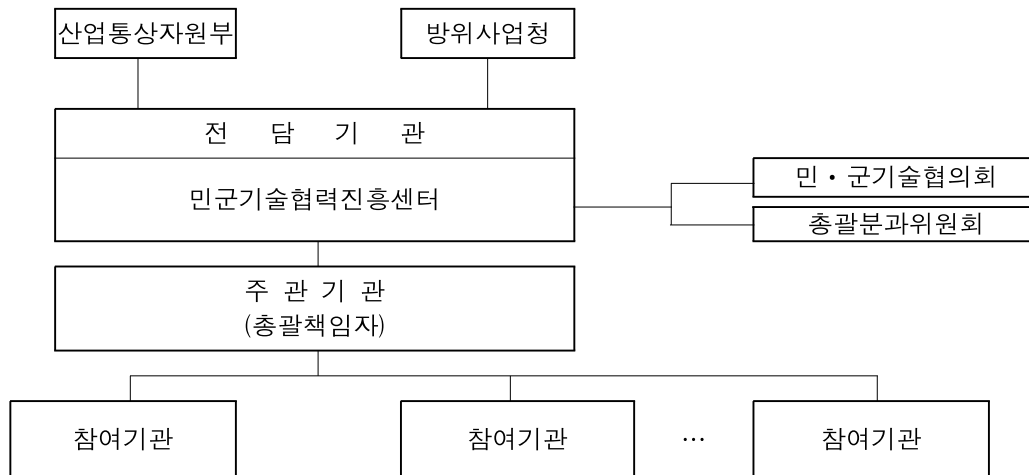
4. 지원내용

- 기업의 경우,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1조 참조)
 - 대기업 : 총 연구비의 50%이내
 - 중견기업 : 총 연구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비의 75%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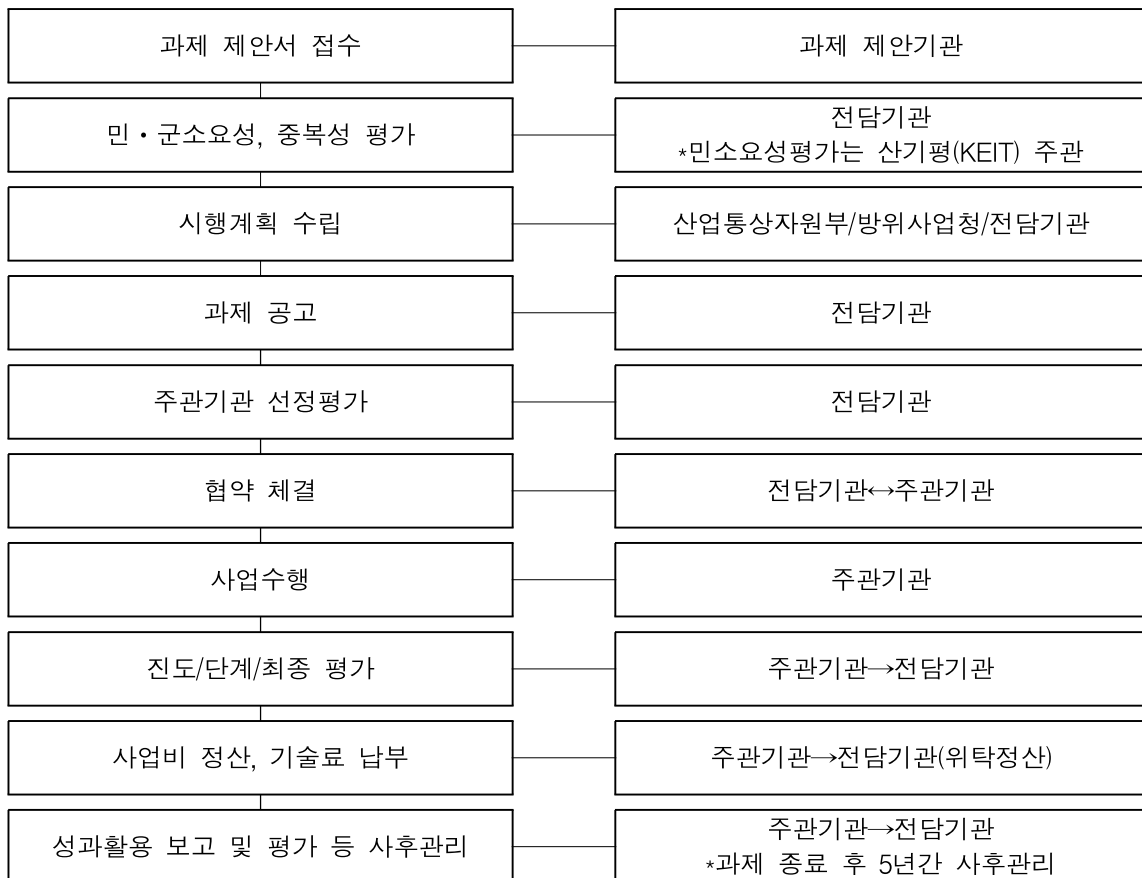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14.2.7)에 따라 참여부처 확대 예정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시행계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주관기관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6월

7. 지원규모 : 121.56억원 (신규 18.97억원, 계속 102.59억원, 산업부 출연금 기준)

8. 중점 추진사항

- 국정과제 120-4(혁신적 국방경영 및 국방과학기술 발전-창조형 R&D 추진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따른 무인/로봇/센서 분야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기술개발사업	12.4:1	8.4:1	8.71:1
	기술적용연구	2.67:1	2.83:1	3.67: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기술개발사업	780백만원	131.6백만원	163.2백만원
	기술적용연구	231.3백만원	185.7백만원	119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 ☎ 044-203-4313, 4319 (www.motie.go.kr)
-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기획운영실 : ☎ 042-821-3082, 2866 (www.cmtc.re.kr)

59.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1. 개 요

-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Licensing Out)

-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기여

* 글로벌 신약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혁신성을 갖는 신물질 의약품이며, 연 매출 1,000~3,000억원 이상 신약

2. 지원대상분야

-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원

3.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바이오벤처, 대학 (의료기관 포함),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모두 가능.

※ 임상개발단계는 주관연구기관을 기업 및 바이오벤처로 제한함

4. 지원내용

- 연구개발 단계별 : 선도물질, 후보물질, 전임상 및 임상 연구개발

- 글로벌 혁신신약 (합성, 바이오, 천연물)

※ 단, 개량 신약,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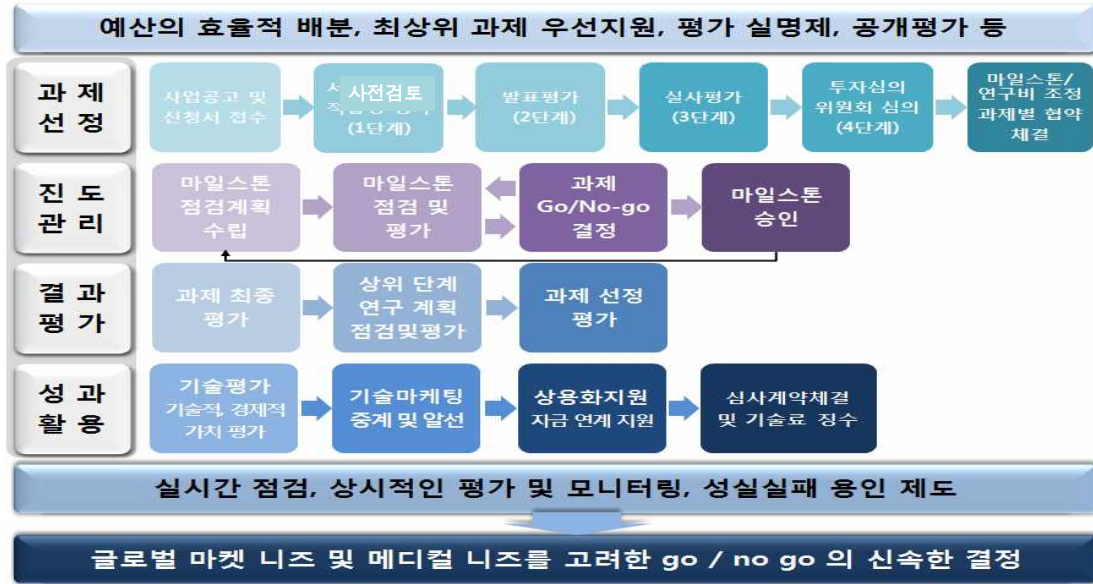
※ 신규 타겟을 발굴하는 연구 내용은 제외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글로벌 신약 프로젝트의 발굴 투자
- C&D(Connect & Development)전략으로 신약개발 가속화
- 기초원천에서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신약개발 파이프라인 체계
- 기업형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공고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사업 RFP에 근거하여 진행	접수 1개월 전	'14. 2,4,6,8,10,12월 4째 주	2개월 주기로 진행	개별 과제별 협약에 의거

※ 참고 : 과제 선정평가 소요기간



7. 지원규모 : 272억원 (신규 230.7억원, 계속 41.3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글로벌 신약개발 R&D 사업(과제 선정·평가·관리)
 - 사업단의 차별화된 선정·평가·관리 시스템으로 우수 과제를 선별하고 전주기에 걸친 집중투자 및 상시 마일스톤 관리를 진행하여 글로벌 신약창출 가능성 증대
- 향후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14.2월)
 -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미래 글로벌 제약시장 예측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연구
 - 성과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성과 창출형 사업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상세기획
- 글로벌 신약개발 네트워크 지원
 - 매년 차별화되는 각종 행사를 통해 과제참여자와 신약개발 전문가, 기업의 연결 고리를 확대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3.4 : 1	3.3 : 1	4.6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0백만원	1,526백만원	1,562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테크 : ☎ 044-203-4392 (www.motie.go.kr)
- (재)범부처기신약개발사업단 : ☎ 02-361-3606 (www.kddf.org)

60.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 '14년도 신규사업

1. 개요

- 바이오화학제품 조기산업화를 위하여 주력산업과 연계된 원료생산부터 소재 및 시제품 개발까지 전주기적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주력산업에 활용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바이오화학소재를 산업화하기 위한 바이오화학 원료 생산기술, 바이오화학 소재개발, 바이오화학 산업융합기술 개발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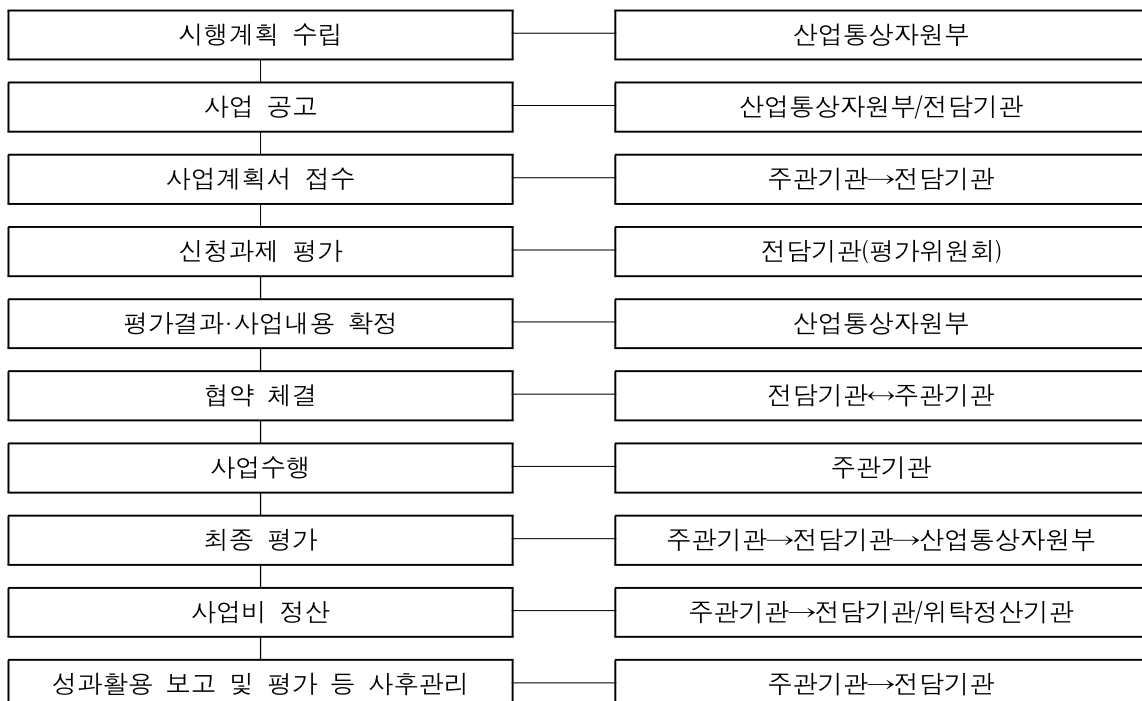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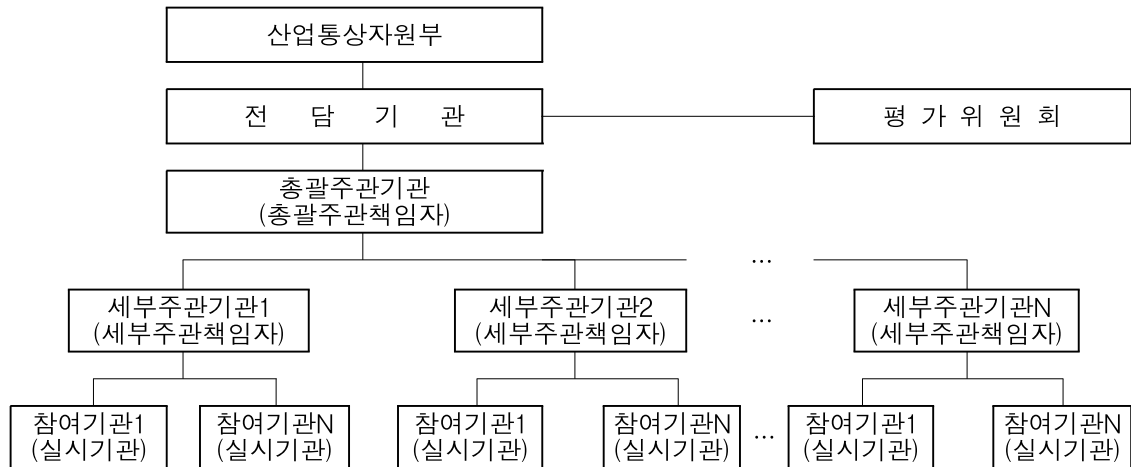
- 산·학·연 공동개발로 수행되며 정부 출연금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40~80%(사업별로 상이)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통합형, 병렬형 과제 기준,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1개 단독 진행)

6. 추진일정

과제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12월 ~ '14. 2월	'14. 3월~4월	'14. 5월	'14. 6월 이후

7.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원)

8.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 ☎ 044-203-4399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PD실 : ☎ 02-6000-7355 (www.keit.re.kr)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 02-6000-7377 (www.keit.re.kr)

61.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사업 - '14년도 신규사업

1. 개 요

-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유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 작성사업 등 포스트게놈시대를 대비한 유전체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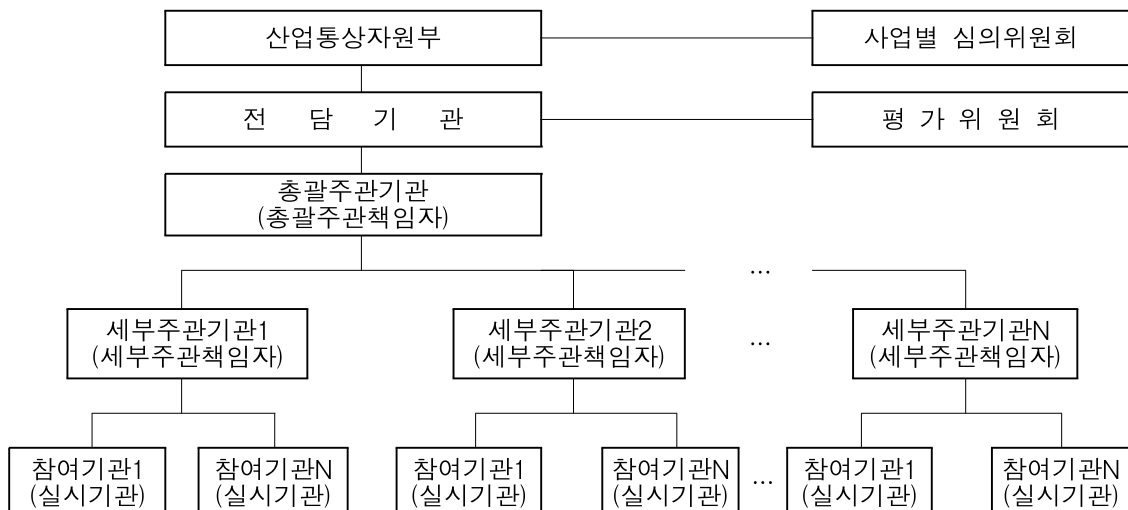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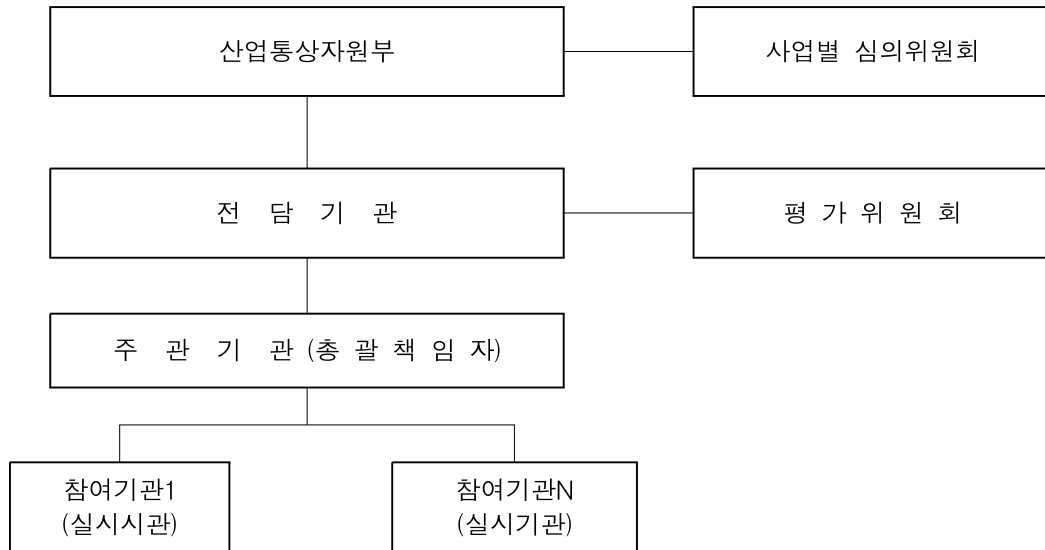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 형태로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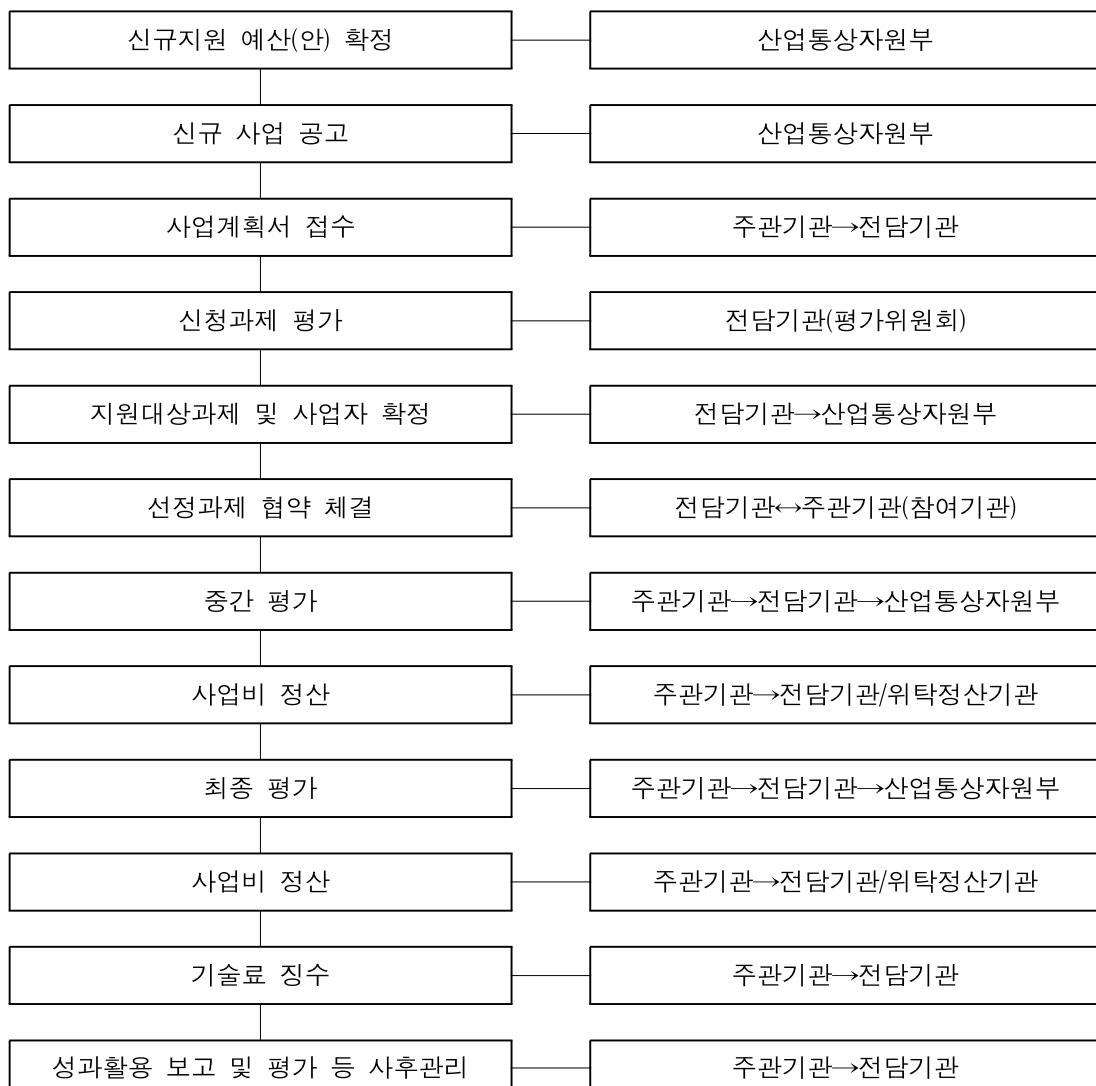
- 추진체계 (통합형, 병렬형 과제)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공고	접수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6월	'14. 7월	'14. 8월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규모 : 60억원 (신규 60억원, 계속 0억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지원규모는 과제기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테크 : ☎ 044-203-439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 ☎ 02-6000-7382 (www.keit.re.kr)

62.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 14년도 신규사업

1. 개 요

- 新개념 이동수단 Micro-모빌리티 기술개발(R&D), 핵심부품 인증·평가 기반구축(기반), 중소·중견기업 연구지원(센터구축)을 통한 新산업 생태계 구축

2. 지원 대상 분야

- 핵심부품기술개발
- 실용화연구기반구축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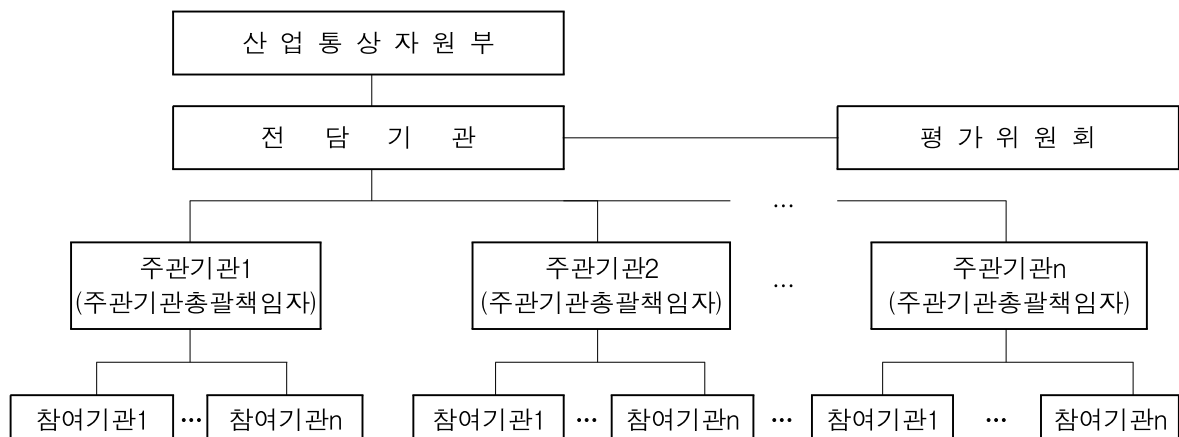
-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지원대상 분야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술개발, 기반조성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세부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기간 : 3년 이내
 - * 사업별로 상이하며,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7. 지원규모 : 58억원 (신규 58억원)

* 지원규모는 변동가능성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기반구축 기관과 기술개발 기관 간 연계 강화

9.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 044-203-4324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신성장기반팀 : ☎ 02-6009-3788 (www.kiat.or.kr)

63.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구 사업 - '14년도 신규사업

1. 개 요

- 대규모 에너지저장시스템의 전력계통 연계 실증을 통한 전력피크 대응으로 국가 전력수급 안정화 및 ESS 산업화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CAES) 발전원연계형 한국형 압축공기저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LiB-ESS) 송배전계통 연계형 리튬이온배터리저장시스템 개발 및 실증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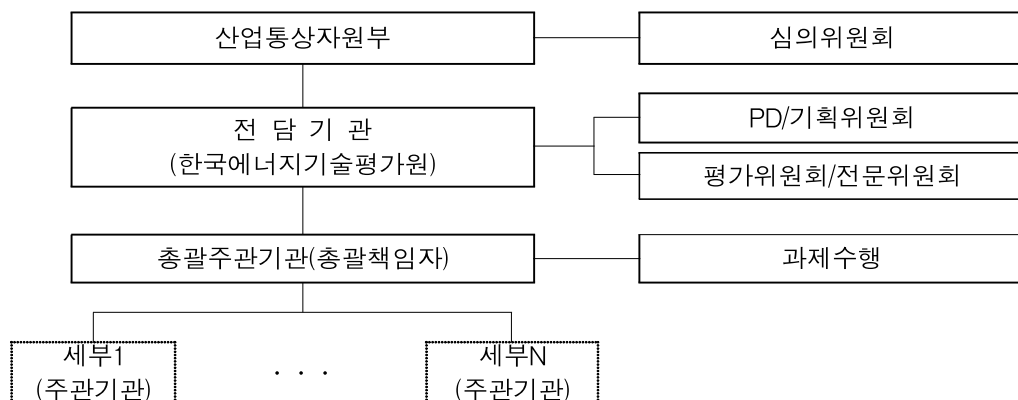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에너지법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 등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 단독 또는 산·학·연 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연구비의 30~50% 정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예정
- 총 수행기간 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ISTEP)	전력파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통과
과제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상세 과제기획(PD/기획위원회)
		기획결과 심의(PD/기획위원회)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TEP)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중간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TEP)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TEP)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TEP)	불성실 수행이 아닌 과제는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에 납부
성과활용 조사 및 평가 등 사후관리	전담기관(KETEP)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9월 ~ '14. 1월	'14. 2월 ~ 3월	'14. 4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70억원 (신규 70억원)

8. 중점 추진사항

- (CAES) 100MW급 압축공기저장시스템 개발
 - 발전원 연계형 한국형 CAES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장효율 80% 지상설비 개발 및 실증
 - 출력 100MW, 발전시간 6시간의 대용량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LiB-ESS) 54MW급 리튬이온저장장치시스템 개발
 - 수요관리 대응용(예비력 확보, 피크 저감, 부하이전 등)
 - 송변전 설비 효율화(과부하 해소, 수도권 유입전력 향상 등)
 - 전력계통 과도특성 개선(신재생 출력변동 영향 최소화, 동기 안정도 향상 등)
 - 수십 MW급 ESS용 전력변환장치와 배터리의 고성능화 병렬제어기술 개발

9.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요관리과 : ☎ 044-203-5381 (www.motie.go.kr)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기획팀 : ☎ 02-3469-8384 (www.ketep.re.kr)

64. 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2. 지원대상분야

-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분야의 성장유망 기술개발 집중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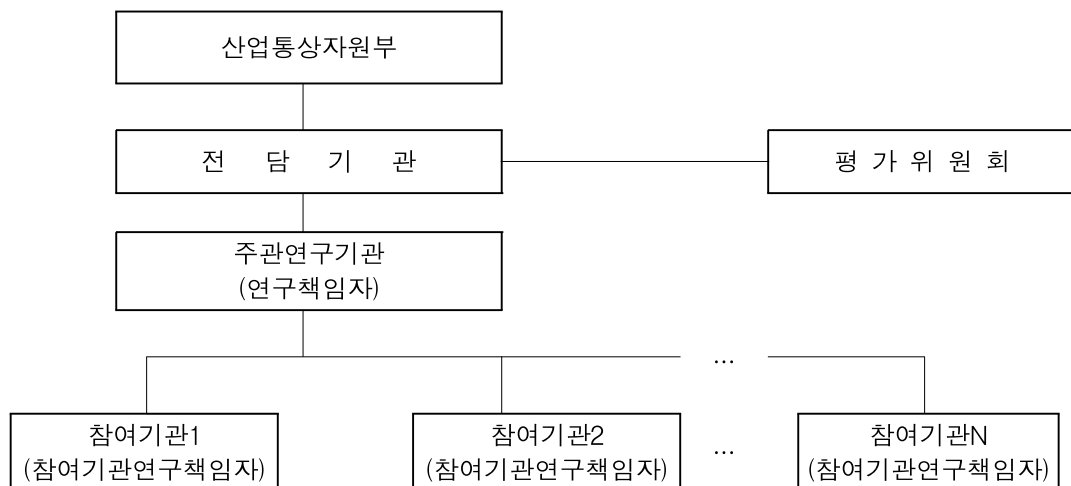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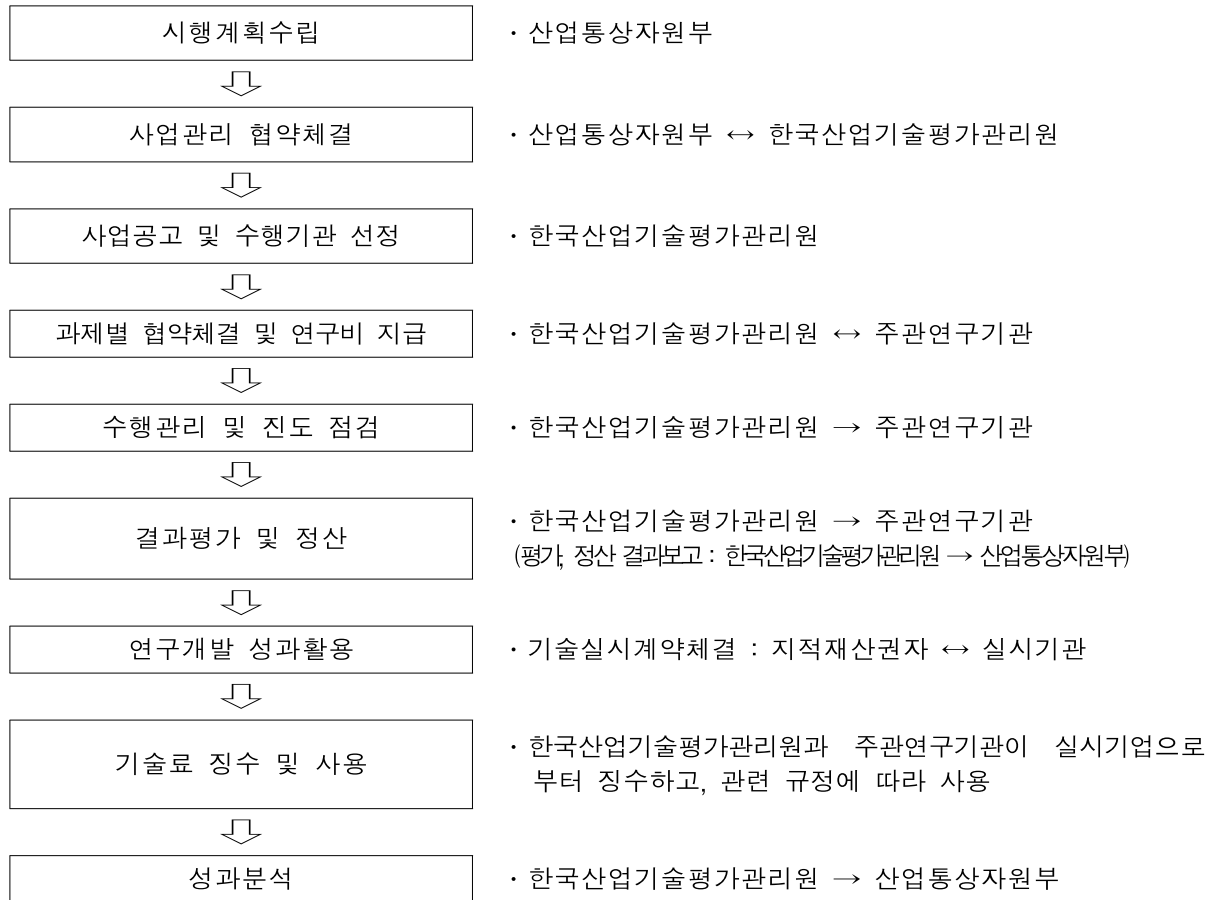
- 분야별 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
 - 일반적으로 3~5년,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6. 추진 일정

연구 기획	지원 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 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6월 ~ '13. 12월	'14. 1월 ~ 4월	'14. 5월	'14. 6월

7. 지원 규모 : 1,073억원 (신규 276억원, 계속 797억원)

8. 중점 추진 사항

○ 반도체

- First mover형 시스템반도체 원천 기술, 이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기술, 응용 특화 프로세서, 중·대형전지 저가격·고성능화 및 안정성 확보 기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주력 IT 제품(스마트TV, 스마트폰 등)용 SoC, 인간 친화적 의료·바이오 반도체 핵심 기술, 전력효율 향상용 ESS, 전기차 전지기술 확보 등 유망제품 전략적 개발
- 14 nm 급의 미세화 공정기술, 삼차원 집적기술의 조기 개발, 차세대 이머징 로직반도체 신소재/신공정 기술의 선점을 위한 로직반도체 기술개발

- 차세대 이머징메모리의 원천기술, 미세화(10nm급) 공정, 3D 메모리기술의 선도적 양산을 위한 기술 및 국산화 제고를 위한 반도체 소재·장비 기술개발

○ 디스플레이

- 저가화, 단순화, 고성능화를 위한 차별화된 부품소재, 공정장비 기술 확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 선제 확보
-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무안경 3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및 조기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개발
- 50인치 이상의 대형 AMOLED TV 기술개발 및 AMOLED 핵심원천 기술개발 등
- e-Textile 디스플레이, 인쇄기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위한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등

○ LED/광

- 고효율 및 고신뢰성에 필요한 세계 최고 LED 광소자/소재 기술 확보 지속적 추진
- LED농생명, 해양 등 신시장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선도형 LED융합기술 및 OLED 조명 핵심기술개발
-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광학렌즈, 3D용 신광원 등 산업용 레이저기반 기술 확보 및 기술선도형 고부가가치 융합 광기술 확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반도체	2.5 : 1	2.57 : 1	2.29 : 1
디스플레이	2.0 : 1	1.57 : 1	2.4 : 1
LED/광	3.85 : 1	1.66 : 1	2.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에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반도체	2,051백만원	1,295백만원	1,156백만원
디스플레이	1,820백만원	1,515백만원	1,002백만원
LED/광	1,157백만원	1,692백만원	1,143백만원

11. 문의처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반도체	전자부품과 044-203-4275 044-403-4272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2
LED/광	전기전자과 044-203-4348, 4342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3

65.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개 요

- 임베디드SW 융합을 통한 신시장을 창출하고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기회를 마련

2. 지원대상분야

- SW·컴퓨팅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임베디드SW 분야
 - 자동차·항공·조선·전자·의료기기·기계 등 6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임베디드SW 기술 발굴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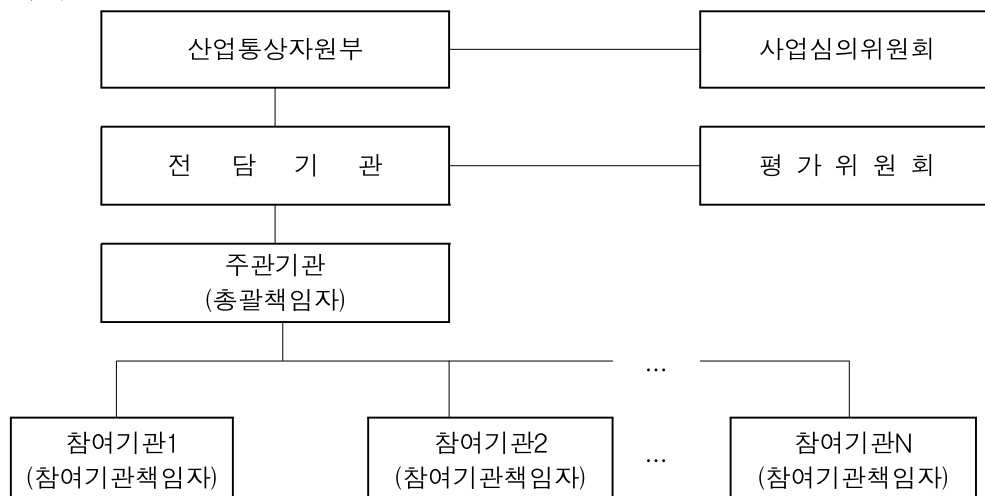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술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심의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8월 ~ '14. 1월	미정	미정	미정

7. 지원규모 : 62억원

* 예산이 변동 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공고시 참조

8. 중점 추진사항

- 세계최고 수준의 SW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임베디드 SW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지원
-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의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의 창의성·혁신성을 기반으로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지원을 집중
- 또한, 산업체의 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속화 및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초·원천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	-	(신설)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	-	(신설)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 042-715-2212 (www.keit.re.kr)

66.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개 요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 중 홈/정보가전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정보통신미디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홈/정보가전 분야
 - 3D·상황인식·그린홈 분야 신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스마트 홈 서비스 핵심기술개발 지원
 - 다양한 가전제품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국내 가전산업의 경쟁우위 강화를 위한 융합형 정보가전 기술개발 지원 등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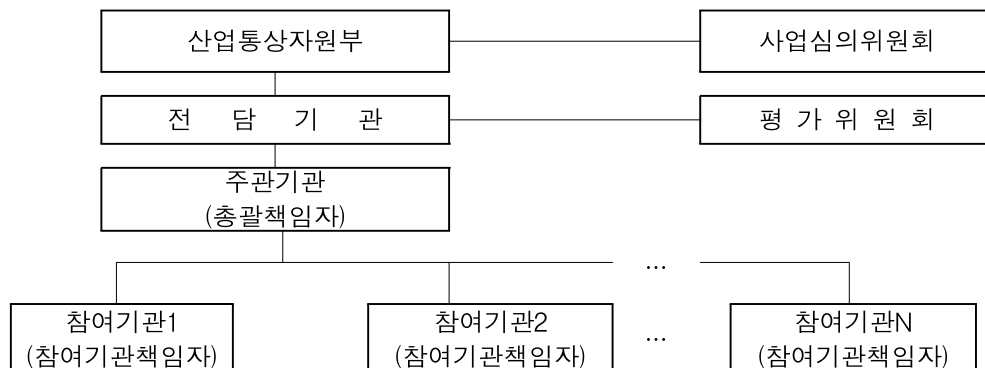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사업자 단체,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4. 지원내용

- RFP의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 학, 연 간의 공동개발형태로 수행되며, 출연(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형태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5년 이내에서 매년 연차평가를 통해 차기년도 지원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기술로드맵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로드맵 수립
과제기획	사업심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수요조사
		기획대상과제 선정
		상세 과제기획
지원과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결과 심의
		지원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진도점검·연차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0~40%를 3~5년간 징수
추적 평가	전담기관(KEIT)	성과평가위원회

6. 추진일정

연구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13. 8월 ~ '14. 1월	'14. 1월 ~ 3월	'14. 4월 ~ 5월	'14. 5월 ~ 6월

7. 지원규모 : 132.49억원 (신규25억원, 계속 107.49억원)

※ 신규/계속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홈/정보가전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지원
-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의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의 창의성·혁신성을 기반으로 미래원천기술개발에 지원을 집중
- 또한, 산업체의 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속화 및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기초·원천과제 발굴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2.5:1	2.75:1	3.5: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1,875백만원	1,155백만원	811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 ☎ 044-203-4345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 042-715-2215 (www.keit.re.kr)

6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 본 사업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산업부 소관사업으로 지원규모는 향후 미래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1. 개 요

- IT유망산업 및 IT융합 분야 등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IT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

2. 지원대상분야

- IT유망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LED/광, 정보가전), IT융합(주력산업융합) 분야 중·단기 기술개발 지원

3.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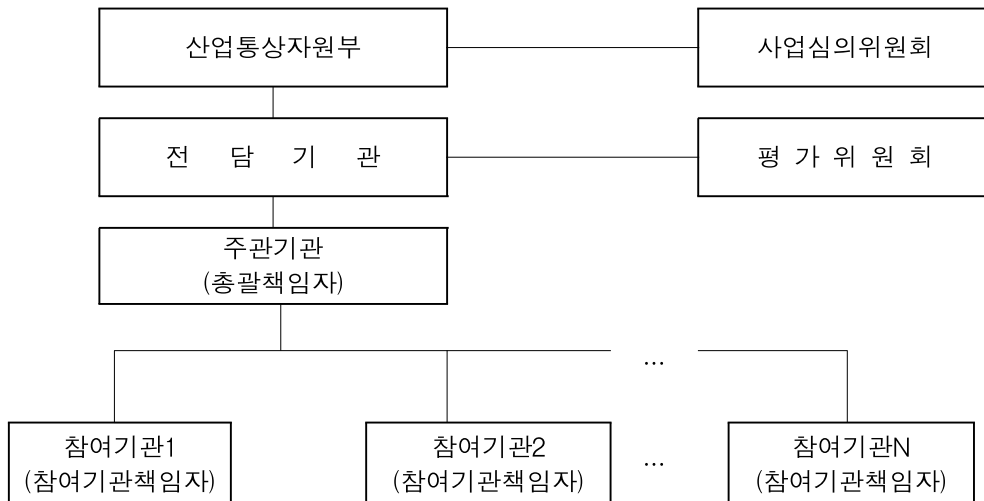
-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등
- * 주관기관은 중소 및 중견기업만 가능

4. 지원내용

- IT유망산업 및 IT융합 분야 중·단기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
-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지원하며, 성과 우수기업은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 기업 단독 혹은 산·학·연 컨소시엄

5.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사업기획 (품목기획)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수립
		사업계획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과제수행	수행기관	과제수행
최종평가	전담기관(KEIT)	평가위원회
사업비 정산	전담기관(KEIT)	사업비 정산
기술료 징수관리	전담기관(KEIT)	성공평가과제는 총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5년간 분할 징수
성과관리	전담기관(KEIT)	외부 성과분석기관

6. 추진일정

사업기획(품목기획)	지원과제 공고 및 접수	과제별 선정평가	협약 및 과제수행
'13. 10월 ~ '13. 12월	'14. 1월 ~ 4월	'14. 5월 ~ 6월	'14. 7월 ~

7. 지원규모 : 71.2억원 (신규 17.9억원, 계속 53.3억원)

※ 신규/계속 예산은 상대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중점 추진사항

- IT분야 신성장동력 및 미래유망 분야에 R&D 재원 중점 투자
- IT융합기술 R&D비중을 확대하여 IT융합 글로벌전문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

9.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경쟁률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쟁률	5.4 : 1	6.5 : 1	6.5 : 1

10. 지난 3년간 신규 지원 과제의 1차년도 평균 정부출연금

연 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정부출연금	339백만원	281백만원	460백만원

11.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 ☎ 044-203-4273 (www.motie.go.kr)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부품평가팀 : ☎ 042-715-2215 (www.keit.re.kr)

Ⅳ 사업별 문의처

사업 문의처

사 업 명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홈페이지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신산업, 주력산업 분야)	신산업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17	www.keit.re.kr
	주력산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3	www.keit.re.kr
- 로봇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기계로봇과 044-203-43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8	www.keit.re.kr
- 바이오의료기기 산업핵심기술개발	바이오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2	www.keit.re.kr
	의료기기	전자전기과 044-203-43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4, 9	www.keit.re.kr
- 산업융합기술산업 핵심기술개발	IT융합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9	www.keit.re.kr
	나노융합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7	www.keit.re.kr
- 그린카등수송 시스템산업핵심 기술개발	스마트카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2, 6	www.keit.re.kr
	그린카			
	조선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1		
- 산업소재핵심 기술개발	섬유의류	섬유세라믹과 044-203-429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6	www.keit.re.kr
	화학공정	철강화학과 044-203-42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5	www.keit.re.kr
	금속소재	철강화학과 044-203-428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3	www.keit.re.kr
	세라믹	섬유세라믹과 044-203-42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3	www.keit.re.kr
- 제조기반산업 핵심기술개발	생산시스템	기계로봇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8	www.keit.re.kr
	생산기반	뿌리산업팀 044-203-4283		
- 플랜트엔지니어링 핵심기술개발	플랜트엔지니어링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6	www.keit.re.kr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부품소재총괄과 044-203-4262~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70~3, 8, 8395~6,	www.keit.re.kr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주력 및 신산업)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15	www.keit.re.kr
-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4,7385,7386,7388	www.keit.re.kr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		섬유세라믹과 044-203-4291,4296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4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4, 0796 02-6000-7389, 7391	www.keit.re.kr
- 해양레저장비전문기술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47	www.keit.re.kr
- 개인용이동수단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47	www.keit.re.kr
- 첨단연구장비전문기술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8	www.keit.re.kr
- 청정생산기반전문기술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97	www.keit.re.kr
- 디자인전문기술개발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9,7391	www.keit.re.kr
- 창의산업기술개발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5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5	www.keit.re.kr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83	www.keit.re.kr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73	www.keit.re.kr
지능형자동차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1-0747	www.keit.re.kr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9-429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396	www.keit.re.kr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7389, 7391	www.keit.re.kr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75	www.keit.re.kr
핵심의료기기 제품화 및 인증평가기술 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2	www.keit.re.kr
산업융합촉진사업		산업정책과 044-203-420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4, 7369	www.keit.re.kr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 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67	www.keit.re.kr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8213	www.keit.re.kr
나노융합2020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3	나노융합2020사업단 02-6000-7492, 7494, 7496	www.nanotech2020.org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국제표준과 02-509-74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1	www.keit.re.kr
	국제상호인정시험 평가능력기반구축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8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2	www.keit.re.kr
	제품안전기술 기반조성	제품안전정책과 02-509-72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3	www.keit.re.kr
	국가참조표준 데이터개발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3	www.keit.re.kr
	품질혁신기반 구축	시험인증정책과 02-509-728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4	www.keit.re.kr
	국가표준 코디네이터	국제표준과 02-509-73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9-8265	www.keit.re.kr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전기전자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4	www.keit.re.kr
LED 시스템 조명 기술개발사업		전기전자과 044-203-434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시스템반도체상용화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5, 427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42, 4345, 4346	www.kiat.or.kr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소재부품정책과 044-203-4265, 426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923,3926,3928,3944	www.kiat.or.kr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지역산업과 044-203-44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3~3766	www.kiat.or.kr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지역산업과 044-203-44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62, 3764	www.kiat.or.kr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180,3192~3, 3205	www.kiat.or.kr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산업 기술 인재 육성)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엔지니어링팀 044-203-436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4	www.kiat.or.kr
	기술경영 전문인력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62	www.kiat.or.kr
	나노융합기술인력양성	바이오나노과 044-203-439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5	www.kiat.or.kr
	해양플랜트 특성화전문인력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2	www.kiat.or.kr
	산업융합특성화인재양성	창의산업정책과 044-203-436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7	www.kiat.or.kr
	디자인인력양성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3	www.kiat.or.kr
	봉제전문인력양성	섬유세라믹과 044-203-429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5	www.kiat.or.kr
	장애인산업기술 고급인력양성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4	www.kiat.or.kr
	기업연계형연구개발인력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8	www.kiat.or.kr
	하이브리드슈퍼섬유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5	www.kiat.or.kr
	뿌리산업전문기술인력	철강화학과 044-203-428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7	www.kiat.or.kr
	환경규제 및 안전전문인력양성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9	www.kiat.or.kr
	바이오제조 GMO 기술인력양성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3	www.kiat.or.kr
	산업융합 · 연계형 로봇 창의인재양성	기계로봇과 044-203-43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6	www.kiat.or.kr
산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인적 자원 생태계 조성)	산업기술인력수급통계	산업인력과 044-203-422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4	www.kiat.or.kr
	산업별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산업인력과 044-203-42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1	www.kiat.or.kr
	청소년창의기술인재 센터지원	산업기술개발과 044-203-452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6	www.kiat.or.kr
	Tech-Force Net 구축	산업인력과 044-203-422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27	www.kiat.or.kr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91~4	www.kiat.or.kr
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기반구축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첨단메디컬신소재(섬유)개발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6	www.kiat.or.kr
탄소밸리구축사업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6	www.kiat.or.kr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www.kiat.or.kr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 육성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www.kiat.or.kr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www.kiat.or.kr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전자전기과 044-203-43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1	www.kiat.or.kr
차부품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www.kiat.or.kr
메디칼폴드R&BD구축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텐탈소재및치과기공기술개발		전자전기과 044-203-434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3	www.kiat.or.kr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지역산업과 044-203-44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23, 3731	www.kiat.or.kr
생산현장종합지원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8	www.kiat.or.kr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산업기술기반팀 044-203-450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238	www.kiat.or.kr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 (에너지 분야)	에너지자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3, 8377	www.ketep.re.kr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5, 8379	www.ketep.re.kr
	전력	전력진흥과 044-203-527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tep.re.kr
	원자력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5	www.ketep.re.kr
자원개발기술개발사업		자원개발전략과 044-203-514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9	www.ketep.re.kr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원전환경과 044-203-53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72	www.ketep.re.kr
글로벌전문기 술개발사업 (에너지·자원 순환/녹색기 술개발지원)	에너지·자원순환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4	www.ketep.re.kr
	녹색기술 개발지원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전력·원자력)		에너지기술과 044-203-454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36, 8445	www.ketep.re.kr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43~7	www.ketep.re.kr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에너지기술과 044-203-454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61~4	www.ketep.re.kr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사업(에특)		에너지기술과 044-203-4542, 45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www.ketep.re.kr
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사업		기후변화산업환경과 044-203-424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12	www.ketep.re.kr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 -신재생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5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031-260-4812, 4819	www.energy.or.kr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전력) -전력기술기반구축		전력진흥과 044-203-5165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2	www.etep.or.kr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7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2-6007-0364	www.kemco.or.kr
		전력진흥과 044-203-5265, 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02-6007-0364	www.etep.or.kr
		원전산업정책과 044-203-53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총괄실 02-3469-8374	www.ketep.re.kr
에너지연구기반구축사업(전력기금)		전력진흥과 044-203-5270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02-6007-0363	www.etep.or.kr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기계로봇과 044-203-4313, 4319	민군기술협력진흥센터 042-821-3082, 2866	www.cmtc.re.kr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2	(재)범부처기신약개발사업단 02-361-3606	www.kddf.org
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반도체	전자부품과 044-203-427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디스플레이	전자부품과 044-203-427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3	www.keit.re.kr
	LED/광	전기전자과 044-203-4348, 434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33	www.keit.re.kr
SW·컴퓨팅(임베디드SW)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2	www.keit.re.kr
정보통신미디어(홈/정보가전)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전자전기과 044-203-434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정보통신)		전자부품과 044-203-42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42-715-2215	www.keit.re.kr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9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77	www.keit.re.kr
포스트계능다부처유전체사업사업		바이오나노과 044-203-43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2-6000-7382	www.keit.re.kr
디자인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자동차항공과 044-203-432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788	www.kiat.or.kr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연 구 사업		수요관리과 044-203-538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384	www.ketep.re.kr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IAT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www.emd.go.kr)에 공지함